

<http://www.korva.or.kr>

ISSN 2672-040X

안보전략연구

2023. 4 (제 9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

제9호

본지는 연2회 발간되는 심사제 학술지입니다.

발행 2023년 4월 8일
발행인 신상태(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편집인 김진수(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장)
편집위원장 문성목(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태중(충남대학교)
성형권(영남대학교)
이성춘(송원대학교)
장광열(국방대학교)
최규상(강릉원주대학교)
최윤철(상명대학교)
편집간사 문근형(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발행처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전화 02-499-0201
팩스 02-417-5527
이메일 korvass0201@naver.com

ISSN 2672-040X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재향군인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논문내용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 (<http://www.korva.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우수인력 획득 환경 구축
-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 제도화를 통한 제대군인
취업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
| 김원대 | 1

- ❖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군사통합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학민 | 49

- ❖ 재향군인회 정체성에 관한 고찰
| 문근형 | 81

- ❖ 일본 전국시대 명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에 관한 현대적 함의
| 박상중 외 | 113

- ❖ 북관대첩의 군사사학적 교훈
| 이영석 외 | 145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우수인력 획득 환경 구축 *

김 원 대 **

- I. 서 론
 - II. 한국군의 인력환경과 취업실태 분석
 - III. 국내외 민간군사기업 추진 현황
 - IV.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 제도화 방안
 - V. 결 론
-

* 2022.11.15.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항공공동주관 세미나 발제내용을 보완한 내용임.

**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전문위원, e-mail: kwd2141@hanmail.net

논문 요약

최근 병역자원의 급감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군 입영 자원의 주력인 만 20세 남성인구는 향후 20년 후 현재의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절대적인 인구절벽 외에도 그동안 병 복무 기간 단축의 영향을 받아온 초급 간부 지원률은 현 정부의 병 봉급 200만원 인상 여파로 더욱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복지비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로 우려를 낳고 있다.

인구절벽과 우수 초급간부의 지원률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민간기업과 민간인력 활용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따라서 숙련된 민간인력의 활용은 현역 전투력 유지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다. 숙련된 민간인력은 곧 다수의 예비역들을 포함된다. 즉 예비역들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가 근무할 군 관련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면 이는 곧 군의 전투력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우방국에서는 민간군사기업(PMC)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은 강한 군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성실히 근무한 제대군인이 전역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우수 인력이 군에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첩경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민간군사기업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더불어 제대군인 생활 안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민간군사기업(법), 사회적기업(법), 국가안보, 인력정책, 제대군인, 제도화

I. 서 론

국방부는 2022년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을 6대 국방 운영 중점의 하나로 다루는 한편, 단기복무 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간부 획득 및 운영 제도와 군 간부의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복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¹⁾ 그러나 업무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과학기술군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숙련인력의 확보를 위한 인력획득정책은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발전이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첨단과학기술군 전환과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참고할만 하다. 미국은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위한 핵심 요소의 하나로 우수인력 확보 및 육성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역대 정부의 「818 국방개혁」,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2.0」 등에서 인력과 부대구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군은 인구급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인력과 적정 획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기술군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무기와 함께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되고 전문적인 인력의 안정적 획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는 단기간 근무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병사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으며 우수 간부의 획득과 적정 수준의 대체인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3년 간의 학군 및 학사장교 획득 추세는 이 문제가 단순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전 정부의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저하 현상을 보였던 간부 획득률은 2025년까지 병 봉급의 200만 원 인상 확정²⁾에 따라 상당한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전 5:1 전후의 경쟁률을 보였던 장교 획득율은 최근 2.5:1 이하로 저하되었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달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단기복무 간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방부 업무보고 결과. 2022 .07. 22일자 보도기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780>).

2) 병 봉급은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국방부 업무보고. 2022. 07. 22일자).

부와는 다소 다른 지원 경향을 보였던 사관학교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적정 수의 인력획득에 부가하여 우수 인재의 획득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³⁾ 그러나 병 봉급 상승에 따라 20조 원까지 치솟은 병력운영비 속에서 국방부가 언급한 대로 간부에 대한 충분한 봉급 상승과 복지혜택 증가는 쉽지 않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인력획득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군은 임기제 부사관을 포함하여 중기복무 이상의 간부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 또한 5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기복무 간부의 적정 획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군 간부의 지원을 좌우하는 주요 유인 중의 하나가 “군 복무 이후 안정적 경제적 생활 여건 보장”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오랜 기간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전시켜 오고 있지만 현상을 분석해 보면 정부가 일자리를 마련하기보다 제대군인에 대한 취·창업 교육을 통해 각자가 직장을 구하는 형태의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선진 우방국 사례를 보면 군 복무자에게 단기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찾도록 하기보다는 법적·제도적 취업환경, 즉 민간군사기업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군 복무 이후에도 자리만 옮기듯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많은 국가가 냉전체제 이후 모병제로 전환하였고, 모병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나 현재 우리 군의 상태는 이에 못지않게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으로의 발 빠른 변화에 민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이 사실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동북아의 격랑 속에서 군의 미

3) 2015년 당시 4.8:1의 경쟁률을 보였던 육군 학군장교의 지원율은 병 복무기간 단축이 발표되고 난 이후 단기복무장교 지원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2020에는 2.7:1로 저하되었으며, 병 봉급 200만 원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구체화됨에 따라 2022년도에는 미달 현상이 발생하여 모집기간을 두 달이나 연장하였으나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부사관의 경우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 기준 획득정원 대비 72.8%에 머물렀던 부사관 획득율은 2022년 7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각군 사관학교의 지원율도 급감하여 2020년 44.1:1의 지원율을 보였던 육사의 경우 2022년도에는 25.8:1로 감소하였다(김경미, 조선일보 iob N, 2022. 05. 05일자 https://jobsn.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02/; 김선영, 세계일보 2022. 10. 3일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03505843?OutUrl=n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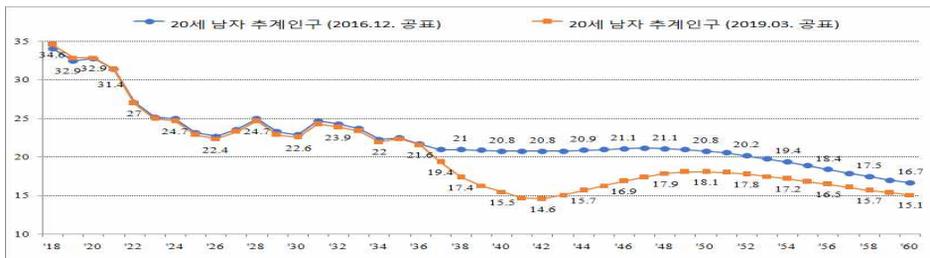
래전투력을 설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정책 측면에서 우수인력의 적정 획득을 위한 간부의 주요지원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각국이 총량(總量) 개념의 국방인력 확보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어떻게 우리 군과 민간시장 현실에 맞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취업환경을 군 간부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탐색해 보는게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한국군의 인력환경과 취업실태 분석

1. 한국군의 인력환경

현재 우리 군은 2006년도에 마련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병력구조의 조정과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군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을 만들려는 노력과 함께 인구급감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상황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 입영 자원의 주력인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 명에서 2026년 22.4만 명, 2036년 21만 명, 2042년 14.6만 명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표 1> 20세 남자 인구의 추계와 감소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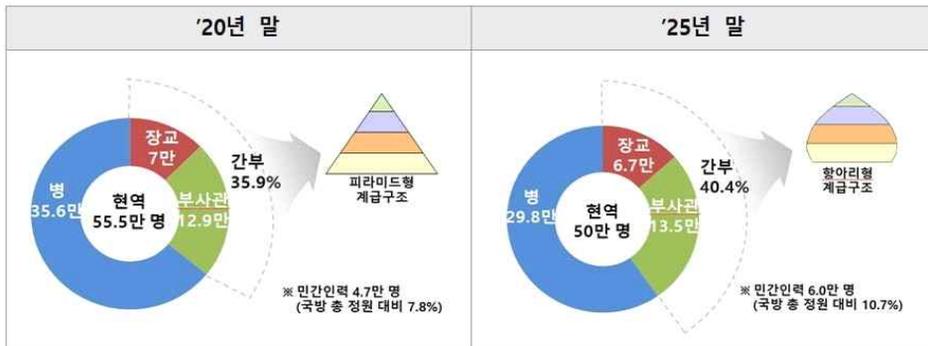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장래인구 추이(2021. 12. 1).

이러한 병역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전략은 일반적으로 군 구조 개편과 연

계하여 상비병력의 규모 축소, 예비병력 규모 조정과 정예화, 예비군과 현역과의 혼합 운영, 민간인력과 여군 인력의 확대, 간부 규모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인력 운영 여건 마련 등이다(조관호, 2020; 3). 그러나 북한의 핵·특수전 부대 위협은 물론 현재 증가되고 있는 미·중의 패권 경쟁에 따른 동북아 지역 주둔 미군의 운용개념 변화 등은 상비군의 규모를 줄이거나 부대의 완전 편성률을 낮추는 등의 군 구조 개편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물리적으로 현재의 부대 개편이 2025년 완료 예정인 상태에서 미래 군을 위한 또 다른 부대 개편 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개편안이 마련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비병력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인력의 활용과 여성인력 비율의 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간부인력 획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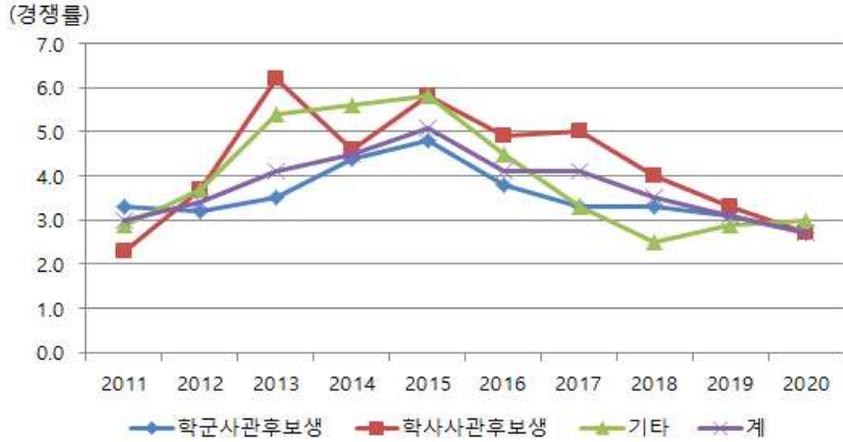
[그림 1] 민간인력 및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 전환방안



*자료 : 국방부 「2021-2025 국방중기계획」 (2020. 0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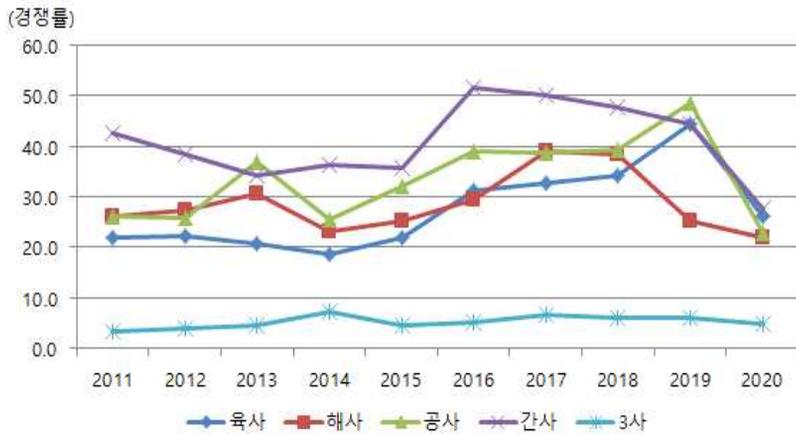
그러나 대안의 핵심인 간부 획득률이 [그림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민간인력의 활용 또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의 월급 상승의 여파가 간부 획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할만하다. 만약 향후 인력획득 정책의 변화, 국방 부문의 민간 개방 등 적절한 국방인력 운용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변화는 상당한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림 2] 장교 후보생 지원율 현황



*자료 : 국방부, 2021 국방통계연보, p.69.

[그림 3] 사관학교 생도 지원율 현황



*자료 : 국방부, 2021 국방통계연보, p.70.

2. 군 간부의 취업실태

2020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군 복무자와 제대군인 모두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지는 군 복무 후 재취업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무청이 실시한 장병 설문조사에서도 군 복무자가 고민하는 가장 큰 현안은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국가보훈처, 2020: p62; 국방부, 2020: p97). 과거에는 장기복무가 그리 어렵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군 생활 중 장기복무 선발도 생각한 것만큼 그리 쉽게 되지않아 언제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제대군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 국방부와 보훈처에서는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군 복무 중 간부들에게 생애설계와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국방전직교육원이다. 국방전직교육원은 군 복무 중에도 부단히 사회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림 4]와 같이 진로설계 및 진로교육, 전역이 임박한 전직지원기간 중에는 기본 및 맞춤형 교육, 전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4] 군 간부 전직지원교육체계(국방전직교육원)4)



* 자료 : 전역간부안내서(국방전직교육원). 2021.

또한 전역후 사회로 복귀할 시점에 임박해서는 국방전직교육원 외에도 보훈처가 합류하여 교육 및 취업을 중첩해 지원하고 있다. 국방전직교육원이 교육

4) 2021년 전역간부안내서(국방부), https://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2104130931521040.pdf

에 더 비중을 둔다면 보훈처는 취업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말 기준,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전역자 취업률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이 61.3%로 나타났다. 과거 통계 결과 제대군인 취업률이 일반인 고용률보다 앞섰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미미하기는 하나 항상 일반고용률이 제대군인 취업률을 앞섰던 점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대로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와 보훈처의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여진다.

<표 3> 제대군인 취업률 및 일반인 고용률 비교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제대군인 취업률	54.3	55.4	57.9	57.5	61.3
일반인 고용률	60.6	60.8	60.7	60.9	60.1

* 자료: 2021년 제대군인 취업률 분석결과, 보훈처 2021.

그러나 2016년 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5개년 취업률 통계치가 대략 57% 내외 인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2명중 1명 꼴로 취업했다는 결과이다. 그리고 정착 취업이 가장 절박한 시기인 전역 1-2년차에는 불과 40% 수준에 머무는 현상도 큰 문제다(대략 4-5년 경과해야 60% 수준 도달). 장기간 구직활동으로 인한 피로도도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10년 이하 중기복무자는 취업이 더욱 어려운 구조 역시 문제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들은 대다수(90.2%)가 군인연금 수령 연한에 못 미쳐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전역 전 전직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전직지원기간도 불과 3개월로 장기복무자(10개월)에 비해 턱없이 짧다.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⁵⁾

제대 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자 제대 군인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5) 민간 구직급여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해온 것과 달리,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은 지난 2008년 지급을 시행한 이래로 장기복무자 월 50만원, 중기복무자 25만원으로 13년째 고정돼 있다.

7천 여명 이상의 직업군인이 계급장을 내려 놓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군 복무로 인해 단절된 사회적응 교육을 시킨 후 기존 직위에 취업시키는 방식이다. 군내 및 공공직위는 물론 사회 일자리도 진입하기에는 이미 포화상태이다. 예산확보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직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미 확보된 일자리 안에서 싸워야 하는 제로섬 게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 직위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타 부처의 ‘직접일자리 사업’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심각한 사회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직접일자리 사업이란 장기실직자, 취업취약계층을 일자리에 신속히 진입시킬 목적으로 사회 수요가 많은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물론 한시적, 경과적 일자리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의 활로를 마련해 주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⁶⁾

현재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하는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 취·창업 관련 지원제도는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제는 제대군인 취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민간군사기업(PMC) 제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국내외 민간군사기업 추진현황

1. 민간군사기업(PMC)의 개념과 형태

현대의 기업화된 유형의 민간군사기업은 대략 1990년대 초에 출현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민간군사기업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초 전쟁 관련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평시 군 아웃소싱 연계 차원에서 훈련·군수지원

6) 정부는 고용 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천3백억원을 증액함과 동시에 참여 인원도 4만9천명을 추가 편성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내용) <http://www.moel.go.kr>(검색일, 2022.7.21).

분야 등 군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민간군사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싱어의 개념을 적용,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이며 교전, 전략입안, 첩보활동, 위협평가, 작전지원, 군사훈련, 전문기술 등의 군사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법인체”로 이해하고 있다. 즉 아웃소싱, 민영화 등의 결과로 생겨나 군사부문으로 발전된 기업을 말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관련 재화와 용역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방위산업체와는 <표 4>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다.

<표 4> 민간군사기업과 방위산업체의 차이

구분	민간군사기업	방위산업체
영역활동	군 관련 재화보다는 용역에 초점	재화와 용역의 제공
교전행위	참가	불참
최종수요자	다양(정부, 국제기구, NGO 등)	주로 정부(또는 군)
육성/규제	정부의 육성·규제가 거의 없음	정부의 육성 및 규제를 받음 (군사력건설방향, 산업정책에 영향)

* 자료 : 이상경,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PMC 제도적 도입(2017)

일반적인 민간군사기업의 활동범위는 제공하는 용역 범위·무력 수준에 따라 <표 5>와 같이 크게 군사공급, 군사자문, 군사지원 분야로 분류한다. 군사공급 분야는 전장에서 전투행위 / 야전 부대 지휘·통제 등 실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위험도가 가장 높고 또한 이로 인한 법적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군사자문분야는 전략/운용/조직상의 자문 및 훈련을, 군사지원은 정비/보급/수송/기술지원 등 후방지원이나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군사공급 분야와는 반대로 위험도나 법적문제 확대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표 5> 민간군사기업의 활동 분야 및 범위

구분	군사 지원	군사 자문	군사 공급
활동 분야	·정비/보급/수송/기술지원 등 후방지원이나 보조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운용/조직상의 자문 및 훈련	·전장에서 전투행위 / 야전 부대 지휘통제 등 실전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주요 특징	·범위와 수입 최대 ·업무 가장 다양함	·교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고객들이 모든 책임 전담 ·군대재건 필요한 고객	·직접 전투 참여 ·제3국의 고객을 겨냥 ·긴박한 위협상황에 이용

		← 위험도 낮음					위험도 높음 →					
		평상시		혼란기			유사시					
활동 범위	보급, 정비, 식량 외부 위탁	전문 분야 교육 담당	군 부대 재편 담당	재난/비상 사태 사후 처리	무장 경비	군사 정보 수집 및 처리	특수 부대 교육 훈련 담당	후방 지역 군수 체계 구축	전투 정보 수집 및 처리	작전 계획 및 지휘	주요 장비 제공 및 운용	전투 행동 직접 참가
	← 법적 문제 적음						법적 문제 많음 →					

* 자료 : 민간군사기업 활용실태조사 연구, 우제웅 외, 2006. p.9. 재구성

광범위한 군사·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군사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표 6>과 같이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법인 외에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이나 공사·공단까지 포함하는 특수법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표 6> 민간군사기업의 형태

구분	회사법인	회사외의 법인	
법인분류	주식,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공사, 공단, 연구원 등)
법률근거	상법(제170조)	민법(제40조, 제43조)	특별법

* 자료: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조사지침서, 통계청, 2016.

이러한 민간군사기업은 군 업무 아웃소싱과 연계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특히 제대군인의 경험 및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군사·안보 시장이라는 매력과 취업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연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시장규모, 제대군인의 역할론 등 주로 이론적, 학술적 연구에 머무르다보니 제도권 접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2. 국내외 민간군사기업(PMC) 사례

국내외적으로 활동중인 민간군사기업 업무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경호, 훈련만 지원하는 군사공급기업이 있는가 하면, 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있다. 민간군사기업의 등장 초기인 1990년대에는 직접적 군사작전 참여보다 군사 지원 및 자문, 행정서비스 등의 지원업무가 주를 이뤘었다. 그러다 작전지역의 환경, 군과 정보기관, 활동 국가의 다양한 요구 등에 따라 군 후방 작전 수행, 제한된 군사공급 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수익도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천영택(2012) 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민간군사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7개 국가에서 600여 개의 민간군사기업이 창설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민간군사기업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 중 미국의 점유비중은 65%를 넘고 있고,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국내외 민간군사기업 및 활동 분야는 아래 <표 7>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 세계 주요 민간군사기업의 사업영역 현황⁷⁾

주요기업(국적)	분야별 수행과업		
	군사지원	군사자문	군사공급
ACADEMI(←BLACK WATER)(미)	폭발물 탐지, 경호, 수송	군사훈련 프로그램 운용, 보안서비스	지상 및 항공 작전 지원
ATAC (Airborne Tactical)	-	항공기전술훈련, 항공 시뮬레이션	-

7) http://www.privatemilitary.org/private_forces.html(검색일. 2021. 6. 15.).

Advantage Company)(미)		제공, 해·공군 전술항공기 훈련	
AKE Group(미)	민간 경호업무	-	-
ArmorGroup (미)	경계/경비	경비/위기관리 관련 교육	위기관리업무
Blue Mountain(미)	요인·회사경비, 의료제공	해상보안 및 보안전문가 교육	-
CUBIC(미)	네트워크 및 통신망 제공	가상게임 기반 훈련 솔루션	(작전 지원)
KBR(미)	급식 제공, 세탁, 우편, 병참업무	교육훈련	경호·경비, CIA 작전지원
Engility Corporation(미)	MPRI(리더개발, 조직설계)	MPRI(보안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미군교육훈련)	MPRI(민주주의 전환, 제한적 전투대행)
DynCorp International(미)	물류기지 운영, 항공, 보안서비스	아프카니스탄 군대 훈련	경호·경비
Pilgrim Elite(미)	-	-	특수부대 인력, 항공기/선박 제공
The Risk Advisory Group(미)	-	공공민간조직전략분 석/자문	-
The Brink's Company(미)	-	ATM관리, 현금 수송 등	-
ALGIZ Services (영)	-	-	무장경호, 경비 솔루션 제공
Gurkha International Group of Companies(영)	크루즈 탑승객 보안/경비, 아시아 인력 제공	-	-
G4S(영)	경비 제공, 장비 감시, 수감자 호송	-	-
Blue Mountain Group(영)	해상테러 방호	-	-
Beni Tal (이스라엘)	-	보안서비스 제공	-

olan(이스라엘)	-	-	군 특수작전, 대테러 작전 서비스 제공
Vinnel(사우디)	물류지원, 건설	훈련, 컨설팅	-
Executive Outcomes(남아공)	-	-	전투 지원(대행)
Global Dutch Dynamic(네덜란드)	기업·정부·NGO 경호/경비	-	-
Top Aces(캐나다)	-	육해공군 항공훈련서비스	-
GEBB(독)	부동산관리, 군수조달 등	경영효율화 싱크탱크	-
셸드인터내셔널 시큐리티(한)	물자지원, 유엔 군수장비 조달	경호·경비 자문	선박 호송, 육상 경호·경비업무
블렛케이(한)	-	보안, 경호·경비	해외 기업인원 경호·경비업무

* 자료: 우수인력 획득위한 민간분야 활용방안 연구, 2022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군사지원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케이비알(KBR)이다.⁸⁾ KBR은 1998년 M.W. 켈로그가 브라운 & 루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과 합병하여 만들어진 회사로 현재는 항공우주방위 사업과 이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소개되고 있다. 관련 분야에서 KBR은 코소보 전쟁 당시 코소보 평화유지군을 지원했으며, 발칸반도에 주둔한 미군들의 식사, 식수 제공, 피복 세탁, 우편 업무로부터 건설, 수송, 장비 운영·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라크전에서는 유전 지대의 화재 지역에 대한 진화와 복구 등의 재건사업에 참여하였고, 미군 병사들의 식사와 세탁, 쓰레기처리, 우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군 뿐만 아니라 에너지국, 국토안보부, 미항공우주국(NASA), 각 주, 학교까지 다양하며, 업무 범위도 군사지원 뿐만 아니라 군사공급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군사자문 분야의 대표적 기업은 2012년에 설립된 미국의 엔질리티(Engility Corporation)이다. 엔질리티 산하의 MPRI는 다수의 장성과 1,200명의 퇴역장교, 700명의 민간인으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150여 개 이상의 사업을 수

8) <https://www.kbr.com/en>(검색일, 2021. 6. 15.).

행하고 있다.⁹⁾ 대표적인 사업 실적으로는 1995년 이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맹의 군대를 훈련시켜주는 조건으로 1억 4천만 달러에 프로그램 운용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1996년 7월부터 보스니아 연맹 군대에 약 5천만 달러 '기차와 장비' 계약과 1억 달러의 무기 이전 프로그램 운용, 1999년 콜롬비아 정부와 마약 퇴치를 위한 430만 달러 계약, 2000년 이후 200여 개 대학에 대한 ROTC 교육을 위한 2억 9천만 달러 계약 등이 주요 성과로 보고되고 있다.

군사지원의 대표적 기업인 다인코프(Dyncorp International)¹⁰⁾는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다. 1995년부터 군사분야에 진출한 본 기업은 구성원 대부분이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항공 회사로 시작한 이 회사는 비행 운영 지원, 교육 및 멘토링, 국제 개발, 정보 교육 및 지원, 비상 작전, 보안 및 운영 및 육상 차량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약 30억 달러 이상을 받고 있는데 이는 DynCorp의 수익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직원의 수는 23,000명이며, 미국 정부 군사계약 순위 13위에 올라있다. 기타 DynCorp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경비대에 대한 보안과 이라크의 신생 경찰 훈련을 담당하였고, 2018년에는 LOGCAP II 계약을 수주했으며, 현재 LOGCAP IV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 고객은 국방부이나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의 IT 부서와도 계약을 맺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 기업으로는 블렛케이와 쉐드인터네셔널이 있다. 블렛케이는 순수 내국인이 창립한 민간군사기업으로 취업정보를 다루고 있는 'JOBKOREA'에 따르면 2011년 설립되어 경호·경비·안전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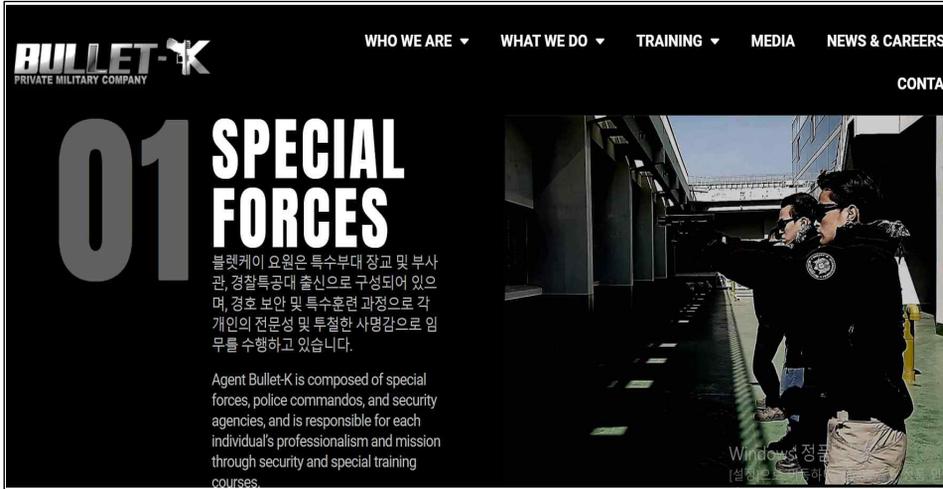
9) MPRI는 1987년 버지니아 주에서 창설한 회사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위임업무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요 고객은 미 국방부이며 주요 지원 서비스는 ROTC 교육 등 군사 교육과 군사공급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Military_Professional_Resources_Inc(검색일. 2021. 6. 19).

10) <https://en.wikipedia.org/wiki/DynCorp>(검색일. 2021. 6. 19).

11) https://www.jobkorea.co.kr/Recruit/Co_Read/C/jdy782/Company_name/(검색일, 2021. 7. 1.).

[그림 5] 블렛케이의 홈페이지 홍보자료¹²⁾



홈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블렛케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외국 민간군사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특전사 출신 직원을 중심으로 인원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 해외 2010년 아프카니스탄 PRT기지 KOICA 무장경호 / 바그람 미공군기지 보안경호, 2012년 한화건설 이라크 사업장 시큐리티서비스 및 현지 숙소 보안경호, 아프카니스탄 산업보안회사 아실칸(ASILKHAN) 군사훈련 제공,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태화산업개발에 발주한 발전소 공사현장 경비, 재향군인회 해외 사업단의 물류 호송 경비 등을 맡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경호보안 및 VIP 경호 수행,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보안경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 임원진 신변 보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블렛케이에서 독립한 맨티브(Mantive)가 이라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¹³⁾

월드인터내셔널 시큐리티(shieldinternationalsecurity)¹⁴⁾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월드인터내셔널 시큐리티는 2008년 월드 컨설팅

12) <http://bullet-k.com/>(검색일, 2021. 7. 2.).

13) 백철 기자(pudmaker@kyunghyang.com). 주간경향 1439호 2021. 8. 9일자. (검색일, 2021. 7. 2.).

14) <http://www.shieldinternationalsecurity.co.kr/>(검색일, 2021. 6. 16.).

(SHIELD Consulting Co)으로 시작하여 2009년 한국 본사 설립, 2012년 영국지사 설립 및 이라크로 사업 범위 확대, 2018년 해양수산부 해상특수경비업 등록 등을 통해 국제적 기업을 성장한 기업으로 육상 및 해상 안전을 위한 보안 컨설팅 및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상 분야에서는 선박 보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소말리아 인근 인도양과 아덴만 등 위험지역을 통과해 항해하는 상선들의 안전보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육상에서는 치안 및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 및 기타 해외지역에서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식자재 및 건설자재 지원, 간이 숙박시설 운용, 중장비 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계열사인 사이버 시큐리티와 협업을 통해 사이버 보안에서 요구되는 물리적 보안과, 침투 테스트의 일부인 customized USB와 portable hacking device 등의 외부 침투 가능성을 판단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테러 작전 및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유엔 PKF에 공급하고 있다.

3. 민간군사기업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민간군사기업 현황을 볼 때 대부분의 민간군사기업은 군 관련 전문능력을 보유한 제대군인이 핵심 역할을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제대군인의 취업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국방 안보분야의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축이 된다. 이러한 민간군사기업의 확장성을 고려해볼 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제도화란 사회적 규약이나 관습 등이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이나 지침 등으로 잘 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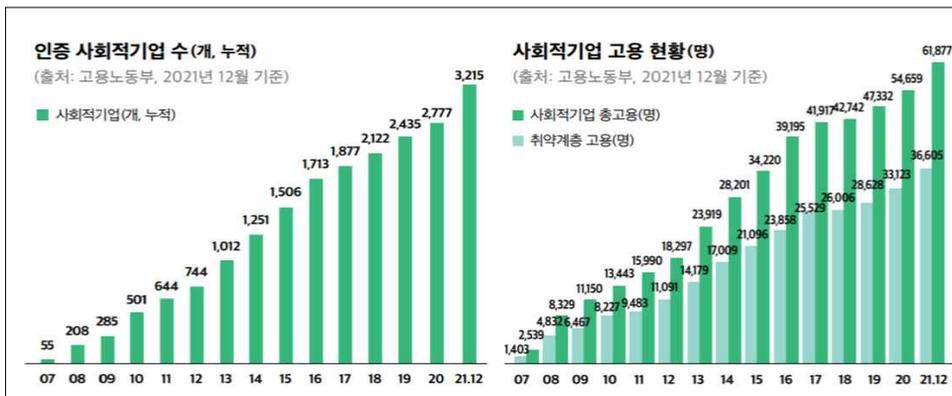
사실 우리나라는 민간군사기업의 근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¹⁵⁾에 군은 전투임무에 전념토록 하고 전투근무지원 분야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민간위탁을 확대한다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의 형태와 방법이 다소 불분명하고 경직되게 받아들여져 그동안 일반 기업이 참여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어왔다. 즉 사회의 다양한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10217호, 2010.3.31.]제17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령이나 지침 등이 명확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이 미흡했던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현재 민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단순히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¹⁶⁾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가지 목적을 지향한다.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해 주는 기업만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자격)을 사용할 수 있다.¹⁷⁾ 2021년 12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수는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약 3,215개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61,877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36,605명에 달해 약 59.2%로 절반이 넘는다. 사회적기업이 법에서 정한 취약계층, 즉 장애인·경력단절여성·고령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사회적 기업 수와 고용현황



* 자료: 한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2022년 안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회적기업법 제2조2항(정의))

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사회적기업 안내브로셔 p7).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법¹⁸⁾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사회적기업법 제정 사례는 민간군사기업 제도화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민간군사기업도 제대군인의 일정 취업률을 보장하고 기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법령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대군인은 취약계층은 아니다. 여성, 청소년,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도 다르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배려, 예우 측면을 고려한다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 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국방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를 보호하려는 가치의 구현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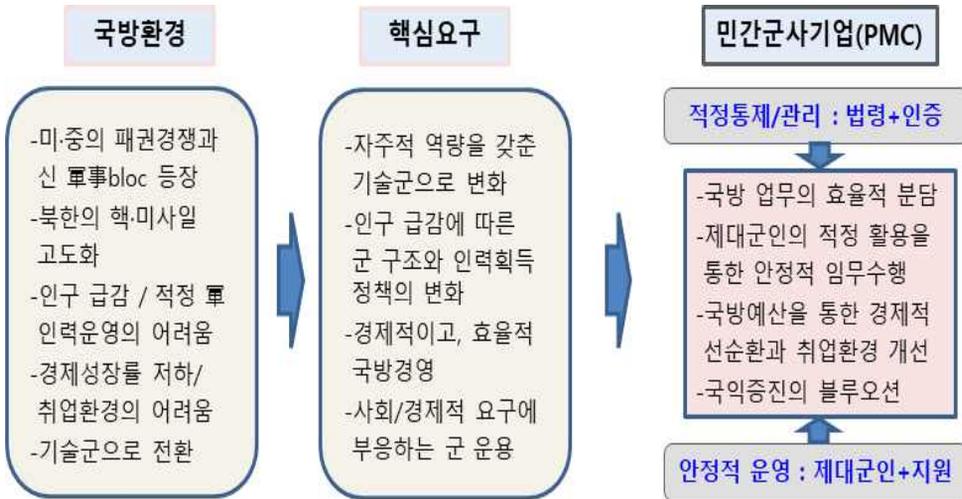
IV.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 제도화 방안

1. 한국형 민간군사기업 제도화의 추진 방향

한국형 민간군사기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우선 네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인구급감에 대비, 미래 기술군으로의 변화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군은 전투임무에 전념하고 전투근무지원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려는 국방개혁 추진과 맥을 같이해야 한다. 둘째, 민간개방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대군인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단순히 기업의 이익 창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각종 인증제도 등을 통해 적절한 지원과 통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국방예산을 활용하여 경제적 선순환과 취업환경 개선효과가 일어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 모델을 구상하면 아래 [그림 7]과 같다.

18)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 및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로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제정한 법률 [법률 제 11275호, 2012. 2. 1, 시행]

[그림 7]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 모델



* 자료: 우수인력 획득위한 민간분야 활용방안 연구, 2022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민간군사기업 업무는 국가안보 서비스를 다룬다는 특성으로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는 없다. 인증된 기업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란 기업이 '국가안보'라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 즉 국방 업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제대군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혜택은 민간군사기업도 기업이므로 일정한 경영이익이 창출되도록 의무를 다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는 지원을 말한다. 법체계를 검토함에 있어 우선 기존 법령을 개정 보완할 것인지, 신규 법령을 제정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관련 법률 중 개정 가능한 법률로는 국방개혁법, 제대군인지원법, 국방전직교육원법 등이 있다. 기존법률을 개정하는 접근이 당연히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울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기에 이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민간군사기업 관련법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기 존 법 령 개 정	국방 개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원 활용 측면에서 PMC에 대한 내용 추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정부 추진법률로 추동력 확보 한계 법구조상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제대군인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내용과의 연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보훈처·정무위 소관 법률로 국방부 관리 한계 법구조상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국방전직 교육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대군인 취업 등과 연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에 관한 법률로서 PMC 내용 포함 부적절 법구조상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신규 법령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동력 확보 가능 국방부의 효과적 집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법률 제정에 따른 부담

* 자료 : 이상경,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PMC 제도적 도입(2017) 재정리

기존 법령들을 분석해 보면 각각의 법률이 담고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법률들이다. 따라서 추동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포괄적 위임 입법금지 원칙들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정 보다는 신규 법률로 제정하는 쪽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령(안)의 구조는 일반적 법령 흐름의 형태를 따르되 가장 유사한 법령 성격을 지닌 사회적 기업법의 구조를 벤치마킹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법령 명칭도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적기업법)과 같은 맥락에서 민간군사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 민간군사기업법)으로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법은 제1조(목적)으로부터 제23조(과태료) 조항에 이르기까지 총 23개 본문 조항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벤치마킹한다고 했을 때 일반 사안에 속하는 정관, 운영위원회조직 및 편성, 실태조사, 민간군사기업 육성기본계획수립 등 17개 조문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법이 지향하는 제정 취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법 조문은 이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되 논쟁의 여지가 있는 6개 분야(목적, 정의 및 범위, 인증절차 및 기준, 지원범위, 수의계약, 취업제한 예외조항 등)는 별도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법령(안)을 검토하였다.

2. 민간군사기업법(가칭) 법령(안) 검토

1) 민간군사기업법의 목적

민간군사기업법의 목적을 검토함에 있어 두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첫째, 민간군사기업법은 군의 전투력 유지·발전이 주목적이고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은 부수적 효과라는 관점과 둘째, 제대군인 전문성 활용 및 생활 안정화 측면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병역자원의 감소 및 무기체계 첨단화·복합화에 대응하여 오랜 기간 군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제대군인을 활용하는 민간군사기업의 국방 운영의 효율성 도모는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제대군인 생활 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 목적도 전문성 활용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측면은 서로 배치되거나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민간군사기업법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정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군사기업법의 목적 법령(안)
제0조 (목적) 이 법은 민간군사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 ¹⁹⁾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민간군사기업의 정의 및 범위

민간군사기업의 정의 및 범위는 어떤 기업까지를 민간군사기업으로 간주할 것인지, 또한 민간인이 무기를 소지하는 군사공급기업 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이다. 우선 <표 9>와 같이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군사공급기업 포함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결국 군이 수행해야 하는

19) 시장 자율에 맡긴다면 관리할 필요가 없으나 민간군사기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분야 기능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국방분야 기능 수행을 위해서 정부가 허가, 인가, 인증 등과 같은 관리가 필요

국방 서비스를 제공 또는 대행하는 기업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더하여 법적 인증을 통해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기업 및 기관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간군사기업의 업무관장 범위는 아래 군사공급기업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의견과 국내환경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민간인이 무기 등을 소지하고 전투행위 등을 수행하는 군사공급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단, 외국진출기업 및 국제항해선박 등의 경호·경비·보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표 9> 민간군사기업과 군사공급기업에 대한 정의와 선행연구 자료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		
Peter Singer (Brookings Institute)	스위스 정부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Carlos Ortiz (British Pol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과 밀접한 연관 군사기술 지원 목적 법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 및 보안 용역 제공 사설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군사적 수단 군수지원·장비조달·정보 수집 제공 합법적 기업체

군사공급기업 포함에 관한 선행연구		
우제웅·이혁수(KIDA)	이수진(공군사관학교)	김환영(평화재향군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군사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전투행위·작전지원은 활용가능성이 거의 없음 해외파병, PKO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안보환경을 고려시 군사공급기업의 전면적인 활동은 제한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사회적 합의는 군대·경찰 이외엔 엄격한 절차·감시·통제를 받을 경우만 총기 사용 허가

* 자료 : 이상경,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PMC 제도적 도입(2017) 재정리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민간군사기업은 국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행하는 기업 중 인증받은 자로 정의하되, 국방관련 서비스의 범위는 군사공급분야를 제외하고 아래 제시한 분야로 정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군사기업의 정의 및 범위 법령(안)

제0조 (정의 및 범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군사기업”이란 (군사에 대한) 국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행하는 기업으로, 제 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국방 관련 서비스”란 군사훈련 및 자문, 기술지원, 교육, 경호·경비·보안, 군수지원, 인사·복지·시설, 대민 지원 등을 말한다.

3) 민간군사기업 인증 절차 및 기준

민간군사기업 인증 절차 및 기준은 공공사회 서비스 특성상 시장원리의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을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야 하므로 계약관계 및 계약관리 과정 상의 일정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이러한 계약상의 일반적인 통제 형태는 인증이며 인증의 기준은 의무 고용률이다. 따라서 의무 고용률을 얼마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 타법에서의 기준 고용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 등이다. 그밖에 사회적기업법과 방위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업체 인증 및 관리방법은 <표 10>과 같다.

<표 10> 타법에서의 업체 인증 및 관리 방법

사회적기업법	방위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형태 • 특정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목적 실현/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기준/정관 및 규약 • 일정 비율의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산물자 생산 •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승인 필요

* 자료 : 이상경,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PMC 제도적 도입(2017) 재정리

민간군사기업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므로 지원(혜택)과 의무 간의 적절한 균형 차원에서의 인증·관리가 필요하다. 민간군사기업이 창출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 이상의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게 바람직하다. 만일 단일 기업만 참여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수익 창출 여건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민간군사기업에서의 인증과정은 방산물자·업체와 유사하게 최초 인증 후 주기적인(예: 5년) 조사를 통해 존속/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민간군사기업 인증 요건은 채용비율 외에 조직 형태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으로 폭넓게 정하고 제대군인 채용비율은 업종·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 즉 군 전문성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채용 비율을 높이고 일반 용역사업 성격의 경우에는 낮게 설정(예: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기관은 20%, 기업은 3~8%로 설정) 하는 식으로 아래와 같이 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군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단순히 벌금을 내고 의무를 회피하는 고용명령제와 같은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²⁰⁾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인증 관련 법령(안)
<p>제00조 (민간군사기업의 인증)</p> <p>① 민간군사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0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국방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국방부장관은 매 5년마다 전체 민간군사기업에 대하여 인증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제0조 (민간군사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민간군사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p>

20) 미국의 베테라티(Veterati)라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제대군인) 비율이 30%가 되어야 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사회적기업 안내브로셔 p49).

법인 등 대통령령²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국방 관련 서비스 제공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²²⁾으로 정한다.

4. 규모나 업무수행능력(인력, 설비, 자산규모 등).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²³⁾으로 정한다.

5. 제00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②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민간군사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²⁴⁾으로 정하고, 민간군사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고시한다.

4)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

수익이 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없다(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차라리 정부 내에서 수행하는 게 타당)는 의견이 공존한다. 현재 관련법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표 11>과 같이 다양하다. 기업이 군 관련 특정 기술·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군 인력확보 제한으로 민간에서만 수행 가능한 서비스이며, 반면 해당 기술·역량은 산업적 차원에서 확산 가능성이 낮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혜택 받는 것도 제한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국방 차원에서 경영·교육훈련·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 자체의 간접비 상승비용을 최소화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21) 대통령령: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다른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함

22) 대통령령: 전체 근로자 중 제대군인의 고용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분야에 따라 차등 설정)

23) 대통령령: 1인 기업 등은 불포함 등의 제한사항

24) 국방부령: 인증 신청, 인증서 발급, 인증서 재발급 등

<표 11> 타법에서의 기업 지원 방법

사회적 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특조법	1인창조기업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 교육훈련 • 시설비 등 • 조세감면·사회보험료 •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합리화기술향상 • 중소기업간 협력 • 사업영역 보호 • 공제제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공급 • 기업활동인력공급 • 입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 거래 • 교육훈련 / 기술개발 • 아이디어 사업화 • 해외진출·홍보 • 금융·조세 등

* 자료 : 이상경,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PMC 제도적 도입(2017) 재정리

군 인력이 부족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분야 중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업무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재정이나 조세자금 융자 등의 지원 장치가 마련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제반 지원(경영, 교육훈련, 채용, 시설비 지원 등)을 보장하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다.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안)
<p>제00조 (경영지원 등)</p> <p>①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00조 (교육훈련 지원 등)</p> <p>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민간군사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00조 (인력채용 지원 등)</p> <p>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채용을 위하여 제대군인 추천 및 취업 알선을 할 수 있다.</p> <p>제00조 (시설비 등의 지원)</p> <p>국가는 민간군사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제00조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국방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00조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조 (재정지원 및 자금융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민간군사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민간군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다.**

1. 용역 관련 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4. 연구개발 및 유희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5. 그 밖에 민간군사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③ 재정지원 및 자금융자 등의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 여부 판단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나 수의계약 적용 관련 이슈는 공개경쟁의 원칙을 넘어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관점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우선 민간군사기업이 <표 12>의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에 있는 것처럼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사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안상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표 12> 방위사업법 수의계약과 사회적기업에서의 우선구매제도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국제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제3항**에서 수의계약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 구매계약,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장기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 적의 침투·도발 등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물자 조달 계약,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양산 단계 전까지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계약)

사회적 기업에서의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로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무기체계나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이 담당할 국방 업무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방위사업법의 형태를 따라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우선구매의 경우는 수의계약 혜택과의 유사성 및 사회적기업에서의 우선구매 제도 등 타 부처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당위성 확보 측면에서 제한사항이 존재하므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을 종합해 볼 때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 관련 법령(안)

제00조 (수의계약의 체결)
 정부는 국방 관련 서비스에 대해 민간군사기업과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²⁵⁾으로 정한다.

25) 대통령령: 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법 제13조의 후단에 따른 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적의 침투·도발 등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물자를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안상 필요에 의해 민간군사기업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국방 관련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안정화 전까지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조항 관련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에 대해 <표 13>과 같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표 13> 공직자윤리법에서의 취업제한 및 예외 조항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 (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방위사업법에서도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법령(안)을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다.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법령(안)

제00조(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예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의 군사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군사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대군인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6개의 법령(안)은 주로 쟁점의 소지가 있거나 법령의 성격을 좌우하는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그 밖에도 일반 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하는 다른법률과의 관계, 운영주체별 책무, 민간군사기업 운영위원회, 육성 기본계획, 실태조사, 정관, 보고, 인증의 취소, 권한의 위임 및 위

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법령 구조가 유사한 사회적기업법을 벤치마킹하였다. 제1장은 법령의 제정 목적으로부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총칙’, 제2장은 민간군사기업의 역할과 책무 등을 명시한‘운영 및 관리’, 제3장은 민간군사기업의 인증 및 이의 취소 등에 대한 절차를 명시한‘인증 및 지원’, 제4장과 제5장은 앞의 내용을 보충하는‘보칙’과‘벌칙’등으로 명시하여 전체 법령의 구조는 아래 <표 14>와 같이 될 것이다.(법령안 전문 부록 붙임 참조)

<표 14> 민간군사기업에 관한 법률의 구성

구분	조 항	구분	조 항	
1장 총칙	제1조 (목적)	3장	제13조 (인력 채용 지원 등)	
	제2조 (정의 및 범위)		제14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 (수의계약)	
2장 운영 및 관리	제4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인증 및 지원	제16조 (인증업체 인센티브 부여)	
	제5조 (민간군사기업 운영위원회)		제18조 (재정지원 및 자금융자 등)	
	제6조 (민간군사기업 육성 기본계획)		제19조 (보고 등)	
	제7조 (실태조사)		제20조 (인증의 취소)	
3장 인증 및 지원	제8조 (민간군사기업의 인증)	4장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조 (인증 요건 및 절차)		제22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예외)	
	제10조 (정관 등)	보칙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 (경영지원 등)		5장 벌칙	제24조 (과태료)
	제12조 (교육훈련 지원 등)			

3. 민간군사기업법의 효과적 통제방안

민간군사기업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병력 절감 및 예산 절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사익’에 기반한 민간기업이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립기업 성격에 맞게 운용방식을 결정하고, 국방이 가지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제도에 근거한 통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은 제대군인 고용을 통해 업무수행력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노조 또는 내부인력 조정에 따른 반발 등의 문제로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 의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 15>에 제시된 민간군사기업 운용을 위한 기업 선정 절차와 단계별 지침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표 15> 민간군사기업 대상범위 선정, 업체선정 및 업무 운영절차

구분	절차 수립지침
대상범위 선정	위탁 분야 판단 → 적정 위탁 수준 판단 → 협상전략 수립 → 공모 → 대상기업의 운영실태와 경영진단
업체 선정	민간군사기업 인증업체 확인, 계약 체결
업무 운영	사후관리 대책 강구: 측정 → 평가 → 개선 (성과와 업무수준 도달 시까지 지속 관리 및 지원)

* 자료 : 이상경,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PMC 제도적 도입(2017) 재정리

또한 인증제도는 제대군인 적정 취업률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그림 9]와 같이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인증 및 계약절차도 사전 철저히 마련해 놓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림 9] 민간군사기업 인증 및 계약 절차



* 자료 : 이상경,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PMC 제도적 도입(2017) 재정리

병행하여 민간군사기업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부서와 국방부나 육군 관련 기관(부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회적기업을 통제하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16>은 2021년 경기도에서 발주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공고문이다. 이 예산 지원사업에는 반드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다. 인증의 핵심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근로자를 반드시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다. 다시말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참여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한 기업은 아무리 기업 규모가 크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표 16> 2021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 공고문

- | |
|--|
| <p>1. 사 업 명 : 2021년 제0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p> <p>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p> <p style="text-align: center;">* 2021. 4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

* 자료 : 2022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고용노동부).

위와 같은 사례를 민간군사기업에 적용한다면 아래<표 17>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간군사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경기도의 예처럼 국방부장관이 제대군인 채용 비율을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채용비율은 앞서 법령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야별 비중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표 17> 민간군사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예)

- | |
|--|
| <p>1. 사업명 : 0000년 제0차 민간군사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p> <p>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고, 근로자의 20(50)% 이상을
제대군인으로 고용한 기업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증한
기업</p>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 접수만료일 기준, 근로자의 20(50)% 이상이 중기
복무
이상 제대군인으로 구성</p> <p>3. 참여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근로자의 20% 이상을 전역군인으로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군사기업 활용은 아직 시작 단계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운영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시장, 법체계, 상황 등에 부합하는 기존의 업체나 유사업체 중 인증 자격심사를 거쳐 1~2개 업체를 선정, 시범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과거 국방연구원(KIDA) 연구자료에 의하면 KCTC(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를 아웃소싱 개념의 민간군사기업으로 시험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²⁶⁾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 18>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군은 전투임무에 전념토록 하고 전투근무지원 분야는 민간자원 활용 및 민간위탁 확대가 가능함에 따라 국방개혁 차원에 기여하고 KCTC 차원에서는 반복되는 훈련에 맞춤형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수준높은 전문 부대육성 및 운영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사회 취업취약 계층인 제대군인의 집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여 PMC

26) 한국국방연구원, 민간자원 활용과 일자리 창출방안, 2011.12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18> KCTC의 민간군사기업화(예)

구 분	민간군사기업화(아웃소싱)
국방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 예산, 교육훈련체계 등 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한 슬림화 불가피 • 전투위주 전력운영과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은 전략적 선택 • 국방 IT분야(과학화) 아웃소싱 확대와 파급효과가 큰 KCTC 시범사업화
KCTC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국방정보체계, 훈련위주 평시 운영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첨단정보시스템으로 구성 - 평시 전투실험 지원, 민간(상용) IT 테스트베드 등 민군 겸용 상시화 •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이 적합한 요소 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술, 기술, 경영의 전문성 필요 - 전장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한 전문성 필요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군인의 전문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대군인: 사회 취업 취약계층, 국방도메인 전문가로 활용 - 집단 일자리 마련에 최적: PMC모델 정립, 군 슬림화의 통로 가능

* 자료 : 이상경,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PMC 제도적 도입(2017) 재정리

추가적으로 당시의 연구진 역시 수행한 설문 결과에서도 전역군인의 선호 분야가 주로 군사훈련 및 군사자문 분야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는 민간군사기업이 전투근무지원분야에 최적화 되어있으며 그밖에도 국군복지단, 국방홍보원, 시설본부 등과 같은 근무행정분야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엿보게 한다. 효율적인 민간 군사기업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에 제대군인 취업 창출과 연계하여 민간군사기업의 사업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통제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수체제를 갖추

는 것이 업무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효율적인 민간군사기업 운용을 위해서는 계약을 감독하는 군 인력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향후 군사작전까지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의 확장을 감안한다면 이를 통제하는 군 인력의 전문화와 역량 구축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V. 결 론

인구의 급감, 경제성장률의 저하, 팬데믹(pandemic)의 일상화, 기술력의 발달 등 다양한 원인이 정부혁신과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군도 이러한 환경에 부합하고,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우리 군이 당면할 문제 중 인구급감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부족과 복지비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민간인력의 효과적 활용 등은 전투력 유지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과 운용은 효율적이며 강한 군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 혁신의 기회를 활용하여 군에서 성실히 근무한 제대군인의 취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민간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인력이 군에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선택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군사기업의 운용환경을 마련해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민간군사기업 제도화 추진에 있어 선진 우방국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법 사례를 통해 민간군사기업법 제정 추진을 모색해 보았다. 동법은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대군인 생활 안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은 현재 국방 업무를 위탁 운영하거나, 대행하는 업체는 물론 희망하는 모든 기업은 참여 가능하도록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 기능을 민간에서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인증 및 관리기준은 적합해야 한다.

법령 제정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본 법령은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공급 분야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법령 제정을 포함한 여기서 제기한 민간군사기업 제도화 과정은 국방부와 당·정, 관련 기관 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사회적 합의 및 협이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22.11.22]

[논문심사일 : 2022.12.02]

[논문수정일 : 2023.02.06]

[게재확정일 : 2023.03.06]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1). 『세상에 희망을 일구는 사회적 기업』 .
- 곽선조(2015). 『민간군사기업의 실태분석을 통한 국내 도입 타당성과 법제화 모색』 .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훈 (2016). 『제대군인의 전문성 발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민간군사기업을 중심으로』 .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두현(2004), “민간군사기업 제도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국경호경비학회지 제7집.
- 김연준(2014). “한국적 민간군사기업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 14호.
- 김용우(2015). 「국방환경 변화와 연계한 민간군사기업 사업 추진방안」 . 군인공제회 민간군사기업 토론회 자료.
- 김원대(2016),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 추진방안(국방전직교육원을 중심으로) 토론자료.
- 백재욱, 정희원(2017). “국방분야 민간인력 활용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 송미원 외(2019). 『제대군인고용진흥원설립·운영 방안』 , 국가보훈처.
- 양욱(2015). "현대판 용병' PMC의 세계; 군인공제회 신사업".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 2370호. 2015. 08. 17.
- 유민호(2012). "PMC(민간군사회사) 용병들도 뛰고 있다." 주간조선 2213호. 2012. 07. 02.
- 이강수 외(2022). 『우수인재획득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민간분야활용방안 연구』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이상경 외(2017).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군사기업(PMC) 제도적 도입 및 발전방안 연구』 . 국방연구원.
- 이장욱(2011). 『전쟁을 삽니다(Purchasing Military Power); 군사대행기업(PMC)과 국가의 활용』 . 서강대학교 출판부.

- 정원일(2018). 「민간군사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관호, 이현지(2017),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주간국방논단.
- 천영택, 이상규, 김태복, 서정문(2012). 『민간군사기업(PMC)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원.
- 최석철, 신동주(2005). “이라크전을 통해 본 국방물류체계 발전방안연구”. 국방연구 48권 제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최응렬(2008).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피터 W. 싱어/유강은 역(2007). 『전쟁대행주식회사』. 서울 : 지식의 풍경.
- 한성욱(2007). “민군 군사협력기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용섭(2012). 『국방정책론』. 서울: 박영사
- 형혁규(2020). “ 「국방개혁 2.0」 의 평가와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

【붙임 #1】 (가칭)민간군사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간군사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대군인 생활 안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군사기업”이란 (군사에 대한) 국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행하는 기업으로, 제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국방 관련 서비스”란 군사훈련 및 자문, 기술지원, 교육, 경호·경비·보안, 군수지원, 인사·복지·시설, 대민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군사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① 국가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민간군사기업은 국방부장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군사기업 운영위원회)

- ① 민간군사기업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민간군사기업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민간군사기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민간군사기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군사기업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3. 민간군사기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민간군사기업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군사기업 육성 및 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민간군사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군사기업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민간군사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민간군사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군사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1. 민간군사기업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간군사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3. 민간군사기업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민간군사기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의 사업성과, 제도 운영과 개선, 인증 및 인증 취소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군사기업의 인증)

① 민간군사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국방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매 5년마다 전체 민간군사기업에 대하여 인증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민간군사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민간군사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국방 관련 서비스 제공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규모나 업무수행능력(인력, 설비, 자산규모 등).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6.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민간군사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민간군사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0조 (정관등)

① 민간군사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영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 지원 등)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민간군사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인력채용 지원 등)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을 위하여 제대군인 추천 및 취업 알선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는 민간군사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의계약의 체결)

정부는 국방 관련 서비스에 대해 민간군사기업과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¹⁾으로 정한다.

제16조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국방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 지원 및 자금융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민간군사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민간군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다.

1. 용역 관련 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
4. 연구개발 및 유희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5. 그 밖에 민간군사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③ 재정지원 및 자금융자 등의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보고 등)

① 민간군사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군사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민간군사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 (인증의 취소)

① 국방부장관은 민간군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민간군사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방위사업청장, 각 군 총장2)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방전직교육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0조에 따른 민간군사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0조제1항에 따른 민간군사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0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수리)
 4. 제00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5. 민간군사기업의 육성

제22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예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의 군사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군사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대군인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민간군사기업이 아닌 자는 민간군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민간군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Abstract

Establish an environment for acquiring excellent human resources to realize 「Defense Innovation 4.0」

– K-PMC Focusing on Improving Employment Environment for Veterans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

Kim, Won-Dae

(Ph.D in HRD Policy Studies)

The recent sharp decline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is at a serious level. Therefore, it is time to urgently prepare strategic alternatives at the government level. Among the problems facing our military in the future, the burden of national finance due to the increase in welfare expenses and the effective use of civilian personnel to effectively replace it are as important tasks as maintaining combat power. At this level,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private military enterprises is essential to creating a strong military.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discharged soldiers who have worked diligently can be actively utilized even after being discharged is the key to creating a virtuous cycle in which excellent personnel can flow into the military. In order to institutionally support this,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cases of the Social Enterprise Act currently being promoted in Korea.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national defense opera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Military Enterprise Act, and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life for discharged soldiers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terms of performing national defense functions in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must be reasonably established, as well as legislation enactment that requires public consensus, so in-depth discussion is required. Depending on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there is a possibility of various debates in terms of the possibility that the military supply field may be included. Therefore, the overall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private military companies, including the enactment of laws, requires the formation of sufficient consensus betwe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a process of social consensus and consultation.

Key words : private military companies (law), social enterprise (law), national security, manpower policy, veterans, institutionalization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김 학 민 *

- I. 서 론
- II. 이론적 검토 및 사례연구
- III. 남북한 통일방안과 군사통합 방향
- IV. 단계별 세부 추진방향
- V. 결 론

논문요약

남북 군사통합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남북통합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자주적 해결원칙과 무력불사용의 원칙, 그리고 통일된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은 세계평화와 역내 안정에 기여한다는 원칙이 준수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한국군 주도의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은 급변한 북한의 요구와 순응에 따라 자주적, 국제적, 민족적, 평화적 원칙 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전제로 준비하고 추진할 단계별 방향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고 목표이다.

본 연구는 통시적, 공시적 관점에서의 해외의 군사통합 사례를 연구하고 한반도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군사통합 방안을 도출하여 기존 연구들보다 창의적이고 구체화된 군사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군사통합 방안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에 정책적, 전략적 추진방안에 크게 기여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통일방안과 단계를 준수하여 연계성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통합 방안을 공존, 흡수, 완성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군사통합 제1단계 공존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사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제2단계 흡수는 군사통합을 이행하는 단계로서 준비, 인수, 편입 등 군사통합 완성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제3단계 통합의 완성은 내외적 통합을 완성하여 군사대비 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남북통일과 군사통합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항시 준비하고 역량을 비축하며 전략적 환경과 여건조성을 통해 기회가 오도록 또는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군사통합, 공존, 흡수, 완성, 준비, 인수, 편입, 개편**

I. 서 론

북한의 김정은은 최근 ICBM, SLBM 등 다양한 미사일 도발로 역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는 북한군 창건 90돌('22.4.25.)에 선제 핵공격 가능성과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22.9.8.) 핵무력 완성에 도취된 듯한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통일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점치게 만들지만, 오히려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긴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과 통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긴요성 차원에서 본 논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독일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일주일 전까지는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현재 북한의 김정은처럼 능력의 과신과 편향적 확신이 최고조일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 및 고립, 차단으로 인한 대내외적 체제 위기는 동독이 그랬던 것처럼 통일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자극시켜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갑자기 올 수도 있다.

남북의 군사통합은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보장하고 기여하므로 정책적, 전략적 차원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독일통일은 합의에 의해 새로운 독일연방국에 가입한 것으로서 동독이 스스로 서독헌법 23조에 가입하면서 통일조약이 체결('14.9.14.)된 것이었다(쉬납아우프 박사(Klaus-Dieter Schnapauß), 한독통일자문 위원). 즉, 통일조약('90.8.31.)은 동독의회가 서독헌법을 수용하여 마련된 기본 틀이며,¹⁾ 2+4조약('90.9.12.) 체결에 따라 통일을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이 구축된 것이다.²⁾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연계된 남북 군사통합은 자주적 해결원칙과 무력불사용의 원칙, 그리고 통일된 자유민주 국가는 세계평화와 역내 안정에 기여한

1) 독일헌법 제23조는 적용대상지역을 규정한 조항. 독일의 12개 주에 적용되며, 독일영토를 구성하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연방가맹과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으로 동독이 국가가 아닌 각주로서 연방정부에 귀속을 결정했다는 의미임. 독일의 Kohl총리는 제헌의회 구성→동·서독 국민투표→통일헌법 제정→양독정부 해체→통일정부구성이라는 절차를 고려했으나, 동독의 빠른 귀속결정에 따라 조기 통일조약에 이르게 됨.

2) 독일 통일조약작성에 참여했던 쉬납아우프 박사(Klaus-Dieter Schnapauß, 한독통일자문 위원)는 독일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와 체제에 대한 합의에 의해 새로운 독일연방국에 가입한 것으로서 동독이 먼저 스스로 서독 헌법 23조에 가입하면서 통일조약이 체결(2014. 9. 14.)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즉, 통일조약을 통해 동독 인민의회가 서독 헌법에 동의해 독일연방에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였음.

다는 원칙이 준수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정부의 통일방안과 연계된 한국군 주도의 군사통합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통시적(通時的), 공시적(共示的) 관점³⁾에서 해외의 군사통합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 방향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연계시킴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실행가능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이 없었고, 작의적이었으며 군사적 관점 위주의 연구들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정책과 연계된 실효적인 군사통합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 및 사례연구를, 3장에서는 남북한 통일방안과 군사통합 방향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단계별 통합방향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며 5장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제시된 군사통합 방향은 남북 통일 및 통합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성공을 보장시킬 것이며, 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통일·통합의 기획을 주도하고 체계적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정책적 결정 및 수립 방향과 추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검토 및 사례연구

1.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통합 및 군사통합

국제정치에서 통합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망라하는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통합과정은 공동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통합단위 간의 지지 정도에 따라 통합의 방향, 시기, 진도가 결정된다. 통합에 대한 시각은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는 경우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었다는 조건과 상태로 보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⁴⁾

3) 통시적(通時的)이란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며, 공시적(共示的)이란 어떤 시기를 횡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공통의 시대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4) Amital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5), p. 4.;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2006), p. 361.

하스(Ernst. B. Hass)는 통합이란“상이한 국가 여건을 가진 정치행위자들이 기존의 국가에 대한 제도적, 법적 요구를 소유하게 된 새로운 핵심부로 자신들의 충성심과 기대, 정치적 활동을 이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칼 도이취(K. Deutsch)는 통합이란“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관계를 획득하고 전쟁 대신 평화적 수단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상호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공동체 의식 달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펜트랜드(Charles Pentland)는 정치통합을“둘 이상의 민족-국가의 구성원들이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 단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또한 미트라니(D. Mitrany)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비정치적인 기능적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단계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이르는 우회적 방식의 기능주의를 제안했다.

반면에 호프만(Stanley Hoffmann)은 정부협상론을 강조하면서,“군사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 분야의 기능적 통합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통합 또는 통일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고 하였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통합의 유형을 경제통합, 사회통합, 정치통합으로 분류하고 정치통합이 가장 어려우나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고 하였다. 정치통합은 단일정책수립 기구가 형성되어야 하며, 대내외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고, 공통된 정체성과 상호 의무감을 가져야 하며 비폭력적 관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대가 상존해야 한다고 하였다.⁵⁾

일반적으로 통합이론은 연방주의, 다원주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로 구분되고 있다. 연방주의(Federalism)는 공식적인 협정이나 헌법을 통해 초국가적인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달성된다고 보는 것으로, 연방이라는 상부구조의 통합이 달성된 이후 역할과 주권의 법적, 제도적 통합을 강조한다. 다원주의

5) Ern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p. 16;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rehensive Survey*, Thir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90), p. 455.;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8), p. 5; Charles Pentland, *International Theory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Faber and Faber Ltd., 1973), pp. 21-23; J. S. Nye,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Little Brown, 1971), pp. 26-54; 양창석, “독일의 통일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박사학위논문(2008.8.).

(Pluralism)는 비폭력적 갈등 해결과 평화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다원주의적 사회의 정치적 통합이 정치엘리트 간의 가치통합을 통해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기능주의(Functionalism)는 경제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정치통합에 이른다고 한다.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는 기능적 협력과 정치적 통합을 통한 파급효과(spillover)의 정치화를 강조하면서, 정치 및 관료 그룹(이익단체, 정당, 정부, 국제조직 등)을 통합의 주된 행위자로 간주하고 중시하고 있다.⁶⁾

군사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통합과 더불어 통일의 과정으로서 상호 연계되거나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연계성보다는 통합과정 위주의 연구들이어서 통시적, 공시적 차원에서의 심층적 연구와 현실성이 부족한 측면들이 있었다. 즉, 제정관, 황진환, 이만중, 하정열 등 남북 군사통합의 최종 지향점인 통일한국군 건설에 중점을 둔 연구들과 권양주, 정충열 등 군사통합방안 결정시기와 절차 위주 및 과도한 군사적 관점 위주로 제시되었다.⁷⁾

제정관은 군사통합이란“체제 통합의 최종단계는 통일이며, 군사 전반의 제반 기능과 조직체계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과정이자 군사활동의 일원화와 공동화를 위한 조직적 결합과정”이라고 하였다. 황진환은 군사통합은“국가통합의 핵심과정으로 결속하려는 국가 상호간의 군조직, 지휘명령체계, 병력과 무기체계 등을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체제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만중은“군사분야의 제반 기능 및 조직체계를 하나의 공동기능 및 조직체계로 결합시키는 과정이며, 국가간의 통합을 통한 군 내, 군 간의 통합”이라고 하였다.⁸⁾

선행연구들은 정치통합에 종속되는 군사통합의 유형을 강제적 흡수통합, 강제적 대등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으로 구분하고 있다.⁹⁾ 강제

6) 박기덕, “남북한 정치적 통합모델의 모색-이론적 논의,” 박기덕·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 p. 354.

7) 김학민박계호나정원, “통일정책과 연계된 남북 군사통합 추진방향 연구: 독일의 군사통합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제88호(한군전략문제연구소, 2022.11.30.), pp. 115~150.

8) 제정관, “남북한 군사통합통일한국군 건설 및 쟁점들”,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1호. 경남대(2003). pp. 127-155; 이만중, “분단국의 군사통합 사례와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905호. 한국국방연구원(2002); 정충열,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 (서울: 시간의 물레, 2014); 하정열, 『평화통일 전략』. (서울: 박영사, 2004); 권양주, “통일 논의와 바람직한 남북한 통일방식”, 『주간국방논단』 제1357호. 한국국방연구원(2011).

적 흡수통합은 베트남의 사례처럼 전쟁 또는 무력에 의한 통일에 따라 패전국 군사력의 무조건적 해체와 무장해제를 통해 승전국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으로서 인적 청산이라는 위협이 수반된다. 합의적 흡수통합은 독일의 사례처럼 흡수통합을 요망하는 국가가 스스로 군사력을 무장해제하면서 주도국에 흡수되는 형태로서 보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합의적 대등통합은 예멘의 사례처럼 합의에 의한 대등적 통일에 따라 체제의 일원화보다는 대등한 수준으로의 단순통합으로서 갈등요인 방지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강제적 대등통합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쉽지 않으며, 유사사례도 없다.¹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연계된 구체화되고 실효적인 군사통합 방안의 단계별 이행전략을 제시하였다. 필연성과 정당성, 안정성, 효율성, 효과성이 달성되어야 하는 남북 군사통합은 군 구조(지휘, 부대, 병력, 전력)의 통합, 물자 및 장비, 시설의 통합, 병력통합으로 구체화될 것이며,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가치와 이념적 통합의 완전성과 일치화가 요구되는 내외적 통합의 완성을 최종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군사통합은 “통일 및 통합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 통합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우선적 또는 동시에 추진되는 통합유형으로서 이질적인 군사체제의 동질성을 갖추기 위한 통합된 노력과 마음의 통합을 이루려는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통합방향을 제시하였다.

2. 사례연구

가. 독일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라며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민족적, 자주적 통일을 요구한 동독은 베를린 장벽붕괴(‘89.11.9.)이후 정치·경제·사회개혁과 언론의 자유보장에 이어 자유선거(‘90.3.18.)를 치루면서 SED(사회주의통일당)의 1당 독재를 폐지시켰다.

9) 남북 특성상 군사통합이 정치통합에 우선시 될 수 있으며, 군사통합에 의해 정치통합이 결정될 수도 있다. 군사통합은 국가통합의 일부분이며, 우선순위로서 중요한 부분이며 합의와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10) 김학민·박계호·나정원, “통일정책과 연계된 남북 군사통합 추진방향 연구: 독일 군사통합 중심”, 『전략연구』 제88호(한군전략문제연구소, 2022.11.30.). pp. 115~150.

이후 동서독은 경제·통화·사회통합 협상('90.5.18.)을 통해 화폐통일(7.1.)과 통일조약을 체결(8.31.)하였고, 독일 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2+4(동서독+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협상조약(9.12.)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통일독일의 주권을 인정받았다.

서독의 콜(Helmut Josef Michael Koh) 수상이 드레스덴을 방문(12.19.)하기 이전에 동독군 스스로 흡수통합을 전제로 179개의 전투기동대를 해체(11.11.)시켰고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11.20.)함으로써 동서독 국방장관 회동('90.4.27.)을 통한 단일군 체제로의 통합에의 합의가 가능토록 하였다. 즉, 군사통합은 동독의 원에 의해 동독군의 서독군으로의 편입이 가능하였고, 서독군은 독일연방군으로 개칭되었으며 동독군의 병력과 장비 해체, 인수는 상호 합의에 의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서독의 통일은 자주적 통일조약과 2+4회담의 국제적 합의를 거쳐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서독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WTO(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맹, 폴란드 국경, 외국군 주둔 및 철수 등 주요 이슈에서 양보하면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시켰다. 그리고 2+4회담과 독소 정상회담 및 NATO-CSCE(유럽안보협력회의)¹¹⁾ 정상회담을 통한 완전한 주권회복과 국경선 설정, 병력규모(통일독일군 37만 명 유지), NATO 잔류 등 주요 쟁점들을 해결하였다.

이를 통해 군사통합은 준비·인수단계-개편단계-정착단계의 3단계로 추진되었다.¹²⁾ 군사통합 제1단계 준비·인수는 199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의 기간으로서 단일군 체제로의 군사통합 계획을 발표(6.13.)한 이후부터 공식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0월 2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에 450개의 군사통합 이행과제를 도출하였고,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의 철수('94년 한) 등 군사통합 이행과제가 순차적으로 이행되었다.

11)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WTO(바르샤바조약기구): Warsaw Treaty Organization, 1955년 사회주의 국가의 동맹강화 목적으로 동구권 8개국이 바르샤바에 모여 체결한 군사동맹조약기구;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1975년 헬싱키 정상회의 결과 창설, 이후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상설기구화되었음.

12) 통일원. 『독일통일백서』. 통일연구원, 1994. pp. 34-36; 하정열. 『평화통일 전략』. (서울: 박영사, 2004); Joseph S. (1991) "Gorden Unificationand The Bundeswehn". Military Review Vol.LXX.no.11. pp. 20-21.

또한 서독의 콜 총리와 구 소련의 고르바쵸프 대통령(Mikhail Sergeyevich Gorbachev) 간 코커셔스 합의('90.7.15-16.)를 통해 통일독일군은 NATO에 잔류할 것과 37만 명으로의 병력감축('94년 한)에 합의 및 조약 체결 등 군사통합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¹³⁾ 이후 서독 국방부는 군사통합대비 Working Group 편성과 국방부의 외청을 동독지역에 파견('90.8.17.)시켜 동독군 인수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동독군은 스스로 내부개혁과 신 복무선서를 발표('90.7.20.)하면서 추동력을 가속화시켰다. 즉, 의무복무기간을 단축(18→12개월)하였고, 일부는 전역시키는 등 병력감축(17만→9만 명, '90.9.)을 감행하였다.

군사통합과정 간 군사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동부지역사령부는 동독군 해체(8.25.)이후 구동독군 부대방문 및 자료수집과 통일독일군에 편입될 인원을 확정시켰으며, 동독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방대한 양(量)의 무기·탄약시설을 처리하였다.¹⁴⁾

군사통합 2단계 개편은 통일된 1990년 10월 3일부터 1991년 3월 31일까지 6개월로서 독일연방군이 창설된 이후부터 개편이 완료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 서독군의 동부지역사령부는 동독군의 지휘권('90.10.3.)과 장기복무군인(5만명) 및 단기복무사병(4만명)을 인수하였다. 또한 지휘권 인수와 동독지역의 군 행정관할 및 부대의 해체·개편을 주도하면서 장비·탄약·물자시설의 관리·평가와 군 교육기관의 동독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폐기대상 무기·장비는 중앙저장고에 집결('91.1-6.)시켰다.

독일연방군의 무기체계는 현 서독군의 무기체계로 표준화한다는 원칙하에 인수와 해체·파기 및 판매 대상으로 분류하여 동독군의 장비·물자·탄약을 처리했다. 또한 136km의 장벽과 818개의 관측용 망대 및 지휘소와 매설된 지뢰 190만 발도 처리되었다.

군사통합 3단계 정착은 개편이 완료된 1991년 4월 1일 이후부터 통합이 완성된 199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 동부지역사령부는

13) 독일의 국제법상 제약을 해결하고 완전한 주권국가로서의 정치·군사적 지위 결정위한 회담; 독일연방군의 병력규모를 37만 명으로 유지(당시, 서독군 432,000명, 동독군 89,000명)한다는 CFE(유럽 재래식무기감축협약) 협정에 따라 1994년 말에는 서독군 32만 명, 동독군 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 감축계획 수립.

14) 박철. “분단국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사례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2009). p. 29; 정상돈. “독일통일에 따른 군사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독일통일 총서 군사분야』. 통일부(2013); 하정열. 『평화통일 전략』. (서울: 박영사, 2004).

개편된 부대의 지휘권을 육해공군에 이양('91.4.1.)하였으며 인적개편 및 장비 처리와 군내 인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에 해체('91.6.30.)되었다. 동부지역사령부 해체이후 군사통합을 위한 주요업무는 국방부에서 추진(7.1.~)하였으며, 주요업무는 군구조 개편과 편입된 장병의 선별적 수용, 장비·물자·시설의 최종 처리 등이었다.

나. 베트남

베트남전쟁은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폭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베트콩과 북베트남의 강력한 저항과 남베트남의 무기력으로 인해 지속되었다. 파리평화협정('73)은 외국군대의 철수와 베트콩의 실체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면서 베트남전쟁을 내전 성격으로 변화시켰으며, 사이공이 함락('75)되는 계기를 만들었다.¹⁵⁾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비해 국토 면적(0.9배), 인구(1.1배), 군 병력(1.03배) 및 장비(1.5배) 등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남베트남군은 부정부패와 지휘계통의 문란, 그리고 장병들의 탈주와 내적동요로 스스로 무장 해제됨으로써 전쟁에서 패배를 자초함으로써 무기력하게 해체될 수 밖에 없었다.

통일된 베트남의 군사통합은 남베트남 잔여 군사력의 일방적 해체와 무자비한 처형을 통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이러한 군사통합은 기준이 명확하고 소요기간이 단축되었으나 막대한 희생이 강요되었다. 북베트남에 의해 주도된 군사통합은 남베트남군의 완전해체와 베트콩(인민해방전선)의 일부 흡수, 그리고 획득된 장비의 재활용 등 일방적, 강제적인 흡수통합 성격이었다.

남베트남군은 해체 과정에서 6,000여 명이 처형당했으며, 100만 명은 집단농장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되었다. 남베트남군의 해체에 의한 강제적 흡수통합 형태인 통일 베트남의 군사통합은 비인간적 만행과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적개심을 유발시켰으며,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기도 하였다.

15) 김기수..“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2000); 베트남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으로 미국, 남·북베트남, 베트남 남부 공화 임시혁명정부의 4자간의 합의 체결. ①미군철수, ②전쟁포로 송환, ③현상대로 정전, ④남베트남 사이공 정부와 임시혁명정부간 연합정부조직 협의, ⑤정치범 석방 등 규정; 통킹만 사건이란 통킹만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첩보선 매독스와 터너조이가 1964년 8월 2일과 4일 두 번에 걸쳐 북베트남 초계함에 의해 습격을 받은 사건으로 이때 미국은 북베트남의 해군시설에 대해 폭격 명령을 내렸음.

통일 베트남군은 통일이전의 북베트남군보다 32,000명이 증가한 615,000명으로 북베트남군 위주로 편성되었고, 베트남은 별도의 지휘조직을 갖추지 못한 채 흡수되었다.¹⁶⁾ 전력구조도 북베트남의 구조가 그대로 사용되었고 획득된 남베트남군의 전력은 재활용되었다. 남베트남 군인을 포함한 적대적 인사(관료, 경찰, 보안요원, 정치인 등)들에 대한 재교육에 의한 저항, 태업, 테러, 게릴라식의 대응으로 혼란이 조성되기도 하였다.¹⁷⁾

다. 예멘

남북예멘은 1988년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 정치협력체 구성과 석유 공동개발 및 국경왕래 등 전면개방에 합의하였다.¹⁸⁾ 부족장 체제였던 북예멘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였고 대규모 산업은 국유화된 혼합경제 체제였으며, 일당 독재 체제인 남예멘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이면서도 민간주도의 경제가 운용되고 있었다.

무력충돌-평화협정-통일에의 합의를 반복하였던 남북예멘은 1990년 5월 22일 합의에 의해 평화통일되었다. 남북예멘의 통일은 아랍국가의 중재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 남북예멘 정상간의 권력배분 합의에 따라 대등한 통일 및 군사통합을 하였다. 즉, 북예멘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직을 맡았으며, 남예멘은 부통령과 총리, 내·외무장관직을 맡는 등 합리적, 평화적, 대등적 관계의 통일이었으나 정부기구의 비효율적 확대와 지휘책임 소재의 불명확, 이슬람교리 갈등이 통합의 완성을 저해시켰다.

16) 1986년 베트남 제6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쇄신정책'으로 대외 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책을 말함.

17) 손기웅. "남북통일 과정에서 군사통합 수행을 위한 군사행동개념-DDR(무장해제, 동원해제, 사회로의 재통합)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10집 제1권, 미래군사학회(2021).. pp. 3-30; 이만중. "분단국의 통일과 군사통합에 대한 소고". 『국방정책연구』 제30권, 한국국방연구원(1995). pp. 217-252.

18) '쿠웨이트 협정' 합의사항 ①통일헌법 준비위원회 구성과 4개월내 통일헌법 초안 준비, ②통일헌법승인 양국 정상회담, ③통일헌법 초안 6개월내 국민투표, ④통일행정담당 통일 각료위원회 구성, ⑤카이로 협정과 트리폴리 선언, 아랍연맹 결의안 정신준수, ⑥양국정상은 사나와 아덴에서 매월 정기적인 감독회의 소집 등; 트리폴리 선언은 카다피의 중재에 의해 남북 예멘 정상이 합의한 통일정책, ①국호는 예멘 공화국, ②국기는 3색(적, 백, 흑), ③수도는 북예멘의 사나, ④이슬람교를 국교로, 이슬람 샤리아 법 정신 준수, ⑤아랍어 사용, ⑥국가이념은 공화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⑦단일 대통령제. 통합된 의회와 행정부, 사법부 구성 등.

통합된 통일예멘의 군대는 남북 예멘의 각 부대가 원래의 지역에 그대로 존속되어 규모만 확대된 형태였다. 즉, 군구조 조정은 하지 않고 대등적 배분만 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국방부와 사령부는 통합되었으나, 실제로는 통일이전의 지휘체통이 유지되었다. 평등배분 원칙이 강조되고 군제나 지휘체제의 실질적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예전의 군지휘체제에 의존한 통합이었다. 북예멘의 수도인 사나에 있던 북부사령부와 남예멘 수도인 아덴에 있던 남부사령부는 예전의 지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군사장비 면에서도 북예멘군은 미국장비 위주의 전력체계인 반면, 남예멘군은 소련 및 공산권 무기와 장비 위주의 전력체계로써 통합된 사령부와 부대들은 무기 및 장비 운용과 관리, 교리,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있었다. 또한 기존의 병력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군사통합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하였다.

예멘의 불안정한 군사적 통합과 정치적 불안정 및 혼란 가중, 통제의 실패는 결국 1994년 5월 4일 남북예멘군의 충돌로 이어졌고 2개월간의 내전을 거치면서 북예멘은 남예멘을 무력으로 흡수통일시키는 등 강제적 군사통합이 이루어졌다.¹⁹⁾

3. 분석 및 평가

앞에서 제기한 독일, 베트남, 예멘의 군사통합 사례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도출할 수가 있다. 첫째, 군사통합은 국가통합(정치·경제·사회 통합)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군사통합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확한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은 군사통합 과정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연계성 유지와 체계적 추진의 공간을 제공한다.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는 모두 이를 준수하였으나 베트남과 예멘은 시행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통합에 실패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통일독일 초대 대통령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äcker)는“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나, 준비없이 갑자기 맞이하는 통일은 재앙”이라고 한 바 있다.

19) 통일원. 『예멘 통일관계 자료집 II』. 통일원, 1991. p. 137; 예멘공화국 헌법 제24조 참조; 북예멘군은 38,500명, 남예멘군은 27,500명이었는데, 통일된 예멘군은 65,000명으로서 큰 변화가 있었음.

남북 군사통합은 북한군의 원에 의해 합의된 통합으로서 민족자체 해결 의지와 이를 지지하는 주변국의 공감을 획득하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의 병행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통합을 위한 전략적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전략적 여건조성에는 탈이데올로기에 의한 자주적이고 민족적 통일 및 통합 의지와 공감대 형성, 주변국 및 국제적 지지가 포함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자체적 조치와 합의에 의한 협정 및 조약 체결, 관련국들과의 국제협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동독은 탈이데올로기적 통일 및 군사통합에 적극적이었고 필연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베트남과 예멘은 이 같은 조성이 무시되고 무력이 과도하게 사용된 바 있다.

셋째, 군구조 통합은 한국군 주도에 의한 추진과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에 의해 최초부터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적합하고 균형적인 군구조 설계는 구체화, 단계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독일연방군은 서독군의 현 군사체제를 준수하였으며, 동부지역에의 배치 최소화를 통해 주변국의 우려를 감소시켰고, 병력규모는 인구비율(4:1)과 영토 및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를 무시하였고, 예멘은 물리적인 균등한 대등만을 강조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하였다.

넷째, 장비 및 물자, 탄약 통합은 장기간에 소요됨을 이해하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베트남과 예멘은 이 과정을 무시하였으나 독일은 계획과 시행, 예산 측면에서 동독군의 방대한 양의 무기·탄약·시설·장비·물자 등을 처리하였다. 불필요한 장비 및 물자는 유지, 폐기, 해외이전으로 구분하였고, 폐기처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효율성을 제고시켰다.²⁰⁾ 장비 및 탄약의 보관과 유지에 주당 100만 마르크(50만 달러), 11,000명의 감시 및 경비병력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즉, 독일연방군은 재래식무기감축 협정(CFE)에 의거 요구되는 감축과 구형 장비의 비용처리 문제로 인해 구소련군 장비는 전량 폐기 처분하였다. 육군은 T-72 전차 549대 이외에는 전량 폐기하였다. 해군은 소수의 함정을, 공군은

20) The Military Review'90 / 91, vol LXXL, No.12, p. 26; MIG-29기는 소련군 철수시한인 1994년 말까지 부품조달이 용이하여 일시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소련에 의존해야 했고, 고가의 유지비용이 문제 되었다.

47대의 MIG-29기를 제외하고는 전량 폐기 처분하였다. 서독은 인수물자 일부를 해외에 판매(WTO 국가에 판매 또는 소련에 반환, 제3국 판매는 NATO에서 불허)하거나 지원(걸프전시 미군, 사우디, 터키, 아랍연맹)하여 통일비용으로 활용하였다. 탄약은 폐기, 판매, 해외 이전토록 하였는데 대다수가 소련제 탄약이어서 모두 폐기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동독군 보유 30만 톤의 탄약 중 97%를 폐기 처분하였다. 이를 위해 설립된 탄약 폐기공장은 연간 약 5,000~10,000톤의 탄약을 폐기 처리했다. 이는 남북 군사통합시에 유용하게 적용 가능한 방침 및 원칙이 될 것이다.

다섯째, 원활한 인적통합을 위한 노력과 관심, 지속적 추진은 군사통합의 완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적통합은 물리적 통합과 마음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통일과 통합의 완성에 기여되어야 하며 후유증이 없는 상태여야 진정한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서독군은 최초부터 형제와 전우의 정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국방성은 여론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동독군의 법적 지위 부여나 조기퇴역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예민한 사안을 해결하였다. 즉, 구동독군을 우선인수, 선별 인수, 즉각 직위해제 및 전역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A, B, C급으로 분류했으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인수한 장기복무자는 관찰과 적부심사를 통해 선발토록 했다. 장기복무 희망자는 계속군무 여부를 평가했으며, 편입된 구동독군은 1계급의 강등과 1/3 감봉 등을 감수하였다.²¹⁾ 베트남과 예멘은 인적청산과 대등한 기득권 유지 등 형식적 통합으로 실패하였다.

Ⅲ. 남북 통일방안과 군사통합 방향

1. 통일방안

현재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1994년 발표된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적인 공존·공영의 원칙이 강조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으로서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²²⁾

21) 동독군에 대한 감봉조치는 동서독 간 경제적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이 적대와 불신을 줄이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며 공존, 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상호협력의 장을 열어 가는 단계로서 이념대결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남북기본합의서를 규범으로 하여 현존하는 두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등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화해,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확대와 상호신뢰 구축, 자유왕래 추진 등 민족번영 동반자 관계라는 공존적 사고로의 전환을 전제한다.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로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하에서 통일국가 실현을 위한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남북이 통일국가 건설을 목표로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고 동질성 강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도달하자는 것이다. 사회, 문화, 경제 공동체와 공동생활권 형성 및 민족 동질화 추진, 통일헌법 제정을 위해 정부간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최고결정기구인 남북정상회의, 집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대의기구인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이 있다.

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2단계에서 합의한 통일헌법에 따라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하며, 통일국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제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남한 통일방안의 주요핵심은 선 평화정착, 후 통일론으로서 통일의 3원칙(자주, 평화, 민주)과 미래상(자유, 인권, 행복)의 강조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해 합의에 의한 통일은 북한의 개혁·개방의 시기와 정도에 따라 추진될 것이며,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는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가 전제된다면 통일에의 합의에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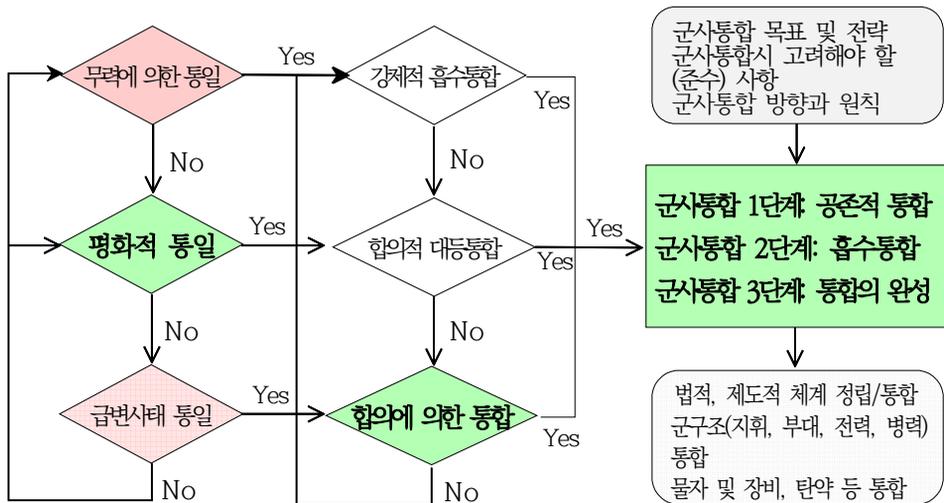
22)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2022』. 2022.

2. 군사통합 방향

남북 군사통합은 통일을 위한 국가통합 과정으로서 통일방안에 영향을 받게 되며 전제화된다. 통일은 <그림 1> 처럼 평화적 통일과 무력통일,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로 구분되나 현실성과 실효성 고려시 한국 주도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 가장 유력하며 역대 정부의 정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따를 것이다.

따라서 군사통합은 합의에 의한 한국군 주도의 통합으로 한정할 것이다. 강제적 흡수통합이나 합의적 대등통합을 표준화 모델로 정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은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처럼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북한이 통일 및 군사통합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은 표준모델이며 이의 단계화는 1단계 공존적 통합, 2단계 흡수통합, 3단계 통합 완성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단계는 군사통합 목표 및 전략과 고려해야 할(준수) 사항, 군사통합 방향과 원칙에 기반하여 설정될 것이다. 각 단계별로 법적, 제도적 체계 정립 및 통합, 군구조 통합, 물자 및 장비, 탄약의 통합은 물론 인적 통합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림 1> 남북 통일 유형과 군사통합 방안 설계

남북 군사통합의 목적은 남북통일의 과정으로서의 정치·경제·사회 통합에 기

여하고 통일의 선도적 역할과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며, 통일한국군의 목표와 군사전략은 세계 평화에 안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을 이룬 통일한국군은 국가경쟁력의 도약과 세계평화 및 지역 안정화와 글로벌 전략에 기여되며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달성은 물론 해양 및 대륙으로의 동시 세력화는 도약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낙후된 북한지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 및 인권보장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일한국군에 대한 국제 및 지역 안보의 우려의 불식이 요구되며, 통합비용과 내적통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군사통합은 정치의 종속물로서 남북 정치지도자간의 또는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과 흡수통일에 대한 합의 이후에 지시나 지침에 의거 추진되어야 한다.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은 한국군 주도의 통합으로 전제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 의거한 합의적 군사통합이어야 한다. 국가 및 군사 통합의 대전제는 자주적 해결의 원칙이며, 이는 국제질서 규범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제적 합의에 기반한 남북 군사통합은 지지 및 지원되어야 한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GFP(Global Fire Power)의 2021년도 국가별 국방지출 예산 순위에 따르면 한국 국방예산은 440억 달러로 142개국 중 10위이며, 북한은 16억 달러로 74위이고, 군사력 지수는 한국은 0.1261로 6위이며 북한은 0.4621로 30위라고 한다.²³⁾ 따라서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은 주변국에 위협적이지 않으며 세계평화에 기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상호 군비통제의 시행을 강조함으로써 유엔, 국제사회, 주변국의 동의와 우려의 불식, 지지를 얻어야 한다.

셋째, 신속한 군사통합의 완성을 통해 국력의 낭비 최소화와 통일한국의 원동력이 될 역량 및 잠재력이 보존되어야 한다. 민족통일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과 민족발전 및 융성의 기회에 대한 공동인식으로 신속한 군사통합 추진을 통해 반대, 동요, 저항 세력화를 차단해야 한다.

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1055300504>; <https://mnews.joins.com/article/23971804>; 군사력 지수는 인구나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40여개 분야에 대한 평가과 수치 등을 근거로 하며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임(인터넷 검색일: 2022.12.30.)

넷째,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비핵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통일의 국제적, 주변국의 전제조건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약속과 이행은 군사통합의 촉진과 추동력 발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주민들의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에 대한 동경과 요구에 의거한 군사통합은 한국군이 주도해야 한다. 통일과 통합에 대한 북한의 수용과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북한군은 군사통합을 위해 무장해제, 부대해체 등 자체적,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부와 연계된 군사통합이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충분한 설득과 홍보를 전개하여 군사통합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킴으로써 남북간 자존심 손상과 이에 다른 불필요한 갈등, 불신 조장이 방지되어야 한다. 또한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 추진전략 극대화를 위해 강점과 기회의 극대화, 약점과 위협의 제거 및 차단 등 정책적, 전략적 조치가 단계화되어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IV. 단계별 세부 추진방향

남북 군사통합이란 단일 지휘체제하 군정권과 군령권이 일원화된 상태로 군 체제가 구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 1> 처럼 통일단계와 연계되어 공존-흡수-완성 단계로 구분된다. 이는 계획-준비-실시-평가를 통해 완전성, 표준화가 제시되어야 한다.

표준화(SOP)는 군사통합 활동 및 절차를 규정하거나 방법을 정의하는 지침을 말하며, 완전성이란 물리적 통합과 마음의 통합 등 통합의 완전성 달성을 말한다.²⁴⁾ 표준화는 ‘해야만 한다(shall)’는 군사통합을 위한 전제사항의 수준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should)’ 정도의 준수해야 할 원칙, 지침, 준칙 수준, 그리고 ‘했으면 한다, 할 수 있다(may)’ 정도의 부가적 합의나 이행할 필요 수준으로 설정되어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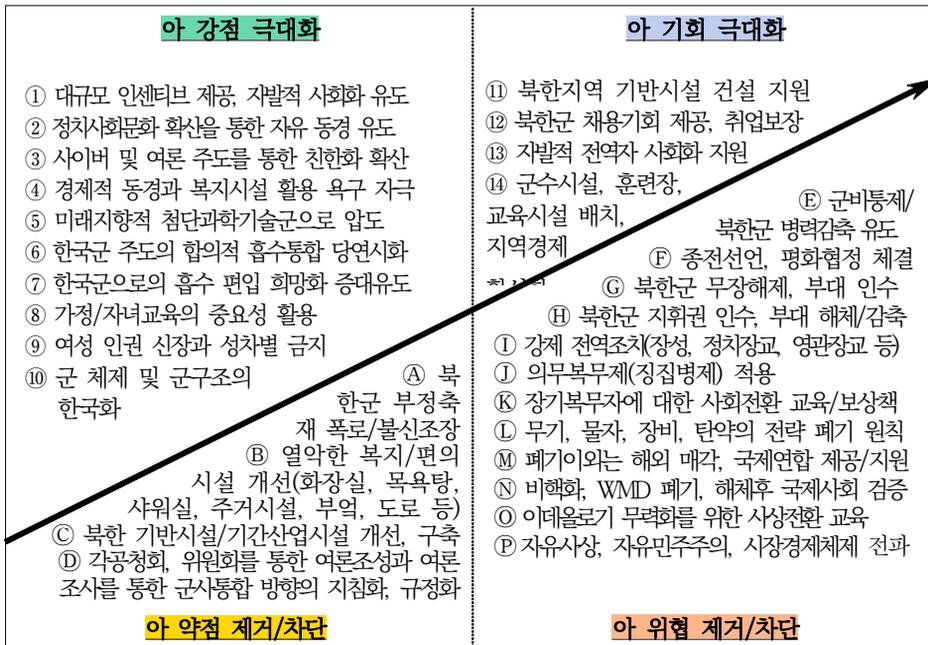
<표 1> 에서 제시된 합의에 의한 남북 군사통합 세부 추진방향은 단계별 조치사항

24) 표준화 목적은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이행 가능 수준의 규율, 균일성, 일관성, 공통성을 성립하는 것임.

식별을 통해 한국군의 강점과 체제의 우수성 극대화 및 군사통합 기회의 제고, 그리고 통합과정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약점을 차단함으로써 추동력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조치사항들은 앞에서 제기된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의 사례연구와 남북한의 특징 및 현재의 전략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것이다. 즉, 남북한 통일에 대한 진전있는 변화에 대비하여 군사통합에 대한 여건조성과 결정적 조치들의 구분을 통해 선제적 군사통합 방안의 모색을 통일방안을 급진전시키고 실효성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식별한 것이다.

〈표 1〉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 세부추진방향

군사통합 1단계 (공존단계)	군사통합 2단계 (흡수단계)	군사통합 3단계 (의적 완성단계)	군사통합 3단계 (내적 완성단계)
② ③ ⑧ ⑨	① ④ ⑤ ⑥ ⑦ ⑪ ⑫ ⑬	⑩ ⑭	
Ⓔ Ⓕ Ⓖ	Ⓐ Ⓓ Ⓖ Ⓕ Ⓖ Ⓘ Ⓙ	Ⓒ Ⓙ Ⓖ Ⓜ Ⓝ	Ⓑ Ⓖ Ⓜ Ⓝ



1. 군사통합의 1단계(공존단계)에서의 주요 조치사항

남북 군사통합 제1단계인 공존단계는 남북한이 이질적인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군사통합을 위한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 군사통합 여건을 상호 조성하는 단계이다. 공존이란 군사통합에 대한 개념을 설계하고 기획·계획 수립 등을 시행하는 여건조성 단계이다. 즉, 남북은 현재의 군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대적인 군사활동을 중지하고 군사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군비통제를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공존단계의 목적 및 목표는 군구조 및 체계의 표준화와 군비통제를 통한 군규모의 축소 등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합의된 군비통제 이행을 통해 통합의 용이성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남북한 간 인식의 차이(Gap)을 줄이고, 자유민주 군대에 대한 동경을 확산시켜 우월적 지위를 지속 확보하면서, 협력적·우호적 존재로 북한이 인식토록 유도해야 한다. 남북 군사통합의 저해 요인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WMD는 가급적 이 시기에 제거, 감축되는 등 비핵화가 이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존단계에서의 군비통제의 목표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2단계 흡수단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통일의 제1단계 화해·협력 시대의 주노력은 북한지역의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적대적 의식을 배제시키고 평화체제에 대비하도록 상호 군비통제에 합의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병역자원의 감소를 고려하여 각 35만 명 수준으로 축소토록 하고 노후화된 전력 폐기와 기동화, 첨단화된 첨단 과학기술 기반 상호 보완적 전력구조가 필요하다(Should). 따라서 현재의 정전협정은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불가침 및 무력 불사용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Shall). 무력도발 방지와 상호체제보장 차원에서 기습전력에 대한 군비통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DMZ(비무장지대) 일대의 위협감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이 국제적으로 합의하고 체결한 사항을 상호 존중하고 준수하되 북한은 비핵화를 우선 달성토록 해야 한다(Should). 상호 군비통제(구조적, 운용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상호 위협인식을 제거하고, 상호 법적, 제도적 일치화, 연계성 유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May). 기존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실제적 준수와 제도적 정착과 이를 위한 남북한 고위군사급 수준의 합의와 이행이 필요하다(May).

현재 북한지역의 노후한 지역개발과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지원을 고려하여 전투병력의 대폭 감축과 하위구조의 단순화,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Shall). 노후된 재래식 전력은 상호 폐기하고, 첨단전력구조 위주로 전환토록 하며, 기습 및 공격 위주의 전력보다는 방어 및 대응능력 위주의 전력으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Shall). 장비 및 물자, 탄약의 통합적 공존의 목표는 적대적 위협이 감소되는 것을 전제로 상호협력, 협조가 가능한 상태로 접근하면서(Should), 북한지역 기지 및 부대시설의 재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Shall).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과 추가적인 무기와 탄약, 장비, 물자의 생산, 비축, 수입을 지양하고 금지토록 합의해야 한다(Should). 또한 북한군의 전투병력은 대폭 감축토록 유도하고 이들의 전환을 위한 기술교육과 지원은 한국군에서 지원토록 하고, DMZ 일대의 지뢰를 제거토록 해야 한다.(Should).

2. 군사통합 2단계(흡수단계)에서의 주요 조치사항

남북 군사통합 제2단계 흡수단계는 군사통합을 위한 합의를 체결하면서 통합 준비와 북한군의 해체, 인원 및 부대, 물자, 장비, 탄약에 대한 인수 등 군사통합을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준비, 인수 및 편입이란 군사통합을 위한 협상과 합의를 통해 지휘권을 인수하고, 부대해체, 장병의 전역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흡수단계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단계 연합단계와 연계되어야 한다(Should).

제2단계 흡수통합의 목적 및 목표는 군사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군 구조, 장비 및 물자, 탄약, 인적 통합이 가능토록 준비되고 인수됨으로써 북한군의 한국군으로의 편입이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Shall).

2단계 흡수는 남북한이 군사통합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남북한 정부 간의 통일협상이후)으로부터 남북한 군사통합 합의서가 체결되는 시점(남북한 정부 간의 통일합의서 채택이후)까지를 말한다. 남북한 정부 간의 통일합의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북한군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군축을 결정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군사통합에 대한 합의를 명시한다면 군사통합의 완전성, 신속성, 안정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전 단계부터의 여건조성이 중요하다(Should).

이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의 작전통제를 받는 TF를 창설하여

북한군을 무장해제시키고 부대해체를 주도-지원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감정은 독재체제와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May).

(법적, 제도적 통합체계 구축) 남북군사 공존단계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이 통합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정립하고 군사통합을 위한 표준화, 연계화, 체계화, 구조화되도록 해야 한다(Should). 1단계에서 추진된 평화협정체제와 상호 불가침 및 무력 불사용 협정이 준수되어야 하며(Shall), 상호 기습전력의 군축과 비핵화에 대한 신뢰성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Should).

즉, 상호 군비통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발전적으로 진척되어야 하며, 군사통합을 위한 합의서, 지침 및 지시와 로드맵이 필요하다(May). 또한 일당독재와 노동당 해체 등 기득권 상실이 전제되어야 한다(Shall). 군사통합을 위해 창설된 TF는 계획, 준비, 실시, 평가를 주도하며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과 제한사항들을 식별하여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법적, 제도적 보장과 우선순위 조정 등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shall).

군사통합 준비는 협의된 추진일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영공 및 영해 통제에 대한 합의와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구역의 확대 등 국제적 합의와 주변국과의 협의가 포함된다(May). 남북은 상호 유사한 규모로의 감축과 군구조의 표준화를 통해 일원화가 가능한 체제로 개편은 통합을 용이하게 만든다. 통일한국군 건설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보장책 마련(May)과 일반명령을 통한 추진이 기능토록 체계화해야 한다(May).

(군 구조의 통합) 군사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적 전제조건을 확고하게 설정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즉, 북한의 핵과 WMD 폐기에 대한 사찰과 검증이 필수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Shall). TF(가칭 북부지역사령부)는 북한지역의 기반시설과 기간산업 건설을 위한 공병부대, 소수의 전투지원부대 및 지속지원부대 위주로 유지하되 전투부대는 가급적 지양하며, 통일한국군의 교육 및 군수 시설, 대규모 훈련장을 배치한다(Should).

기존의 한국군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흡수되고 인수된 북한군은 전환 배치 및 유지시키며, 이를 통해 북한지역 경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고용효과를

달성하고, 최적화된 훈련장을 설치함으로써 전투력 향상을 제고시킨다. 정예화된 첨단전력 운용 가능한 구조로 감축되어 지역별 배치 및 운용이 필요하다(Should). 상호 보완적 대체 전력을 통한 통일한국군은 미래지향적인 첨단군으로 전환과 전방위적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병력은 동일한 규모를 구비하고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북한이 합하여 45만 명을 유지토록 하며, 이를 위해 한국군은 35만 명을 그대로 유지토록 합의되어야 한다(Should). 이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규모와 세계적인 위상, 그리고 주변국에 대비한 최소의 병력규모를 산정한 것으로서, 지상 및 해상, 공중 및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의 방어력을 고려한 것이다.

(물자 및 장비, 탄약의 통합) 적대적 위협 제거로 운영유지는 상호협력, 협조가 가능한 상태로의 접근이 장비 및 물자, 탄약 통합의 목표이다. 한국군으로 인수될 북한군의 무기, 물자,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판단하고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 폐기, 판매, 무상원조, 유지, 인수를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노후화된 장비는 모두 폐기를 원칙으로 하나 해외매각이 가능한 것은 매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며 일괄폐기, 재활용, 민수용 전환, 해외판매, 정부이관 등으로 구분한다. 탄약은 평시 훈련용 위주로 보유하며, 추가 생산은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 시설은 부대구조의 표준화, 효율화, 적정구조화를 통해 조정하며, 대소규모 훈련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Should).

북한의 핵 및 미사일, WMD 등은 전량 폐기되어야 하며, 국제기구의 사찰과 검증 등 객관적 신뢰성 제고를 통해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DMZ 일대에 매설된 약 25만 발의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Shall).

(인적통합) 군사통합의 핵심은 인적통합이며, 인적통합의 최종은 마음의 통합이다. 편입될 병력과 전역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1단계에서 각 35만 명으로 감축되었다면 2단계에서의 남북한군은 조정된 45만 명(남 35만, 북 10만 명)으로 감축되어야 한다(May).

지휘관의 의지와 사명감, 책임감이 중요하고,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리더십은 내적동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한다(Shall).

지속 유지될 물자 및 장비, 탄약의 관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인력은 인수 및 편입되어야 하며, 강제전역자, 복무해제자, 계속 복무자로 구분하여 상이한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내적통합을 위해 동화교육의 체계화와 동기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May). 북한군은 128만 명(육군 110만, 해군 6만, 공군 11만, 전략군 1만 명), 예비전력(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은 762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만 명의 인수 및 편입은 118만 명의 강제전역을 의미한다.²⁵⁾

이들을 사회기반시설 구축 요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고용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며, 대우와 충분한 보상을 통해 수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무장해제는 단기간 명확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당시 북한군 지휘체계 활용이 유리할 수도 있다(May).

3. 군사통합 3단계(완성단계)에서의 주요 조치사항

남북 군사통합 제3단계인 완성단계는 통합을 위한 제반 조치와 동화교육을 통한 내외적 통합을 완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조치사항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군구조 표준화를 통해 적시성있고 적합하면서 최적의 실행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완성단계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제3단계 완성과 연계되어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군사대비태세가 완비된 통일한국군의 건설을 의미한다. 군사통합 제3단계 완성은 군사통합합의서가 체결되는 시점(남북한 정부 간의 통일합의서 체결이후)부터 공식적인 군사통합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남북한 정부 간의 통일선언 또는 선포이후)이후 통일한국군이 창설되고 새로운 군조직 개편의 완료로 통합이 완성되는 시점까지이다(Shall).

이는 통일한국군으로 외적통합 완성단계(외적통합 완성)와 동화교육을 통한 내적완성 심화단계(내적통합 완성)로 구분될 것이다. 통일한국군 건설이 외적으로 완료되고, 내적통합을 위한 동화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가 망라되어 군사대비태세의 완비가 최종 목표이고 목적이다. 통일한국군은 주변국과 안보협력 유지와 신뢰구축 및 역내 안정화,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Should).

25) 남북경제지표 명목 GNI는 54:1, 1인당 GNI는 26.6:1, 무역총액 322.2:1, 인구는 2:1임.

(법적, 제도적 통합체계 구축) 통일한국군의 창설은 한국군의 형태를 기반으로 편입된 장병과 부대를 포함하여 새로운 체제와 구조를 갖추어 창설하는 것을 말하며, 통일조약이 발효되는 시점인 통일선포일과 통일한국군의 창설일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군의 국방정책서, 군사전략서 등은 국가안보지침서를 기초로 새로이 작성되어 체계화되어야 하며, 제도화되어야 한다.

군사통합의 완성단계는 군인사법과 진급제도 및 규정이 체계화되어 주거이전 및 부대이동에 관한 자유 보장과 관련 규정의 정착을 말한다. 또한 남북 군사통합의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는 개선 및 완료되어 시행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shall). 즉, 물리적 통합과 심리적 통합 등 실효적 통합이 완성되고 군사대비태세가 완비되어 국가통합에의 기여와 국제사회의 신뢰, 그리고 주변국의 지원 및 협조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should).

(군 구조의 통합) 군사통합의 완성이란 단일 지휘체제가 구축되면서 합동작전이 가능토록 상호운용성 보장체계가 구축되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한국군은 공격위주의 전투부대보다는 방어위주의 전투부대를 배치하여 주변국의 자극을 지양하고, 거부적 억제 차원의 구조적 운용이 필요하다(Should). 또한 지역의 특성과 고용효과, 대민지원 측면에서 군수부대와 전투지원, 지속지원 부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대규모의 훈련장 시설을 관리할 전담부대와 군사교육시설을 배치하여 유동병력에 의한 지역경제와 동화교육, 사회통합에 기여(should)해야 하며 징병제로의 개선도 검토되어야 한다(may).

(물자 및 장비, 탄약의 통합) 장비 및 물자, 탄약의 통합과 처리의 최종적 완료는 장기적으로 군사통합을 위해 분류된 폐기, 매각, 처리, 유지 등 재산관리와 비용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폐기를 위해 긴급으로 설치될 폐기공장은 주요지역에 설치하며 범정부적 지원을 받아 고용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불용자산과 부동산은 매각 또는 전환시켜야 하며, 향후 군사시설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핵 및 WMD 처리결과는 IAEA와 OPCW(화학금지기구), 미국 등에 보고해야 한다(Should). 물자, 장비, 탄약, 무기 등의 처리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may).

(인적통합) 인적통합의 완성은 동화교육을 통해 내적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지역 차별화가 식별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전역자에 대한 직업보장과 생활상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과 보상을 통해

불평불만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편입되어 복무중인 장병의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와 진급 제도의 개선, 주거이전 및 부대이동에 관한 보장과 심의가 실시되어야 한다. 내적통합을 위한 동화교육은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교양교육 등 세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또한 저항세력이 잔존하게 될 근원적 요인을 차단해야 하며, 주요 위험대상자의 격리, 특별교육, 성향분류 및 처리 등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기존의 한국군은 장병의 정신무장과 정예국군 양성이 필요하며 행동화 숙달이 요구된다. 개편 완성을 통해 통일한국군에 편입된 북한군의 군기, 군법 및 질서유지 의식을 함양시켜야 하며,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노력의 집중이 필요하다(should).

V. 결 론

통일된 대한민국은 OECD(경제개발기구) 37개국 중 기초국력은 현재 29→19위로, 군사력은 9→4위로, 경제력은 13→6~9위로 단기적으로 격상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시너지 효과에 의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남북 군사통합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연계되어 이행되며,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즉, 남북 통일조약과 통일합의서 체결이후 남북 군사고위급에 의한 합의 및 협의에 의해 북한의 요구와 원에 의한 합의적 군사통합이 흡수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독일이나 예멘의 사례처럼 공산주의(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동경과 이상에 의해 전략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급물살을 타면서 진척되리라 본다. 이를 전제로 준비하고 추진할 단계별 정책 및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고 목표이다. 군사통합의 영향력과 잠재력은 지대하므로 민족번영 차원에서 비용은 감수할 만한 정도로 필요하고 당위적이다. 따라서 제시된 군사통합을 위해 단계화된 표준화 모델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여건조성과 북한군에게의 인센티브 제공도 정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군사통합 방안을 공존, 흡수, 완성의 3단계로 추진되어

야 하며, 완성단계는 내외적 통합의 완성으로 구분하였다. 군사통합 제1단계 공준은 남북한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사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제2단계 흡수는 군사통합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통합을 이행하는 단계로서 준비, 인수, 편입 등 군사통합 완성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제3단계 통합의 완성은 분야별 조치와 동화교육 등 내외적 통합을 완성하여 군사대비 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사통합의 정책적 목표와 목적, 전략수립 및 준수해야 할 원칙과 고려사항을 토대로 최적합화된 군사통합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해야만 하는 것(Shall)과 해야 하는 것(Should), 하는 것이 좋은 것(May)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계획수립과 이행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군사통합은 정치통합의 종속으로서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연계되면서 우선적 조치사항이 될 것이므로 성공적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군사통합은 남북 통합과 통일의 완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주변국의 지지와 우려 불식을 통한 통일한국의 도약적 발전 및 민족번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시도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언젠가는 결실을 맺어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준비된 군사통합 계획인 언제 시행되더라도 항상 이행가능 상태로 준비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할 전문가들의 추진 역량이 구비되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국립시민교육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동서독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1966년 72%, 1976년 87%, 1986년 93%에 달했으며, 불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1달 전에도 누구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남북통일과 군사통합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항상 준비하고 역량을 비축하며 전략적 환경과 여건조성 노력을 통해 기회가 오도록 또는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22.12.08]

[논문심사일 : 2022.12.19]

[논문수정일 : 2022.12.30]

[게재확정일 : 2023.03.06]

<참고문헌>

1. 저서

-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한국국방연구원, 2014).
- 권태영 외. 『독일통일의 교훈과 통일한국의 국방분야 대비책』. (한국국방연구원, 1991).
- 유지호. 『예멘통합이 한국에 주는 교훈』. (외교안보연구원, 1993).
-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2006).
- 이만중(외). 『남북 군사통합 방안연구』. (국방연구원, 1994).
- 장홍기 외.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1994).
- 정충열.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 (서울: 시간의 물레, 2014).
- 제정관.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서울: 한누리 미디어, 2008).
- 하정열. 『평화통일 전략』. (서울: 박영사, 2004).

2. 논문

- 권양주. “남북한 통일시 군사통합 비용 산출 틀에 관한 연구”. 『전투발전』 제143호. 육군 교육사(2013).
- _____. “통일 논의와 바람직한 남북한 통일방식”. 『주간국방논단』 제1357호. 한국국방연구원(2011).
- _____. “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접근전략 연구”. 『북한학연구』 제5권 제1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2009).
- 김기수.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2000).
- 김학민. “남북 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국방연구』 제58-1호. 국방대학교(2015).
- 김학민·박계호·나정원. “통일정책과 연계된 남북 군사통합 추진방향 연구: 독일의 군사통합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88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22).
- 박기덕, “남북한 정치적 통합모델의 모색-이론적 논의,” 박기덕·이종석 편,

-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
- 박영오. “한반도통일시 한국군 주도 군사통합 방안: 독일, 예멘,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2집 제2호. 미래군사학회(2013).
- 박철. “분단국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사례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2009).
- 손기웅. “남북통일 과정에서 군사통합 수행을 위한 군사행동개념-DDR(무장해제, 동원해제, 사회로의 재통합)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총』 제10집 제1권. 미래군사학회(2021).
- 손한별. “남북한 군사통합과 연구쟁점”. 『전략연구』 통권 제6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14).
- 양창석. “독일의 통일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2008).
- 이기동. “통일환경의 변화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기호. 한국동북아학회(2014).
- 이만중. “분단국의 군사통합 사례와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905호. 한국국방연구원(2002).
- _____. “분단국의 통일과 군사통합에 대한 소고”. 『국방정책연구』 제30권. 한국국방연구원(1995).
- 이재삼. “통일한국의 군사통합 방안에 대한 고찰(Ⅰ)”. 『육군』. 육군본부(2002).
- 임평섭·이재호. “통일 후 남북한 군사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2호(통권100호). 한국국방연구원(2013).
- 정상돈. “독일통일에 따른 군사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독일통일 총서 군사분야』. 통일부(2013).
- 제정관. “남북한 군사통합·통일한국군 건설 및 쟁점들”.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1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003).
- _____.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과 통일국군 건설방향”. 『군사논단』 제29호. 한국군사학회(2001).
- 한관수. “통일한국의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2002).

3. 외국문헌

- Amitai Etzioni. (1965).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 Andrew M. Weiner. (1966). "Problems of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Breakdowns." Jason. N. Finkle and R. W. Gable. eds. *Political Development & Social Chang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Charles Pentland, *International Theory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Faber and Faber Ltd.,1973).
- Ern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 Fearn-Banks. K. (1996). "Crisis Communication: A casebook approa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oombs, W. T. (1999).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Sage Publications, Inc.).
- Ernest B. Hass. (1958).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rehensive Survey, Thir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90).
- Joseph S. (1991) "Gorden Unification and The Bundeswehn". *Military Review* Vol.LXX.no.111.
- J. S. Nye,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Little Brown, 1971).
- _____, Jr. (1968). "Cooperative Regional Integration: Concept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2, no.4.
-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8).
- _____, et al. (1957).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anley Hoffmann. (1968). Gulliver's Troubles or the Steer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McGraw-Hill).

4. 기타 자료

-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2013』 . 2022.
- 통일연구원. 『독일통일백서』 . 1994.
- 통일연구원. 『예멘 통일관계 자료집 II』 . 1991.
-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 2012..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 2021.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Military Integ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Kim Hak min,

Military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linked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or the inter-Korean integration plan, and independent, international, ethnic, and peaceful principles will be observed for changes in North Korea. The purpose and goal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d present step-by-step policies and strategic measures to be prepared and promoted on the premise of this. We intend to study overseas cases from a synchronic and public perspective and derive a suitable and effective military integration pla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present them more creatively and concretely than existing studies. If the proposed military integration plan becomes a reality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inter-Korean relations,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policy and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This study divided the inter-Korean military integration plan into three stages: coexistence, absorption, and completion. Particularly, What we have to do (Shall), what should be done (Should), and what should be done (May) were presented as reference fo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or us, inter-Korean unification and military integration can happen suddenly one day. It should always be able to prepare, stock up on capabilities, and seize opportunities to come or come through strategic environments and dryness.

Key Words: military integration, coexistence, absorption, completion, preparation, acquisition, transfer, reorganization

재향군인회 정체성에 관한 고찰

문 근 형 *

- I. 서 언
- II. 재향군인회 설립의 역사적 의미 고찰
- III.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와 재향군인회 정체성 분석
- IV. 미래지향적 향군 발전방향
- V. 결 언

논문 요약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재향군인회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의 핵심조직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옴으로써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국가안보를 지켜나가는 데 기여해 왔다. 1952년 창설한 재향군인회는 2022년에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였다. 재향군인회는 기념식을 통해 비전 2030 선포식을 하면서 과거 70년을 되돌아보고 국내 최대 안보 단체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굳게 다짐하였다.

사람이든지 단체이든지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하는 문제는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고 누구나 정체성이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 하지만 재향군인회가 오랜 역사와 수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국민들이 '재향군인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재향군인회가 어떠한 단체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향군인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며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체성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재향군인회의 정체성을 과거 태동부터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재향군인회의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국민들이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방 제2의 보루 재향군인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재향군인회, 정체성, 국가안보, 보훈단체, 안보활동

I. 서 언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렵고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은 시간이 지나 갈수록 큰 위협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속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장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많은 제대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재향군인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재향군인회가 어떤 단체이고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재향군인회는 누구일까?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

정체성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문제는 사람이든지 어떠한 단체이든지, 국가이든지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자신의 인생목표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과업이다. 많은 집단, 단체들이 고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찾기위해 고민하고 있고 정체성을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다. 여기에서 이름은 곧 정체성과도 연계되며, 이는 과거부터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지키고자 하는 삶의 원칙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추구하고 싶은 가치일 수도 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어느 단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 정체성을 찾는 방법은 그동안 살아온 방향과 활동 등을 통해 알아보거나 문헌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이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고, 자신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바탕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결정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삶에 있어 지침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어 일의 경중을 알고 추진해 나가는 것처럼, 정체성은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내

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체성은 조화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집단, 단체에게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오랜기간을 거쳐 축적된 정체성으로부터 그 집단의 성격과 성향을 알 수 있다. 재향군인회는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자체적으로 던지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현재 약 1천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안보단체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안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1일 부산에서 전시군수동원 지원을 위해 준군사조직인 안보단체로 창설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왔으며 2022년에 창설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창설당시에는 약 30만 명의 제대군인을 회원으로 출발하여 1968년 김신조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창설된 향토예비군의 모체가 되었다.

향군은 오랜기간을 거쳐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 중에 2017년 당시 김진호 회장 취임 후 향군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창설기념일에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라는 정체성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이후 2022년 5월 총회를 거쳐 새로운 신상태 회장이 취임하였다. 37대 회장에 오른 신 당선자는 "강도 높은 개혁, 변화와 혁신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향군의 재정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향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지 않으면 한발짝 나아갈 수 없어 후배에게 떳떳하고 국민에게 추앙받는 향군이 되기 위해 향군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10월 6일 개최된 '창설 70주년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향군은 국가안보의 보루"라고 밝힌 바 있다.

생존의 위기를 맞은 향군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최우선 과제이기에 향군 정체성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을 통해 향군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직의 설립목적, 조직구성원의 성향, 주요활동 등을 확인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관련 연구 분석과 시·공간적 연구 내용 고찰을 통해 정체성 확인과 재정립을 하려 시도하였다.

II. 재향군인회 설립의 역사적 의미 고찰

1. 재향군인회 태동과 시대별 활동상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1952년에 대한민국향군이 창설되었다. 향군은 1952년 2월 1일 부산에서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을 앙양하며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에 공헌할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약 1~2년 전은 국군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였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조직법을 근거로 1948년 11월 20일 오늘날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호국군(護國軍)을 창설, 국방상 필요시에 정규군에 편입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호국군은 정치적인 이유로 1949년 8월 6일 새로운 병역법의 실시와 함께 해체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예비전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북괴군에게 기습남침을 당하게 되었다.

호국군이 해체되자 우리 정부에서는 병역법 제77조를 근거로 1950년 1월 16일 청년방위대를 창설, 그 역할을 대신토록 하였다.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 단장 신성모)을 근간으로 결성된 청년방위대는 100만 명의 단원 가운데 정예요원 20만 명을 선발, 1950년 4월에 전국적인 발대식을 완료함으로써 20개 단(團 : 사단격)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을 갖추었다. 하지만 민병(民兵) 조직에 불과했던 청년방위대는 변변한 무기가 없어 목총 등으로 기초훈련을 받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법을 공포하면서 미(美) 군정 당시의 지원제를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시 병력 운영상 곧바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워 징병(徵兵)이나 전역(轉役) 등을 실시하지 못한 채 유보되고 있었다. 이에 육군은 1950년 1월 20일 병역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하사관 중에서 전역을 희망하는 2,000명을 선발, 제1차로 만기제대시켜 예비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재향군인(在鄉軍人)이었다. 이들은 당시 국내 사정상 재향군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조직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발적으로 전투

에 참가해 조국을 수호하는 데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우리 정부에서는 1951년 1월 12일 제1차 명예제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들은 재복무가 불가능한 상이용사들로 당시 육군원호부대(제839부대)에 수용돼 있었다. 이후 매월 한 차례씩 제대 조치가 이루어져 총 20차에 걸쳐 장교 573명, 사병 5만 3,239명 등 총 5만 3,812명이 제대특명을 받았다.

1953년 11월 17일 육군원호부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제대장병보도회로 이름을 바꾸고, 1957년 1월 17일 대한민국참전전우회와 통합하면서 대한상무회(大韓尙武會)로 발족한 뒤,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하였다. 그 다음해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World Veterans Federation: WVF)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 향군이 세계향군연맹 향토방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념일로 지정되었다.¹⁾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12일 재건총회를 거쳐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973년 3월 30일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을 제정 공포하면서 기념일로 정해졌다. 이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5월 8일 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가 2002년 어버이날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념일을 10월 8일로 변경하였다.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날은 향군의 설립 목적인 회원의 권익향상과 국가발전, 사회공익 증진과 관련된 행사를 벌이는데, 특히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비롯해 전후 세대들의 안보관과 국가관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향군홈페이지에 명시된 향군의 연혁이다. 연혁을 살펴보는 이유는 과거를 살펴봄으로 향군이 걸어왔던 길을 조명해보면서 향군 존재가치를 살펴보면서 연혁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몇차례의 명칭 변경이 있었으나 조직의 본질과 존재 목적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개명을 한 사람의 본질은 같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날”,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 (검색 2022.11. 18)

<표 1> 향군 연혁²⁾

1952. 2.1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설립 (부산)
1953. 11.17	제대장병 보도회로 개칭 (서울)
1957. 1.7	대한상무회로 개칭
1960. 5.4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 개칭
1961. 5.8	세계 향군연맹 (W.V.F) 가입
1963. 7.19	재향군인회법 공포 (법률 제1367호)
1965. 6.8	재향군인의 날 지정 (5월 8일)
1992. 12.2	재향군인회 주무관청 이관 (법률 제4511호) (국방부 → 국가보훈처로 이관)
2002. 6.9	재향군인의 날 날자 변경 (10월 8일 대통령령 제17628호)

향군은 대한민국 보훈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2022년 현재 회원 1,100만여 명이며 단체 조직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시·도지회, 시·군·구 연합분회, 읍·면·동 지회, 직장 지회·직장연합분회·직장분회가 있다. 해외 조직으로는 미국의 뉴욕·로스앤젤레스·시카고·하와이, 일본,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 22개 해외지회를 두고 국위선양과 우호증진에 힘쓰고 있다

향군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안보·복지·국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위선양과 교민화합을 위하여 해외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회별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사업·향토개발사업·향군조립단지조성 등에 앞장서며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기 위하여 자주국방과 안보태세를 확립,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 창설에 중추적 구실을 하였다. 1972년 1월 11일 ‘자주국방사상촉진운동본부’를 설치, 범국민적인 안보계도 활동도 전개하였다. 재정은 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일반 회비, 평생 1회 납부하는 종신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산하기업체의 사업수입금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군에는 『향군보』, 『회사(會史)』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 <https://korva.or.kr/sub010101.asp>(검색일자 : 2022. 12. 26)

2. 시대별 활동 분석

향군 탄생 태동기인 1950년에서 1953년의 설립목적은 지역내 장병 대상자와 예비역의 동원체제 관리가 목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대한 상무회를 창립하여 제대장병 보도 업무 수행이 주요 활동이었다. 한국전쟁이 종료, 휴전이 이루어지고 향군은 설립목적에 대한 혼란기를 겪었다. 혼란기인 1953년부터 1960년도에는 향군은 향토방위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전쟁 이후 혼란기를 거친 향군은 각종 제도 및 조직정비 등을 통하여 향군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조직 정비를 통하여 향군의 이념지표를 설정하고 회법을 제정하면서 향토예비군 창설과 연계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 또한 조직 정비를 통하여 각급회 회관을 건립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조직정비가 이루어진 후 향군은 성장 발전기를 거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1970년에서 1989년 향군이 성장하여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향군의 주요활동으로는 총력 안보국민 협의회 결성하고, 향군 총력 안보대회 등 집회 및 시위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과 회원구호 및 생계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시기 88서울올림픽이 진행되면서 향군은 봉사단을 결성하여 통역, 청소, 경비, 질서, 환경개선 등을 본부 및 각급지회 인원이 참가하였다.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향군은 보완기와 도약기를 맞아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군인정신 양양, 조국독립과 자유수호 공헌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향군의 주 활동은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및 회원의 권익향상,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간중에 민족 통일기반조성 촉진대회, 용공발언 규탄, 일본 독도망언 규탄 쫓기대회 등 안보관련 집회를 하면서 읍·면·동회 친목회 육성하였다. 또한 호국용사 묘지조성사업을 영천, 임실, 이천, 산청 등에 추진하여 도약하였다. 각국 향군단체와 우호 증진을 하면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향군은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정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으나 재정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진보적인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회장체제하에 비전 2030 선포식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표 2> 향군 시대별 구분 및 주요활동³⁾

구분	주요활동
창설 이전기 (1907년~1947년)	대한제국의 군대해산과 항일전쟁 광복군의 귀국과 국군경비대 창설
창설기 (1950년~1959년)	재향군인회 창설 유사단체를 대한상무회로 통합
조직정비기 (1960년~1960년)	대한상무회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 회법공포, 세계재향군인연명 가입 해외지회 최초 결성
성장발전기 (1970년~1989년)	「총력안보」 지 발간, 국가보위 향군총력안보대회 각급회 창설 및 통폐합, 향군안보강연 개최 국립묘지 안장 주선사업, 시국관련 안보대응활동 향군 중앙회관 및 별관 건립
제2도약기 (1990년~1999년)	향군의 다짐 제정, 향군복장 제정, 6.25행사 단독주 관, 여성조직강화(부인회, 여성회)
새시대 향군건설기 (2000년이후)	향군묘지(영청, 임실, 괴산, 제주 등) 조성사업, 향군수익사업 강화, 안보연구소 설치, 향군타워 신 축, 추모의 벽 건립, 비전 2030 선포식

향군의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향군의 목표가 발전되어가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직의 목표는 시대와 조직구성원의 성향 등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가능하다.⁴⁾ 향군의 목표를 시대에 맞게 확인하여 표현한 것이 <표 3>이다.

3) 김태영, 『재향군인회 50년사』 (서울 : 大韓民國在鄉軍人會, 2003), pp. 76.-239.

4) 강용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매개로 육군 전문인력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2013). p.45.

<표 3> 향군목표의 발전

년 대	목 표
1951~1952	제대장병 동원 자원화
1953~1960	향토방위, 정치적 입지 강화
1961~1992	친목도모, 군인정신 양양, 조국독립과 자유수호 공헌
1993~2000	친목도모, 회원복지 증진, 자유민주주의 수호선봉,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기여
2000 이후	조직의 정예화, 안보역군의 선봉,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2022년	청렴·신뢰, 안정적 재정기반의 향군 대한민국 어디서나 존중받는 향군 최고·최대 안보단체 그 이상의 향군 따뜻한 동행, 회원 모두가 행복한 향군

이와 같이 1952년 징병 대상자와 예비역 해당자에 대한 동원체제 관리를 목적으로 향군은 창설되었다. 그 후 50년대 혼란기를 지내고 1961년 향군을 재건하면서 향군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군인정신 양양과 군사능력 증진, 조국의 독립과 자유주의 수호 공헌을 골자로 향군 설립목적을 정립하여 혼란기를 잘 극복하였다.

1992년 12월 향군에 대한 관리 감독 주무관청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되면서 문민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군사능력 증진이나 군인정신 양양 등 사회현실과 배치된 부분을 개정,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이바지 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립목적을 조정하였다.

한편 향군의 목표는 설립초기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수시로 변경되어 오다가 1961년 이후 비로써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군인정신 양양, 1990년대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선봉, 2000년에는 안보역군의 선봉으로 국가안보 제2보루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다.

3. 재향군인회 정체성 확립 제한사항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었다. 이와 함께 향군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정체성을 떠나 생사의 기로와 직결되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든다. 정체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존재자체가 유지되어야 한다. 존재가 없어지면 정체성의 의미는 희석되어져 살아있지 않는 과거의 역사로만 존재할 뿐이다. 향군의 최근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선적으로 향군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향군은 2015년 9월 기준 5516억원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부채와 손실은 대부분 2000년 ~ 2006년간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 보도 자료에 의하면 향군은 2004년부터 수익을 노린 무분별한 PF⁵⁾ 투자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4년에만도 1,474억원의 손실이 발생 했고 손실금에 대한 은행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까지 받음으로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러한 악순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가속화와 함께 수익계약 중단과 자금확보에 불안을 느낀 향군은 부동산 개발 등 수익사업에 본격참여, 무리한 투자규모로 확대되었다. 결국 2011년 8월 15일 MBC 보도를 통해 향군부채가 6,287억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⁶⁾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7천억 원에까지 이르렀으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일부부채를 해결함으로써 현재는 4,800억 원 가량이 남게 되었다.

향군은 예비역단체 중 하나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유일한 공법보훈단체이다. 예비역 전체를 회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체는 향군이 유일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비역단체이다. 하지만 경영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향군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향군이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예비역단체와 친목단체들에게 치명적인 연쇄 과급효과가 도래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향군이 생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1993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직후 ‘향군회장 경선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5) PF(project financing) :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한다.

6)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60년사』 (서울 : 大韓民國在鄉軍人會, 2014), pp. 373.-376.

1994년 4월 15일 향군 창립 4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유경선제로 장태완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는 향군이 ‘순수한 민간단체’로 거듭나는 순간으로 평가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5년의 ‘정치적 중립 선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고 예비역 스스로도 과거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긍정적 조치로 받아들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새 시대의 향군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조직의 정예화, 안보역군의 선봉,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을 제시하며 향군 조직의 내실화 및 향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⁷⁾

회장 등 향군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된다. 총회는 회장, 부회장, 총장, 이사, 시·도회장, 지회장,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총회의 구성원은 총 387명에 이른다. 향군 회장은 소수의 총회 구성원의 투표에 의한 간선제방식으로 선출되는데 그 과정상 금권·조직선거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거 시 공정성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직선제의 도입 역시 과도한 선거비용의 투입 등 선거 과열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장선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한 뒤 선출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군회장선거는 공직선거보다 지연, 혈연 및 학연이 더 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예비후보자제도 및 후보자 토론회 등을 도입하여 정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방법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

보훈부로 격상되어 앞으로 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보훈처의 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한계점이 있다. 이는 보훈처는 향군의 감독기관으로서 시정 조치 명령권 및 수익사업 승인·취소 권한이 있다. 보훈처장은 향군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또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훈처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조사 및 서류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고 및 자료제출

7) 문연철. "예비역단체의 국방정책 참여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2013). p.28.

8) 김성봉·최정인, “재향군인회 운영상의 쟁점과 개선방향 모색”, 『이슈와 논점』, 제1125호, 국회입법조사처(2016년 2월 19일)

을 요구할 수 있다.

향군은 자율적인 민간단체로서의 성격과 함께 국가가 특별히 인정한 권한과 지위를 보유하는 공적인 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현행법은 복수의 재향군인 단체 설립을 금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도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의 유일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한편으로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향군이 향토방위 지원과 같이 공동체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향군에 대해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객관적 감시가 요구된다는 현실적 요청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군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주관부서가 옮겨지면서 향군은 공법보훈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른 보훈단체는 국가유공단체로 법적적용을 받고 있지만, 향군은 국가유공단체라는 법적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법 제정을 통하여 향군의 정체성을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제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만큼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군의 자율적인 준수 노력과 함께 향군의 제도이행을 확인하는 보훈처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보훈처와 향군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언제든지 있다. 과거 2019년 1월에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향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국가보훈처가 반박에 나서기도 하였다.⁹⁾ 갈등이 있었던 분야는 ①과거 보훈처장이 작성한 이른바 '적폐자료'를 갖대로 한 향군 개혁 발목잡기 주장 ②경영정상화를 가로막아 향군을 매번 부도 위기로 몬다는 주장 ③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향군을 국고지원단체로 매도했다는 주장 ④향군의 안보정책 의사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했다는 주장 등이다.

9) 김관용, "국가보훈처 "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당"...향군 주장 반박", 「이데일리」, 2019.1.16.일자

Ⅲ.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와 재향군인회 정체성 분석

1. 정체성의 중요성

정체성은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속에서 시작된다. 즉,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자기다움의 사상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름, 국적, 성별, 출생 년월일, 민족, 출생지(본적), 출신학교 등은 사실상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이터가 되고 있다. 개인들의 정체성이 모여 민족, 부족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같은 마을에서 출생하여 같은 마을에서 성장했다면 그 마을의 지형 등은 물론, 경험한 중요한 사건, 생활관습 등, 그곳의 문화들을 서로가 공유하게 되는데, 민족, 종족의 정체성은 이것을 확대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정체성의 개념은 개인의 정체성 개념에서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으로 확대 가능한데 이 개념은 1960년대에 등장하였다.¹⁰⁾ 민족정체성은 인간이 갖는 정체성의 한부분이다. 민족정체성은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공유된 민족적 특성들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특정 민족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자아개념의 일부분인데 이것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 스스로 정의하거나 또는 타인들에 의해서 정의되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 민족처럼 단체와 조직들에서도 정체성은 같은 개념으로 접근가능하다.

개인 뿐만이 아니라 단체, 민족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체와 민족소속감을 상실하였을 때 우리는 줄 끊어진 연의 신세처럼 정처없이 방황하게 되고 도태하게 된다. 자기와 다른 다수의 민족구성원 속에 처해있을 때 우리는 고독감을 느낀다. 문화유전자의 상실감으로 민족구성원에게 고독과 상실감, 삶의 의욕마저 떨어뜨리거나 상실하게 된다. 민족이란 일종의 문화유전자이다. 유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은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모두 유익하다는 말이 되어 개인과 국가, 민족이 유지될 수 있는 근본적인 생명력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을 한다. 정체감의 형성 과정에서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10) 윤주일. "조직 정체성과 내러티브."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2014). p.4

는 다른 자신만의 소망, 사고, 기억, 외모 등을 가지고 있다는 자각을 한다. 인간은 양육자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 형성을 시작하는데,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으로 보내진 아이도 일생에 한 번은 자신의 생모나 생부라는 존재를 자기 인생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에릭 에릭슨의 발달이론에서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형성되거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 시기에 친구, 외부 집단과 접촉하면서 의미있고 풍요로운 자기 개념을 만들거나, 외부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현상을 맞기도 한다.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인간이 종교를 갖는 것도 정체성 형성과 연관이 있다. 신과의 관계 설정, 우주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존재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삶의 부조리나 희로애락을 처리해 나간다. 정체성은 철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정체성 문제도 다각도로 조명되었다. 오프라인에서의 인격과 온라인상에서의 인격이 전혀 다르게 자신의 삶을 연출할 수 있게 되면서 당사자도 어느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가 탐구 대상이 된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인공지능의 발달도 정체성 문제를 본질적 측면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나의 정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처럼 정체라는 정의가 필연적으로 구별되는 또 다른 대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별적인 것이 다른 구별되는 존재와의 관계에서 변별되고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존재들 중에 속한 존재로서 개별성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를 다루어왔다. 개인의 정체성을 주변 환경과의 상호관계까지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고립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는 면에 국한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정체성이 확립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동에 익숙해 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정체성이 불안정하면 조직의 비전과 목표설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2. 정체성 개념

정체성¹¹⁾에 대한 개념은 국어사전에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정의되어 있다.¹²⁾ 정신분석용어 사전에는 정체성은 상당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경험. 정체감은 주관적 경험으로서, 아동 자신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정체감의 형성 과정에서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소망, 사고, 기억 그리고 외모를 갖고 있다는 자각을 갖는다. 따라서 “정체성이란 용어는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정체성이란 용어가 철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과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고, 정체성이 정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정통성(justification)은 라틴어 'jus'에서 온 것인데, 'jus'는 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치(legitimacy)를 정통성이라 하고, 정체성(identification)이라 함은 다른 문화와 차별될 수 있는 독특함을 형상화하여 그 가치를 통하여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사용하곤 한다.

Albert & Whetten(1985)은 정체성을 ‘우리는 누구인가?(Who are we?)’,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가?(What kind of business are we in?)’,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What do we want to be?)’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구체화 되는 것으로 조직의 본질을 나타내는 특성을 의미하는 중심성(centrality), 다른 조직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의미하는 구별성(distinctiveness), 특성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속성(endurance)의 세 속성을 통해 특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¹³⁾

11) 위키백과 :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은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이다.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한다. 정체성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인간의 정체성, 기업의 정체성, 군대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등 다양하다. 통상 정체성이라고 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말한다.(검색일: 2022.11.14).

12) 박희준. "北, 핵개발 정당화 위해 자기 정체성과 외부 위협 활용했다". 「아시아경제」. 2014년 10월 26일.

정체성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적 차원에서 모두 가지고 있다. 많은 집단에 속해있을 수 있는 개인은 그 가운데서 정체성을 찾고 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집단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과 달리 그 속성이 잘 변하지는 않지만 그 목적을 다했을 때는 집단이 해체될 수도 있다. 둘째, 정체성은 가문과 성별 연령과 같은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개개인이 자유롭게 정체성을 규정 할 수 있다. 즉 만들어진다. 셋째, 개인과 집단은 다

수의 정체성이 있다. 예를 들어 '귀속, 영토, 경제, 문화, 정치, 사회, 국가 정체성' 등의 것들을 가진다. 넷째,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이 규정할 수 있지만 타인의 시각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여러 정체성 중 상대적 중요성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상호 보완 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¹⁴⁾

정체성의 용어가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개념적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쓰이고 있다. 첫째, 사람들의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체성과 민족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둘째, 사회정체성 이론이나 사회 운동에서 집합체 안의 귀속의식(identification)을 의미한다. 셋째, 고도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들로 구성된 한 개체의 부분들을 말한다.¹⁵⁾

심리학에서는 개성의 한 특징을 가리키는 말로 인간의 여러 가지 생리적·심리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성이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존재할 때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정의한다.¹⁶⁾

정체성은 개인정체성과 조직정체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¹⁷⁾ 개인정체성은 사회정체성과 개인정체성으로 나뉘어 정의하게 되는데 사회정체성은 자신이 속해있는 다양한 사회 소속감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인식의 일부이며, 개인정체

13) 노재인. "정부 조직 정체성 변화 (1990-2017)." 국내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2020). p.47.

14) 길연경. "국민교육현장과 국가 정체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8). p.4

15) 허만용, 이해영.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韓國政策學會報』 21.2 (2012): p.4..

16) 예만기,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pp.5-6.

17) 송대승. "조직정체성 및 조직동일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2014). pp.5-6

성은 개인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말한다. 조직정체성은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인식되고, 공유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구별되며 지속적인 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이란 한 국가의 근본 성격이나 가치, 제도, 정책 등에 대하여 국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과 일체감으로, 국민통합 또는 사회통합의 기본 토대이다.¹⁸⁾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짧은 기간에 정립된 국가정체성으로 인해 근현대사를 둘러싼 국가 정체성 논쟁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을 통하여 정치적 비전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있다.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든,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생각보다 쉽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헌법을 보면 되고, 헌법정신은 바로 헌법전문이다. 헌법 전문에 나타난 글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것이다. 1919년의 3.1운동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¹⁹⁾ 헌법전문에서 표현된 3.1운동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형성의 기원(origin)이다.²⁰⁾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는 헌법전문²¹⁾에는 ‘유구한 력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

18) 서희경.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2』 (2014), pp.251-271.

19) 서희경(2014) p.257.

20) 1948년 7월 1일부터 진행된 제헌국회의 헌법전문에 관한 논의를 검토해 보면, 첫째, 제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반일 민족주의에 기반한 3.1운동에서 찾고자 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새롭게 수립되지만,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한 국가라는 의미이다. 둘째, 제헌의원들은 3.1운동이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이며, 대한민국은 그것을 계승한 국가라고 인식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수입되거나 이식된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또 다른 기둥이다.

21) 대한민국 헌법 전문(大韓民國憲法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초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소결론적으로, 정체(正體) 또는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다. 정체성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정체성은 영구적일 수도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체성도 변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대상의 인식으로서의 정체, 인간의 정체성, 기업의 정체성, 군대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등 다양하다. 통상 정체성이라고 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조직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정체성은 인간 정체성, 기업 정체성, 군대 정체성, 국가 정체성 등 다양하고, 통상 정체성은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나 본 글에서는 기업 정체성, 즉 향군 정체성을 말한다.

3. 재향군인회 정체성 분석

가. 조직 구성원과 활동 성향 분석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모두가 육·해·공군 예비역 등 안보관련 최일선에서 근무한 유경험자로 되어 있다. 향군회원으로는 정회원과 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군번소지자)으로 향군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²²⁾ 회원구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22) <https://www.korva.or.kr/sub0202.asp>(검색일 : 2022. 11.24)

<표 4> 향군 정관

정관 제6조(회원) ① 회원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회원 중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으로 분류한다.

제7조(명예회원) 본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국가 안전보장과 본회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
2.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 또는 사망한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구성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복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전후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일제 점령기를 온몸으로 저항해온 노령세대(90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창설기에는 제대장병 보도라는 병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이념적 지표가 불분명 하였으며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던 60년대에는 향군의 정치적 입지 확보에 치중한 관계로 활동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향군을 재건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안보단체로 입지를 강화하였고 북한무장공비 침투 사건(68. 1. 21), 울진 삼척지구 양민 학살사건, 이승복 일가 참변사건 등을 거울삼아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여 무장공비진압을 비롯 무장소요 진압, 중요 시설 경비 등 국가방위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국가지원에 힘입은 향군은 국민안보의식 계도를 위해 국민안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회원 구호 및 생계보조 사업을 추가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안정기로서 안보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회원친목회 육성, 호국용사 묘역 조성, 향군우대 가맹점 제도 도입 등 회원 복지향상 및 권익증진과 사회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해외교류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0년대에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대두되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전시작전권 문제가 표면화되자 전시작전권 전환연기와 국보법 개정 폐지 반대운동에 향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대북송금 관련, 강정구 송두율 교수 처벌, 후세인 생포 관련, 일본의 독도망언 및 역사왜곡 규탄, 부패추방, 광우병 관련 기자회견 등 안보외적인 성명, 집회, 회견 등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향군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외에도 주요 안보이슈를 전파하는 인터넷 안보 활동(Konas)과 향군 발전 1.2.3운동을 전개하고 미국을 비롯한 13개국에 22개의 지회를 개설하여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에 노력하였다. 2011년 이후에도 향군 활동의 절반이상(52%)을 안보집회에 치중하는 한편 국민 안보교육을 위해 연 2,826회 20만 명을 대상으로 안보강연과 안보강좌를 개설하였고, 연 592회 37,582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애국보훈단체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홍보를 위한 언론접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전체 보도의 37%에 머물던 향군활동 홍보가 68%까지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향군 본연의 자리를 잡아가는 증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법상의 향군 정체성 분석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1963. 7. 19 법률 제 1367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14차례의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 개정된 회법은 2016. 5. 29 법률 제14256호로 개정되어 있다. 회법에 설립목적과 법인격 및 설립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회법상 향군 설립목적과 법인격 및 설립내용

<p>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제2조 (법인격 및 설립)</p> <p>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p> <p>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

회법에서 나타난 향군설립목적과 함께 향군 홈페이지에 표현되어 있는 문구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친목·애국·명예단체입니다.”라고 되어있다.²³⁾ 이와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향군 창설 제65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 10월 3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기념식과 함께 정채성 선포식을 거행하면서 “향군은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라고 선포한 것이다. 이날 향군은 전국 시·도회장 및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채성 선포식을 통해 ‘향군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국가안보의 제2보루라는 자부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일체감’,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 등 4개 주제를 설정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긴박한 안보현실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안보 최일선을 담당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양양과 위상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향군은 이날 재정립한 정채성을 앞으로 향군의 안보활동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채성을 통하여 밝힌 안보단체에 대한 의미이다. 사전적으로 안보단체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우선 안보라는 말은 편안히 보전됨 또는 편안히 보전하는 ‘안전 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안보단체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이 ‘안보’와 ‘단체’ 용어를 합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안보단체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문건도 제한되고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도 미흡하다. 향군 홈페이지에도 향군은 ‘친목·애국·명예단체’로 표현되어 있고 안보단체라는 말은 없지만 많은 사람과 언론에서 향군은 안보단체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향군을 공법보훈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설립된 공법단체”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1월 현재 공법보훈단체는 17개에 이른다. 2021년까지 14개의 단체를 유지하다가 2022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5.18 관련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²⁴⁾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향군의 정채성을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로 규정한

23) <https://www.korva.or.kr/sub010101.asp>(검색일 2022. 11. 23)

24) 문근형, “예비역 단체의 국방정책 참여 방안 고찰”, 『안보전략연구, 8호』 (22.10), p.72

바는 있지만 공식성과 신뢰성이 미흡하다. 향군이 안보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우선은 안보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학술적으로나 정부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향군의 회법상에 안보단체임을 명시하는 노력을 거쳐야 할 것이다. 향군의 정체성 선포식을 가진바 있지만 이를 규정이나 법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 법상의 목적과 정체성 상호관계

향군 회법상의 향군설립 목적은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에 목표, 목적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은 목적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신여대 교수 권오성은 “목적과 정체성은 동류이며, 틀리다면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체성은 조직의 존립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시 그리고 구성원의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질시 바뀔 수 있다.”

대중언어연구소장 박대중은 “정체성은 내면적인 것을 지칭하는 말로 ‘마음’, ‘이념’, ‘뜻, 의지’의 관계된 말로 개인의 정체성과 조직의 정체성으로 대별된다. 조직의 정체성은 조직의 변하지 않는 근본이념이다. identity는 동일성 하나로 속이거나 거짓이 없는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이나 바른 신분을 뜻하고 조직의 차원에서는 해당 조직의 올바른 성격에서 나아가 조직이 지향 하는바 또는 조직의 변하지 않는 정식 가치관을 의미한다. 조직이 추구하고 지향 하는바 곧 조직의 목적으로 조직의 목적과 조직의 정체성은 동일하다. 정체성은 사전적 정의로서는 정의가 어렵고 일상적으로 그 말을 쓸때나 사회과학적 배경하에서 그 말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에서 파악하면 실패하기 쉽다.” 라고 조언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단체는 개인들의 결사체로서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단체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공동의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를 추구할 경우 소멸하거나 새로운 성격의 단체로 변경되어야 한다. 정체성은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가 공동의 목표를 계속유지하려는 근거 즉 목표추구의 계기에 대한 조직의 성향으로

공동의 목표는 조직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것이다.

정체성은 조직의 존립목적과 양립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정체성은 존립목적의 추구를 통해 성립될 것이며, 존립목적의 상실은 정체성의 상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은 존립 목적을 통해 형성된 조직이나 단체의 고유한 특성, 성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존립목적은 단체의 설립, 운영 및 존속의 근본 이유, 근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 간의 개념상의 우열은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단체의 목적이 바뀌면 그 정체성도 변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조직의 설립목적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조직이 시대에 맞게 변화하게 되면 설립목적도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조직 유지에 혼돈이 없을 것이다. 결국, 조직의 정체성은 회법의 조직목표 및 목적과 긴밀하게 연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향군의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IV. 미래 지향적 향군 발전방향

인간이 정체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립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향군도 명확한 정체성을 정립하여야 한다. 회원의 성격이나 회의 운영, 활동 등을 보면 향군은 분명한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면에서는 친목단체이다. 이러한 근거는 회법에 근거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향군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정체성을 외치는 것은 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향군의 활동한 분야와 방향을 보면 분명 국가 안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한 단체임이 분명하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회법에 안보단체로서의 역할 수행이 향군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향군은 회법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인 회원들의 친목도모에 향군의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친목단체로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체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0년간 예비역 장성 출신이 향군회장을

역임하던 과거의 전통이 창설 70주년을 맞이한 2022년도에 과감히 벗어났다. 예비역 대위 출신인 신상태 회장이 선출된 것이다. 이는 향군이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회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향군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회장은 과거의 권위주의를 과감히 타파하고 향군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과거 회장들이 걸어오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 표는 과거 역대회장 현황이다.

<표 6> 역대회장²⁵⁾

구분	성명	(예)계급	임관	재임기간
1	백홍석	육군준장	특입7	1952.2.1 ~ 1952.9.9
2	박승훈	육군준장	특입	1952.9.10 ~ 1953.7.24
3/4	신태영	(예)육군중장	특입	1953.7.25 ~ 1957.1.16
5	김일환	(예)육군중장	군영	1957.1.17 ~ 1959.11.25
6	이선근	(예)육군준장	특입	1959.11.26 ~ 1960.5.3
7	이대영	(예)육군준장	특입	1960.5.4 ~ 1960.7.15
8	이형근	(예)육군대장	군영	1960.7.16 ~ 1961.12.11
9	김홍일	(예)육군중장	특입	1961.12.12 ~ 1962.7.17
10	김성은	(예)해병중장	해사1기	1962.7.18 ~ 1963.3.4
11/12	이성호	(예)해군중장	특입	1963.3.5 ~ 1966.1.11
13-17	김일환	(예)육군중장	군영	1966.1.12 ~ 1975.2.25
18-21	이맹기	(예)해군중장	해사1기	1975.2.26 ~ 1982.2.25
22	김중환	(예)육군대장	육사4기	1982.2.26 ~ 1985.2.25
23	백석주	(예)육군대장	육사8기	1985.2.26 ~ 1987.9.16
24	최경록	(예)육군중장	군영	1987.9.17 ~ 1988.4.28
25-26	소준열	(예)육군대장	육사10기	1988.4.29 ~ 1994.4.26
27-28	장태완	(예)육군소장	육중11기	1994.4.26 ~ 2000.3.15
29-30	이상훈	(예)육군대장	육사11기	2000.4.22 ~ 2006.4.21
31-32	박세직	(예)육군소장	육사12기	2006.4.21 ~ 2009.7.27
33-34	박세환	(예)육군대장	학군 1기	2009.9.25 ~ 2015.4.10
35	조남풍	(예)육군대장	육사18기	2015.4.10 ~ 2016.1.13
36	김진호	(예)육군대장	학군2기	2017.8.11 ~ 2022.4.13
37	신상태	(예)육군대위	3사6기	2022.4.13 ~ 현임

25) <https://www.korva.or.kr/sub010101.asp>(검색일 2022. 11. 23)

새로운 회장의 부임과 함께 향군은 70주년에서 선포한 비전을 중심으로 향군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향군 비전 2030에서 향군은 “변화와 혁신!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향군!”을 슬로건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슬로건과 함께 4대 비전으로 청렴·신뢰, 안정적 재정기반의 향군, 대한민국 어디서나 존중받는 향군, 최고·최대 안보단체 그 이상의 향군, 따뜻한 동행 회원 모두가 행복한 향군을 제시하였다.

각 비전별 세부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인 청렴·신뢰, 안정적 재정기반의 향군을 만들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청렴, 신뢰를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한 후 수익사업을 선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존중받는 향군을 위해 산하 각급회 활성화와 향군회원 정예화, 세계속의 글로벌 향군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최고·최대 안보단체 그 이상의 향군을 위해 안보역량을 극대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위에 튼튼한 반보를 지원하고, 홍보체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따뜻한 동행 회원 모두가 행복한 향군을 위해 향군회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친목 도모활동을 강화하며, 체감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결론으로는 ‘변화와 혁신으로 다시 도약하는 향군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통한 최종상태는 위에서 제시한 추진방향을 달성하는 것이다. 4대비전에 대한 실천과제는 아래 <표 7>와 같다.

<표 7> 4대 비전별 실천과제

비전	실천과제
청렴·신뢰, 안정적 재정기반의 향군.	부정부패 척결, 공직윤리 이해충돌 방지, 산하업체 책임경영제 정착, 회계관리 투명성 확립. 각급회 자립기반 구축, 각급회 수입사업 확대, 목적사업 예산 확대, 후원제도 활성화, 전문경영인 체제 정착, 신규사업 개발지속, 수익사업 경쟁력 제고, 산하업체 구조조정

대한민국의 이 서 나 존 중 받 는 향군.	읍면동 조직 활성화, 여성 및 청년조직 활동 확대, 향군회관 100% 건립, 목적사업 범위 확대, 정회원 200만 달성, 전역과 동시 회원가입 제도화, 회원 인센티브제 및 모바일 회원 확대, 명예회원 제도 확대, 교민거주 해외지화 확대 및 활성화, 6.25 참전국 교류 확대, 세계 재향군인회와 교류 확대, On-line 체제에 의한 회무운영
최 고·최 대 안 보 단 체 그 이 상의 향군.	안보감시 대응·교육체제 상시활용, 타 보훈·안보단체와 연계한 안보활동, 사이버 안보대응체계 활성화, 국토대장정행사 등 체험위주 안보활동 활성화, 국건한 한미동맹 강화 활동 전개. 국군장병의 사기 진작, 강력한 예비전력 구축위한 정책 지원, 주한미군 교류협력 강화, 대국민 홍보 이벤트 활성화, 전 회원의 홍보 요원화, On-Off Line 홍보강화, 향군 통합 홍보체제 구축
따뜻한 동 행 회 원 모 두 가 행 복 한 향군	향군의 날 정부행사로 격상, 향군주도의 국가보훈 업무 수행 확대, 새로운 향군회관 보유, 회원자녀 장학금 등 수혜 확대, 공익 봉사활동 및 교통·환경개선 활동 전개, 유관기관 협력 강화, 참전·친목단체와 결속 강화, 회원 상호간 동호회 활성화, 향군복지타운 건립, 유명브랜드 및 젊은층 선호 우대 가맹점 확대,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적극지원, 전상용사 위문 확대

비전을 중심으로 향군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 발전하는 향군이 되기를 바란다. 목표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향군의 정체성도 그 목표에 맞게 확립될 것이다.

V. 결 언

향군은 2022년을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신상태(3사 6기) 전 향군 부회장이 2022년 4월 13일 제37대 향군 회장(임기 4년)에 선출된 것이다. 새로 당선된 회장은 육군 대위로 전역해 향군 이사와 서울시 향군 27·28대 회장, 향군 34·35대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향군 설립 이후 70년 만에 비(非)장성 출신이 회장에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군이 많은 변화와 혁신을 거친 것처럼 향군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향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체성 확립이 되어야 한다. 자아 정체성 확립의 기능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삶과 목표 설정과 연계되며, 어떻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가에 따라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자아 정체성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정체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면, 사람들이 가정,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듯이 향군은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해 향후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확립은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해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마련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또한 타 조직과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가치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직의 목표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활동의 적성이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 활동을 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절망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면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향군은 창설목적의 역사성, 향군 구성요원의 성향, 창설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업무의 지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안보단체, 회원의 친목과 권익 신장 단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단체로 정체성을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73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재향군인회법상의 설립 목적에는 안보에 대한 명확한 목적개념이 누락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군의 설립목적에 향군이 대한민국의 안보주체임을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 금번 70주년을 맞이하여 제시한 향군 비전 2030은 향군의 정체성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와 혁신을 통하면서 향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향군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 : 2023.01.10]

[논문심사일 : 2023.01.25]

[논문수정일 : 2023.02.10]

[게재확정일 : 2023.03.06]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강용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매개로 육군 전문인력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 김성봉·최정인, "재향군인회 운영상의 쟁점과 개선방향 모색", 『이슈와 논점』, 제1125호, 국회입법조사처(2016년 2월 19일)
- 길연경. "국민교육현장과 국가 정체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18)
- 노재인. "정부 조직 정체성 변화 (1990-2017)." 국내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2020).
- 서희경.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2.』 (2014)
- 문근형, "예비역 단체의 국방정책 참여 방안 고찰", 『안보전략연구, 8호』 (22.10)
- 문연철. "예비역단체의 국방정책 참여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2013)
- 송대승. "조직정체성 및 조직동일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2014)
- 윤주일. "조직 정체성과 내러티브."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2014).
- 예만기,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 『재향군인회 50년사』 (서울 : 大韓民國在鄉軍人會, 2003)
-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60년사』 (서울 : 大韓民國在鄉軍人會, 2014)
- 허만용, 이해영.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韓國政策學會報』 21.2 (2012)

2. 기타

김관용, “국가보훈처 "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당"...향군 주장 반박”, 「이데일리」 2019.1.16.일자

박희준. "北, 핵개발 정당화 위해 자기 정체성과 외부 위협 활용했다". 「아시아경제」. 2014년 10월 26일.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검색 2022.11. 18)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2211. 14)

<https://korva.or.kr/sub010101.asp>(검색일자 : 2022. 12. 26)

<https://www.korva.or.kr/sub0202.asp>(검색일 : 2022. 11.24)

Abstract

A Study on the Identity of the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Moon Geunhyeong

Recently,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seriously challenged by national security amid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nd threats. Since the Korean War,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KVA) has contributed to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by strongly condemning claims that deny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its long history. Founded in 1952, KVA celebrated its 70th anniversary in 2022. During the ceremony, KVA firmly vowed to look back on the past 70 years and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and role in line with its status as the nation's largest security organization.

Whoever man or group have the The question, 'Who is it?' or 'What kind of organization is it?' that is related to identity, and everyone wants to find out what identity is. However, even though the KVA has a long history and numerous members, many people still do not know 'What KVA does?' and "What kind of organization it is?'. The people argue that the identity of KVA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prepared for the future through change and innovation.

Looking at the importance of identity, we tried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KVA academically through activit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past to present directions for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e people will take pride in their military service and develop into the second bastion of national defense, which supports strong defense capabilities and strong national security.

Keywords: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Identity, National security, Veterans' organizations, Security activities

일본 전국시대 명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에 관한 현대적 함의

박 상 중 *
안 운 호 **

- I. 서 론
- II. 전국시대 의미 및 주요 사건
- III. 전국시대 주요 전투
- IV. 전국시대 3대 명장 리더십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교신저자, 두식연구소장, 정치학박사

논문 요약

최근 들어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위협과 중국과 대만의 양안갈등 증폭 등으로 한미군사동맹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일본 전국시대 3대 명장의 리더십을 벤치마킹하여 일본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군의 위기관리 리더십 발전과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활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전사연구를 통해 전국시대의 3대 명장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사례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위기관리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창설부대는 신속한 결단력이 필요한 오다 노부나가형의 리더십이 적합하고,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진 조직에는 서민적인 설득력을 갖춘 도요토미 히데요시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안정기에 접어든 조직에는 화합과 소통의 이에야스형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섭형 리더십이 요구된다. 따라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3대 명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의 강점을 벤치마킹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일본 전국시대 3대 명장들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분석함으로써, 일본군 리더십의 다양한 근원을 이해하고 한국군의 리더십 발전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에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위기관리 리더십,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I. 서 론

최근 들어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강화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하여 수사적 위협(Rhetorical Threat)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핵무력의 법제화 공표,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와 전술핵부대에 대한 김정은의 공개적인 현장지도, 울릉도 근처에 미사일 낙탄과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 시험발사, ICBM 화성-17호 발사현장에 대한 김정은과 둘째 딸의 방문과 올해 초 김여정의 ICBM탄 정상각도 시험발사 발언 등을 통해 제7차 핵실험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본의 군사능력, 특히 일본군 리더십에 대한 균형감있는 인식은 나름대로 의미가 깊다.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 문물¹⁾의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도래하였으므로, 한국문화가 일본문화보다 우월하며, 일본은 한국의 선진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으므로 한국에 대해 감사하다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문화우월주의²⁾ 시각이다.

둘째는 일본의 경우 다양한 문물을 수입하기는 했지만, 한반도를 경유한 것이 주류는 아니며, 삼국시대 이후부터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³⁾를 통하여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대항해시대에는 서양세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문물을 교류하였으므로⁴⁾, 한반도와의 관련성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크지 않다는 문화다양성주의⁵⁾ 시각이다.

일본에 대한 상반된 인식은 한국과 일본의 상호 국가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학교 교육,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와 반성 및 피해배상 요구 등⁶⁾ 다양한

- 1) 여기서 의미하는 문물은 ‘Culture(문화)’ 뿐만 아니라 ‘Civilization(문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의 산물인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법률 등을 망라한다.
- 2)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중 하나로, 자기 민족의 경험이나 전통에 비추어 다른 사회의 문화를 바라보는 문화 인식의 태도이다.
- 3) 일본은 견수사(수나라와 교류), 견당사(당나라와 교류) 등을 통하여 중국과 독자적으로 교류하였다.
- 4) 대항해시대 일본은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서구의 다양한 문물을 수입하고, 일본 고유 문화의 수출하기도 하였다.
- 5)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한다.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한반도 안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군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3대 명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사례연구하여 일본군에 대한 균형감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일본 전국시대 3대 명장들의 리더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이 전국시대의 주역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시 일본의 시대적 상황은 사회적, 정치적 변동이 계속되고, 효과적인 황실의 권위가 작동되지 않은 내란의 시기였다. 또한, 대항해시대의 도래로 서양 세력들의 출현은 사상적, 물질적으로 일본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난세의 시기에 3명의 명장들이 교대로 등장하였다. 먼저, 오다 노부나가는 혼란한 일본을 통일하였으나 부하의 반란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 사후 혼란을 틈타 실권을 장악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으나 그 침략의 여파로 몰락의 길을 자초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투력을 성공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일본 역사의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를 여는 데 성공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3대 명장들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시대의 주요 사건과 주요 전투를 살펴본 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현대적 함의를 도출하겠다.

II. 전국시대 의미 및 주요 사건

1. 전국시대 도래

일본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센코쿠 시대)는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사회적, 정치적 변동이 계속된 내란의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시대는 1467년 오닌의 난⁷⁾에서 시작하여 1493년 메이오 정

6) 여기에서 의미하는 왜곡은 역사적 사실 자체에 대한 왜곡이 아니라, 인식에 의한 왜곡적 사고를 의미한다.

변)을 걸쳐 1573년 무로마치 막부 제15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⁹⁾가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교토¹⁰⁾에서 추방되어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질 때까지의 시대이다.¹¹⁾ 전국시대의 주요 행정지는 쓰시마와 아키를 포함하여 총 68국으로, 세부 위치는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 일본 전국시대 행정지명

일본 전국시대의 어원은 이치조, 고노에 하사미치 등의 구계(귀족)가 1467년 오닌의 난 이후 어지러운 세상을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난세에 비유하여 ‘전국의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 7) 오닌의 난(일본어: 応仁の乱)은 일본 무로마치 시대인 오닌 원년(1467년) 1월 2일 에 일어난, 쇼군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의 슈고 다이묘(守護大名)들이 교토 (京都)에서 벌인 항쟁.
- 8) 메이오 정변은 일본 무로마치 막부 시대 메이오 2년에 일어난 아시카가 쇼군 폐위 사건.
- 9) 재임 기간(1568~1588년): 1573년 교토 축출 및 실각. 쇼군직 유지 / 1588년 쇼군직 사임
- 10) 지명, 기타 용어의 경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목적상 한문을 병기함 .
- 11) <https://ko.wikipedia.org> 참조

2. 조로쿠 대기근(1459~1461년)

오닌의 난이 일어나기 8년 전인 1459년 모내기 철에 비가 오지 않아 물이 부족하였고, 9월에는 태풍으로 홍수가 나서 가모강이 범람하였다. 이에 따라 교토 시내에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무수히 발생했다. 또한, 이 시기에 태양이 두 개로 보이거나 요성(妖星)이 달을 가리는 등의 이변이 일어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에 떨어야 했다.

1460년에도 이변은 계속되어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 철에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렸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런데 5월이 되자 상황이 바뀌어 장마가 시작되고, 큰비가 내리더니, 논이 침수되어 벼가 그대로 썩어버리는 사태가 속출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기온이 급강하하여 흉작의 원인이 되었다.

1461년 2월 1일에는 계속되는 기아로 인해 연호가 조로쿠(長祿)에서 간쇼(寛正)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교토사람들은 아사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1462년 2월에는 굶어 죽은 사람의 수가 82,000명에 달해 그 시체로 가모강의 흐름이 막힐 정도였다. 3월에는 기요미즈사의 승려가 묻은 시체의 수가 1,200명 정도였다고 하며, 교토 시내에 있는 몇몇 다리 아래에 1,000명 단위로 시체를 묻었다는 기록도 고문서에 남아 있다.¹²⁾

막부의 본거지인 교토에 대한 구제는 원래 아시카가 일족 중 간토(關東)를 지배하는 관직인 가마쿠라구보(鎌倉公方)¹³⁾가 담당해야 하나, 1455년부터 시작된 간토 지역의 교토쿠(亨德)의 난이 한창 벌어지고 있어서 구제 또한 여의치 못하였다. 가마쿠라구보(鎌倉公方) ‘아시카가 시게우지’와 무로마치 막부의 ‘야마우치 오기가야쓰’ 양대 우에스기 집안의 간토 지역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1483년까지 계속되어, 중앙의 구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¹⁴⁾ 결과적

12) 코스믹 출판 지음·야베 겐타로 감수, 전경아 역, 『일본 전국시대 130년 지정학』 (경기도 일산 : 이다미디어, 2022), pp. 18-20.

13) 무로마치 막부시대에 쇼군을 대행해 간토지방의 10개국을 다스리던 가마쿠라부의 관직.

14) 일본의 3대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가 있다. 첫째, 가마쿠라 막부는 천황이 지배한 헤이안 시대 이후 (794~1185), 미나모토노 요리모토가 사가미국 가마쿠라(현 가나가와현)에 설치한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이다. 1185년부터 1333년까지 9대에 걸쳐 약 150년간 교토의 천황가와 대립하여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으며, 당시 한반도는 고려 명종(1170~1197) ~ 충숙왕(2기/1332~1339, 1기/ 1313~1330)에 해당된다.

둘째, 무로마치 막부는 고다이고 천황과 가마쿠라 막부가 대립하는 와중에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막부세력과 천황세력을 차례로 제압하면서 쇼군이 된 무사정권이다. 아시카가

으로, 전국적인 기근 속에서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전국이 지역 토호들을 중심으로 극심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

3. 포르투갈 조총의 전래

1543년 무로마치 막부 말기, 오스미국(가고시마 남부) 다네가섬(규슈 남부)에 한 척의 배가 흘러들어왔다. 승조원의 대부분은 붉은 머리와 푸른 눈의 포르투갈인으로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으나, 그 배에 탄 명나라의 유학자 오봉(五峯)¹⁵⁾과 필담을 주고 받으며 의사소통을 했다고 한다.

당시 영주 다네가시마 도키타카는 자신이 거쳐하는 아카오기성까지 그 배를 끌고 가서 정박시키라고 명한 뒤, 그들이 지니고 있던 철로 된 기다란 조총의 사용법을 확인하고 그 위력에 놀랐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전국시대의 종식을 앞당긴 ‘조총’이 일본에 전해진 순간이었다. 이는 일본이 서양문명을 접한 최초의 기회이자 첫 번째 문화충격이기도 하다.¹⁶⁾

조총 도입 이후, 일본은 사카이 출신 대장장이 다치바야나 마타사부로에 의해 2년 만에 자체 생산에 성공하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으로써, 조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전쟁 양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조총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남아 있지 않으나,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걸쳐 조총의 보유 수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다.¹⁷⁾ 조총이 전래되고,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전국시대의 동란, 임진왜란을 거쳐 세키가하라¹⁸⁾, 오사카 전투¹⁹⁾에 이르기까지 전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조

가문이 1336년부터 1573년까지 15대, 240년간 일본을 통치, 교토의 무로마치에 궁을 지어, ‘무로마치 막부’라 명명했다. 당시 한반도는 고려 충숙왕(2기/1332~1339, 1기/1313~1330) ~ 조선 선조(1567~1608)에 해당된다.

셋째, 에도 막부는 전국시대를 거치며, 일본을 통일한 이에야스가 에도(현 도쿄)를 본거지로 창설한 무사정권이다. 이에야스가 쇼군에 취임한 1603년부터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에게 정권을 넘길 때까지 265년간 일본을 지배했다. 당시 한반도는 조선 선조(1567~1608) ~ 고종(1863~1907)에 해당된다.

15) 본명은 왕직, 중국 범죄자와 일본 상인들을 모아 해적단을 조직해 밀무역을 했으며, 중국에서 비단, 보자기 등의 물품을 구해 일본으로부터 은을 받고 팔아 큰 부를 쌓음.

16) 코스믹 출판 지음·야베 겐타로 감수, 전경아 역, 『일본 전국시대 130년 지정학』(경기도 일산 : 이다미디어, 2022), pp. 26-28.

17) 자료에 따라 30,000정에서 최대 50,000정으로 추산하고 있음.

총의 수요도 항상 있었으며, 이로써 당시 일본은 장비로 보나 숙련도로 보나 세계 유수의 군사대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전국시대 주요 전투

1. 오다 노부나가를 우뚝 서게 한 오케하자마 전투(1560년 5월 12일)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노부나가에게 패배한 이유로 스루가국의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패군의 장수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지만, 가문과 군사력 면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무장이었다.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각지의 슈고다이묘(守護大名)²⁰⁾ 세력이 약해지는 와중에 정치·군사를 정비하여 전국시대 다이묘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어 ‘도카이도(東海) 제일의 무사’라는 칭호를 받았다. 또한,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다케다·호조 가문과 동맹을 체결하여 배후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오다 노부나가의 오와리를 공략하였다.

1560년 5월 12일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45,000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오와리를 공격하였다.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오와리 공격 목적은 교토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다 노부나가에는 정치·군사적으로 최대의

18) 1600년(게이초 5년) 음력 9월 15일에 일본 미노국 세키가하라(지금의 기후현 후와군 세키가하라초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일본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전투들 중 하나로, 이시다 미즈나리를 중심으로 한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 간의 내전이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전투의 승자에게는 향후 265년간 일본을 지배하는 권력이, 패자에게는 죽음과 가문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규모 면에서는 양군 통틀어 17만이라는 대군이 맞붙었고 역사적으로도 일본사의 큰 흐름을 결정짓게 되는 이 전투가 진행된 시간은 단 3시간에 불과했다. 전투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여 도요토미 정권이 몰락하고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고, 이후 조선과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는 데다가 다수의 다이묘들이 가이에키(영지몰수)를 당 하여 멸문지화(가문자체가 망하는 일)되거나 전봉되는 등의 파급효과가 일어났으므로 정치적인 의의도 크다.

19) 이에야스 가문이 도요토미 가문(히데요시 사후, 아들 히데요리가 주축)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전투인데, 오사카성 공략을 위해 1614년 겨울과 1615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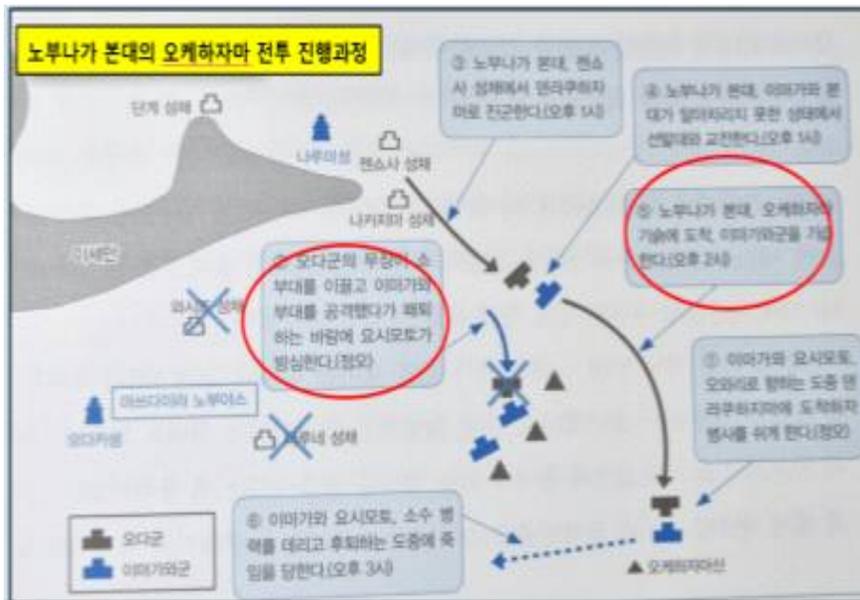
20) 원래 슈고(守護)라는, 모반이나 살인자를 검거하는 지방관이었으나, 갈수록 권력이 확대되어 영주화되면서, 슈고다이묘라고 불리게 됨. 슈고는 중앙정부(교토 황실)가, 슈고의 대리인인 슈고다이는 지방 영주가 지명.

위기에 봉착하였다.

오다 노부나가 는 양군이 조우하기 전에 마루네산, 와시즈산에 성채를 설치해 이마가와 요시모토 군의 최전선인 나무미성과 오다카성 사이의 연락선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이마가와 요시모토 군은 이이·아사히나·마쓰다이라 등으로 군대를 보내는 바람에 전력이 분산되어 본대의 힘이 약해지고 말았다. 이것이 오다 노부나가 가 기습공격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오다 노부나가 는 오케하자마의 좁고 복잡한 지형을 이용하여 기동 이후, 때마침 내린 폭우로 이와가마 요시모토 군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배후를 습격하여 이마가와 요시모토²¹⁾ 군을 격멸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오다 노부나가 는 전국시대 무장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오케하자마의 주요전투 진행 경과는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 오케하자마 전투경과

21) 요시모토는 형세가 불리함을 인지하고, 퇴각을 하려고 했지만 도망 도중 오다 군 장수 모리 신스케에 살해 당함.

2. 전국시대 분수령이 된 나가시노·시타라가하라 전투(1575년 5월 18일)

1575년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 이에야스’의 연합군은 다케다 가문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신겐 사망 이후 다케다 가쓰요리가 미카와를 계속해서 공격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끊임없는 압박감을 받았다. 시타라가하라는 도토미(현 시즈오카현 서부)와 미카와의 국경지대의 요충지이다. 이에 따라 다케다 군은 나가시노성을 1차 목표로 선정하여 공략하였다.

다케다 군은 5월에 나가시노성을 포위하였다. 성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천연요새라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다케다 군의 맹공을 버텨내고 있었으나, 차츰 열세에 몰리게 되었다. 게다가 5월 18일 오다·도쿠가와 연합군 약 38,000여 명이 원군으로 시타라가하라에 진출하였다.

시타라가하라에 도착한 오다·도쿠가와 연합군은 가쓰요리를 도발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펼쳤다. 유인책에 속은 가쓰요리는 나가시노성의 포위를 풀고 바로 시타라가하라 동부로 이동하였다. 이튿날인 21일 이른 아침, 양군은 시타라가하라에서 맞붙게 되었다. 여기에서 오다·도쿠가와 연합군의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작전이 빛을 발하였다. 양군이 맞붙은 전장이 된 렌고강 유역은 눈이 넓게 펼쳐진 습지대였다. 따라서, 기마를 타고 공격해 들어가면 말의 다리가 눈에 빠져 기동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도비가스산 성채가 함락되어 후퇴할 수 있는 진지를 잃은 다케다군은 선수를 쳐서 공격해 나가지만, 삼중으로 지은 마방책²²⁾과 보루를 넘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어렵게 돌파해 적진 안으로 들어가면, 조총으로 무장한 병사들의 일체사격²³⁾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시타라가하라 전투에서 다케다군은 야마가타 마사카게, 쓰치야 마사쓰구, 사나다 노부쓰나 등의 장수가 전사하고, 10,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되었다. 이 전투는 오다·도쿠가와 연합군의 압승으로 종결되었다.

이 전투 승리의 원동력은 오다·도쿠가와 연합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전술과 강력한 방어전술에 있었다. 오다·도쿠가와 연합군의 나가시노·시타라가하라 전투는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다.

22) 기마병을 막기 위한 목책.

23) 오다 노부나가의 3단 소총 사격 전법



<그림 3> 나가시노·시타가하라 전투 경과

3. 노부나가 사후, 히데요시 복수전 아마자키 전투(1582년 6월 6~13일)

1582년 6월 2일,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이 중용했던 아케치 미쓰히데가 모반을 일으켜²⁴⁾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와 같은 전란의 세상에서 새로운 통일 시대로 나아가려는 시기에 유력한 다이묘 중에서 지금이 승기를 잡을 적기임을 알아본 무장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모리 가문이 지배하는 주코쿠 지방의 빗추다카마쓰성을 공략하기 위해 수공작전을 펼쳐서 적을 압박하고 있는 도중에 주군의 사망 소식을 듣자, 주군 복수를 위해 모리 가문과 강화를 체결하고 철군을 결정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월 6일 다카마쓰성의 포위를 풀고, 20,000명의

24) 아케치 미쓰히데 자신이 노부나가에게 왜 모반을 했는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수많은 주장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대체로 ① 미쓰히데가 천하를 갖기 위해 그랬다는 ‘야망설’, ② 노부나가에게 품은 원한 때문에 그랬다는 ‘원한설’, ③ 시고쿠 출전을 회피하기 위해 그랬다는 ‘시고쿠 원정 회피설’, ④ 초조함 때문에 그랬다는 ‘초조설’, ⑤ 미쓰히데의 모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쓰히데의 뒤에 숨은 흑막이 있을 것이라는 ‘흑막설’ 등 크게 다섯 가지 설이 오늘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군대를 이끌고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토까지 일일 30km 강행군으로 일주일 만에 총 200km를 돌파하였다.



<그림 4> 히데요시 군의 주쿄쿠 대회군 경로

미쓰히데는 예상외로 빠른 히데요시의 회군 소식을 접하자마자, 모든 장수에게 서한을 보내 원군을 요청하였지만 원군을 보내주겠다는 무장은 거의 없었다. 이에 비해 회군 중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가가 아직 생존해있다고 소문을 내서 장수들을 교토로 불러 모았고, 이에 응한 용맹한 무장들이 히데요시 군과 합류하기 위해 일제히 달려오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히데요시의 병력은 40,000명으로 미쓰히데 병력 16,000명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다. 병력의 압도적 차이와 열세가 명확해지자, 미쓰히데는 회군하는 히데요시 군을 공격하는 장소를 야마자키로 정하고 그 지역으로 군대를 기동시켰다.

히데요시는 미쓰히데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대군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전날 밤에 야마자키로 통하는 좁은 통로를 서둘러 빠져나와 야마자키의 주요 거점을 점거하고, 최전선에 전열을 정비하였다. 히데요시 본대는 오다 노부타카²⁵⁾의 군대와 함께 야마자키산의 기슭에 주둔했고, 덴노산의 요지에는 구로다 간베에군이 주둔하였다. 미쓰히데 군의 정면에는 무장 다카야마 우콘²⁶⁾을

25) 오다 노부나가 3남

26) 전국시대 대표적인 기독교 신자였던 다이묘.

배치하고, 기즈강 부근에는 이케다 쓰네오키군²⁷⁾이 진을 쳤다. 히데요시는 미쓰히데 군을 공략할 진영을 빈틈없이 세우는 등 사전에 전투에 임할 준비를 마쳤다.

전쟁의 막은 13일 오후 16:00경, 가와테 요시노리²⁸⁾ 측에 배치된 이케다 쓰네오키 군이 은밀하게 강을 건너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미쓰히데 본대의 측방을 무너뜨리자 전쟁의 판도가 단숨에 바뀌었다. 이에 미쓰히데 군은 급격하게 붕괴되고, 미쓰히데 자신도 전선을 이탈하여 도망쳤다.²⁹⁾

상상을 뛰어넘는 히데요시 군의 진군속도와 주변 다이묘들을 포섭하는 막강한 전력이 미쓰히데의 지략을 능가하는 형태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히데요시는 야마자키 전투의 승리로 천하인에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으며, 주군 노부나가를 죽인 미쓰히데의 천하는 12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IV. 전국시대 3대 명장 리더십

1. 오다 노부나가의 리더십

가. 생애

오다 노부나가(일본어: 織田 信長, 덴분 3년 음력 5월 12일(1534년 6월 23일)~덴쇼 10년 음력 6월 2일(1582년 6월 21일))는 센고쿠 시대를 평정한 인물로,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를 연 다이묘이다. 오다 노부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중세 일본의 3대 명장으로 불린다.

오다 노부나가는 오와리국의 센고쿠 다이묘 오다 노부히데의 장남으로, 아버지의 숙적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격파하고 정이대장군인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옹립해 교토를 수중에 넣었다. 노부나가는 아시카가 요시아키 마저 추방하여 무로마치 막부를 멸망시키면서 중부 일본 일대를 기반으로 봉건제의 정점에 섰다. 일본 각 지역의 패자들을 차례차례 굴복시키면서 센고쿠 시대의 일

27) 오와리 시절부터의 오다 가문의 가신으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김,
28) 이마가와 가문의 가신으로 오카자키성을 관리하다가,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패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넘겨줌

29) 이후, 히데요시가 보낸, 낙오병 사냥을 나선 농민들에 의해 살해됨.

분을 평정하여, 하극상이 계속되던 전국시대 마감하고 최초의 천하인이 되었다. 노부나가는 1582년(덴쇼 10년) 음력 6월 2일, 천하통일을 목전에 두고 중신(重臣) 아케치 미쓰히데의 모반을 막지 못하여 혼노지에서 자살하였다. 형식상으로나마 가권은 장남 오다 노부타다에게 넘긴 상태였으나 장남마저 교토의 니조 성에서 살해되어 후계 자리가 또 다른 중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넘어갔으며, 이후 일본 통일의 기반이 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여는 밑거름이 되었다.

오다 노부나가는 생애 내내 기득권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였다. 또한, 정책적으로 낙시락좌(樂市樂座; 일종의 상업진흥, 자유무역정책), 검지(檢地; 토지조사), 서양에의 문호 개방 등 봉건적 일본에서 누구도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결단으로 문화 경제적 발전을 이뤄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를 열었다. 종교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 불교와 신토 세력의 권위를 부정하고, 포르투갈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진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고 자신도 잠시 관심을 가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³⁰⁾ 오다 노부나가는 자기의 뿌리를 헤이시(平氏)라 자처했으나 역사 연구가들에 따르면 에치젠 후지와라씨의 말예라고도 하고 인베씨(隠部氏)의 후예라고도 한다. 결론적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혈통 서열은 오와리 집정관이었던 시바 가문의 밑의 밑이었다. 무로마치 막부가 파견한 지방관을 슈고 다이묘라 했는데, 원래 막부가 임명한 오와리 다이묘는 시바 씨였으나 동쪽 이웃 세력인 이마가와 씨의 거듭된 침공으로 힘을 잃고 시바씨의 신하이자 슈고 대리였던 오다씨들이 실권을 잡은 상태였다. 이들이 본가인 오다 야마토노카미(織田大和守家) 집안이다.

나. 카리스마 리더십

중세 일본의 전국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천하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오다 노부나가는 독단적인 카리스마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리더의 독단적인 행동은 때로 위험할 수 있지만, 준비된 독단성은 엄청난 효율성을 보이기

30) 당시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오다 노부나가를 “이나 부처, 사후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교도이다. 스스로 서찰에서 제육천마왕이라고 칭했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도 한다. 노부나가 리더십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³¹⁾

첫째, 부하들에 대한 철저한 심리파악과 이를 활용한 치밀한 전략수립이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마가와 요시모토와 싸운 ‘오케하자마’ 전투를 앞두고 민간신앙을 믿지는 않았지만, 부하 대부분이 이를 믿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아쓰타 신궁을 참배하고, 마치 신의 계시처럼 가장하여 하얀 비둘기를 날려 보내고, 갑옷이 부딪치는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전투를 앞둔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오다 노부나가는 민간신앙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부하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했던 것이다.

둘째, 왕성한 호기심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당시 유럽은 대항해시대였으므로, 그 영향이 일본에도 서서히 미치고 있었다. 유럽의 새로운 지식에 대한 노부나가의 호기심은 그칠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의 방에 지구의와 세계지도를 두고 있었으며, 망원경과 시계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당시 예수회 소속 선교사인 올간티노가³²⁾ 아즈치성을 찾아오자, 노부나가는 즉시 지구를 가지고 오게 해서 올간티노에게 질문을 했다. “네가 일본으로 온 여정을 이 지구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아라.” 그러자 올간티노는 자세히 설명했고, 노부나가는 이를 정확하게 이해했다. 이는 그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는 의미이다. 당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지식층에서조차 믿지 않았다. 중국의 학설에 의해서 지구는 평면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은 그의 두뇌가 상당히 지적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셋째, 군사 전문성³³⁾ 추구이다. 노부나가는 군사를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31) 이정환 역, 도몬 휴이지 저, 『오다노부나가의 카리스마 경영』 (서울: 경영정신, 2000)의 주요 내용 요약

32) 1549년 예수회 소속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또는 하비에르, 1506~1552년)을 통해 일본에 정식으로 기독교가 전래되어 온 것은 일본 기독교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심한 탄압과 일본선교 실패역사의 시작이었다. 올간티노(Padre Orantino Hnecchi-Soldo) 등 헌신적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초기에는 기독교가 부흥해 70여 년 후에 기독교가 금지될 때까지 80만 명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였다. 당시 일본 인구가 3000만명(일부 자료는 1,500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로 볼 수 있다.

33) 군 전문화는 일반적인 군사분야 혁신 뿐만아니라, 군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

정확한 검지(檢地, 토지조사)를 통해서 농촌의 생산력을 높인 다음, 잉여 노동력을 전문적인 병사로 만들고자 하였다. 병사들이 자신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전사가 탄생하고, 새로운 무기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문화된 군대 덕분에 나가시노 전투³⁴)에서 노부나가는 3,000명의 소총 부대를 1,000명씩 한 조로 나누어 교대로 발사하게 하여, 재장전의 시간차를 없애는 삼단 발사 전법을 구사하여 다케다군의 기마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다.

넷째, 적재적소의 인재활용이다. 노부나가는 엄하고 비정했으나, 부하들이 미워하거나 기피하지는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유능한 인재들이 노부나가를 따랐다. 아케치 미쓰히데의 경우, 최초에는 미노의 사이토 도산³⁵)에게서 등을 돌리고 노부나가를 위해 일하였으나, 마지막에는 노부나가도 배신했었다. 노부나가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유능함을 각별하게 인정하였다. 그는 짚신 장수였던 히데요시를 다키기부교(장작관리 담당자), 후신부교(건축이나 토목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 사교부교(작업을 관리하는 감독)으로 승진시켰으며, 마지막에는 한성의 성주로 임명하였다. 노부나가는 히데요시가 장작관리로 근무할 때, 성의 장작비용을 1/3로 줄였고 무너진 기요스 성벽을 수리하는 데 20일 이상이 걸리는 것을 3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여 히데요시를 성주로 발탁하였다. 히데요시는 장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산을 찾아가서 벌목할 나무의 수량을 확인하여 중간 도매상이 비용을 부풀리지 못하게 했으며, 성 수리 공사에는 인부들을 10개 조로 나누어 각각 담당지역을 맡기고 할당량을 완성했을 경우 즉시 돈을 지급 받고 휴식을 할 수 있다고 상호경쟁을 시켜서 조기에 성수리를 마무리했던 것이다.³⁶)

다섯째, 정보에 기초한 상황판단이다.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시대 무장 중에서 가장 결단이 빠른 편이었다. 그가 정보를 중시한 예를 들어보면, 오케하자마 전

34) 덴쇼 3년 5월 21일(1575년 6월 29일), 미카와 북쪽의 나가시노 성(현재 아이치현 신시로 시 나가시노)을 둘러싼 다케다 카즈요리의 1만 5천과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3만 8천의 군사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 연합군이 대승하였다. 이 전투의 본격적인 결전 장소가 성 앞의 벌판이었던 시타라가하라(設楽原, 設楽ヶ原)였기 때문에, '나가시노 시타라가하라 전투(長篠設楽原の戦い)'라고도 부른다.

35) 별명, '미노의 살모사', 노부나가 장인

36) 이는 공사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야리끼리'에 해당. 속칭 돈 내기로, 그날 정해진 할당량을 채웠을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일을 끝내는 것을 가리킴.

투에서의 기습작전을 들 수 있다.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방 호족인 야나다 마사쓰나가 오다 노부나가의 적인 이마가와 군의 본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비록 예측이기는 했지만, 그의 정보는 상당히 정확했기 때문에 노부나가 군은 기습을 통하여 이마가와 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노부나가는 전투에 대한 논공행상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야나다 마사쓰나를 제1 공훈자로 인정하였다. 이는 노부나가가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명한 사례이다.

2.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리더십

가. 생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덴분 6년 음력 2월 6일(1537년 3월 17일)~ 게이초 3년 음력 8월 18일(1598년 9월 18일))는 전국시대부터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 활약했던 무장 다이묘이다.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전국시대 3대 명장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가신(家臣) 가토 기요마사의 어머니인 이토(伊藤)는 히데요시의 6촌 여동생이다. 히데요시는 오와리국 아이치군 나카무라(中村)에서 농민 출신의 아버지 기노시타 야에몬과 어머니 나카(なか) 사이에서 태어났다.

오다 노부나가를 섬겼으며 오다 가문 안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가 혼노지의 변으로 죽자 주고쿠에서 대군을 이끌고 교토로 돌아와 야마자키 전투에서 역신 아케치 미쓰히데를 격파하고, 노부나가를 대신해 그의 사업을 계승받았다. 이후 오사카성을 쌓았으며 관백(関白) 태정대신(太政大臣)에 임명되었다. 조정으로부터 도요토미 성³⁷⁾을 하사받아 일본을 통일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태합검지(太閤檢地)³⁸⁾와 가타나가리(刀狩)³⁹⁾라는 정책을 시행하여 일본 국내를 안정시켰으나,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과오도 범하였다. 히데요시는 임진왜란 중 조카 관백 도요토미 히데쓰구를 죽이고 후계를 아들 히데요리에게 주었으나, 히데요시도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을 맞

37) 히데요시는 원래 하시바(羽柴) 성을 사용하다가 도요토미(豊臣) 성을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음.

38)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에서 행한 전답의 측량 및 수확량 조사 사업

39) 백성의 대도권(帶刀權,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권리)을 박탈하는 병농분리정책

이하였다. 이후 히데요리의 보좌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필두로 한 고다이로에게 위임되었다.

히데요시는 신분이 굉장히 미천했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다른 다이묘들에 의해 수많은 무시를 당하였으며, 일본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조차도 쇼군에 취임하지 못하고 태합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었다.⁴⁰⁾

나. 소탈한 서민적 리더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미천한 신분에서 어렵게 출발하여 성공적으로 조직을 장악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어릴 적 별명은 생김새가 원숭이와 비슷하다 하여 ‘사루(원숭이)’였으나, ‘무슨 일이든 윗사람이 명령한 기한보다 이른 시일 안에 마친다’, ‘항상 윗사람이 기대한 이상의 성과를 낸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도 한 적이 없는 방법으로 일을 완성한다.’라는 3가지 업무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감으로써 조직 내에서 발군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히데요시의 대표적인 리더십 특징은 다음과 같다.⁴¹⁾

첫째, 개방적 감정의 소유자였다. 히데요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개방적이고 밝은 성격이었으며, 아무리 불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찾았다 싶으면 그 사람이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침을 흘릴 정도로 기뻐했다고 한다.

둘째,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지도자였다. 히데요시는 부하를 칭찬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곧바로 칭찬했는데, 부하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로바로 칭찬해주고 가능한 한 솔직하게 표현하

40) 당시 막부의 정이대장군은 **미타모토(源)**씨의 조상을 가진 집안만이 맡을 수 있다고 인식되어 있었다.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세이와 겐지(淸和 源氏)라는 분가 출신이었고,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겐지였다. 헤이안 시대 최상위 귀족들의 성씨인 4대 본성 '겐페이토키즈(源平藤橘)'를 살펴보면, 미나모토(源)씨, 타이라(平)씨, 타치바나(橘)씨가 한문으로 단성이고, 후지와라(藤原)씨도 등(藤)씨(예시: 등씨가전)로 축약되어 불리움.

41) 이정환 역, 도몬 휴이지 저, 『적을 경영하라』 (서울: 경영정신, 2001)의 주요 내용 요약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히데요시가 부하를 대할 때는, ① 누구나 나뉠의 훌륭한 재능이 있다. ②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관심을 두면 자기가 못하는 일도 잘하려는 의욕을 갖는다는 3가지 기본 시각을 견지하고 부하의 말을 경청하고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실시하여 부하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지도하였다.

셋째, 부하도 상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전국시대의 주종관계는 단순히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다. 각자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나라, 한 성의 주군이 되고 싶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군을 선택하는 잣대도 매우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주군이 단순히 자신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섬길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주군의 격적인 면과도 관련이 있었다. 히데요시의 주종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주군이 부하를 둘 때, 1년을 부려보아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해야 한다. 가신이 주군을 섬길 때, 3년을 일해보아 가능성이 없는 주군이라면 버려야 한다. 이것이 법이다.”라는 경험담으로 집약할 수 있다. 히데요시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다는 나뉠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넷째, 부하들에게 가식적인 충성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부하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하루는 히데요시가 봄이 되었으니 조만간 죽순을 캐러 가겠다고 하면서 안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에게도 채집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제안하였다. 부하들은 심사숙고하여 히데요시가 죽순을 캐러 가기 전날 밤에 산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죽순을 심어놓아서 산 어디를 가도 죽순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당일 히데요시는 많은 여자를 이끌고 산으로 갔고 잠시 후 여자들의 환호성이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그녀들이 밭길을 옮기는 곳마다 죽순이 있었으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뽑혔다. 여자들은 사전에 부하들이 죽순을 심어놓은 사실을 몰랐다. 히데요시는 성으로 복귀한 뒤 동행했던 부하들을 불러, “고생 많았다.” “그런데 그 산에 그렇게 많은 죽순이 자랄 리가 없어. 앞으로는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하고 당부하고 나무라지 않았다. 이는 히데요시가 가식을 허용하지 않는 소탈한 면모이자, 부하들의 체

면을 살려주는 행위였던 것이다.

다섯째, 전쟁 이후 평화로울 때 발휘해야 하는 리더십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여 결국 몰락을 자초했다는 사실이다. 피비린내 나는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가야흐로 전례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신들과 일반 무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없어지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점차 상실됨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갈등을 초래하였다. 이와같은 가신과 무사들의 불만을 민생, 경제, 대외 교류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였으나, 히데요시는 이를 대외진출을 통한 불만해소라는 과도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하였다. 이것이 바로 ‘문록년에 있었던 대정벌(文祿の役)’, 즉 ‘임진왜란’이다. 히데요시는 대정벌 과정에서 출전 군사들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한 다이묘들의 압력을 받다 지병으로 죽음을 맞이하였고 도요토미 가문도 불행한 종말을 맞았다.

3.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리더십

가. 생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 家康, 덴분 11년 음력 12월 26일(율리우스력: 1543년 1월 31일, 그레고리력: 1543년 2월 10일)~ 겐나 2년 음력 4월 17일(그레고리력: 1616년 6월 1일))는 센고쿠 시대부터 에도 시대 초기의 무장이자 센고쿠 다이묘이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함께 3대 명장으로 가계는 미카와의 고쿠진 마쓰다이라씨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이후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동군을 지휘하였으며, 승전 이후 막부를 개창하여 첫 쇼군(재임: 1603년~ 1605년)이 되었다. 1605년 3남 히데타다에게 쇼군 직을 물려준 다음에도 오고쇼의 자격으로 슌푸에 머무르며 정치에 참여하였다. 사후에는 닛코 동조궁에 묻혔으며, 동조대권현(東照大權現)이라는 시호를 얻었다.

1603년 3월 24일, 이에야스는 세이이타이쇼군에 임명되었으며, 후시미 성에서 고요제이 천황의 선지(宣旨)를 받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에야스는 무로마치 막부 이래 여러 권력자들이 교토에 본거지를 둔 것과는 달리 자신의 본거지인 에도에 막부를 개창하였다. 그 후 이에야스는 1604년부터 에도성을 대대적으로 증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에도성의 증축을 위해 이에야스는 도도 다카토라를 등용하여 설계를 맡겼

고, 후쿠시마 마사노리와 가토 기요마사를 비롯한 도자마 다이묘 28개 가문에 공사를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공사를 지원하도록 명령을 받은 도자마 다이묘들은 1,000석 당 1명의 인부를 제공해야만 했다. 또한, 간토 평야에는 축성에 알맞은 석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즈 반도에서 채석한 석재를 배로 수송해야 했는데, 도자마 다이묘들이 10만석 당 100명이 들 수 있는 석재를 120개 준비하도록 하는 식으로 충당하였다. 이처럼 공사는 도자마 다이묘들의 막대한 비용 지출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3대 쇼군인 이에미쓰가 집권하던 시기인 1636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러한 부역 부담을 통해 이에야스는 다이묘를 손쉽게 통제하였으며, 에도성은 260년간 도쿠가와 쇼군의 거성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야스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기독교 전교활동에 대한 강경한 탄압 정책을 전개하였다. 기독교를 금지하는 금교령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후반에 히데요시에 의해 이미 발표되었지만, 이에야스 시대에도 예수회를 비롯한 외국의 선교사들이 계속 찾아왔다. 이에야스도 초기에는 해외무역의 촉진을 위해 외국인들을 지배체제로 편입시키고 전교활동도 묵인하였다. 그러나 일부다처제의 부인, 할복에 대한 금지, 하느님 이외의 신들에 대한 숭배 금지 등 기독교적 교리는 일본 토속의 다신교인 신도와 의 갈등을 촉발하여 막부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이에야스는 오카모토 다이하치의 뇌물 사건 이후 도요토미 추종 세력의 잔당에 기독교도가 많다는 것을 명분으로 선교사와 신자들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야스는 마쓰라의 센류에 제시된 시에서 묘사된 것처럼 “인내의 귀재”로 평가받는다. 이에야스는 어린 시절에 부친을 여의고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겪었으며, 계속 복종을 강요당해왔다. 이에야스는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 히데요시에게 철저히 복종하였으며, 임진왜란 도중에도 자신의 영지를 지키며 신중하게 처신하였다. 이와 같은 이에야스의 인내의 삶은 일본에서 여러 소설과 책, 드라마, 영화, 연극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사람들은 이에야스를 ‘일본의 10걸’로 선정하면서 존경하고 있다. 반면에 에도 시대 서민들은 이에야스를 천하 통일의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살쟁이 영감’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등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야스는 학문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으며, 의술에도 능하여 본인 스스로

주치의를 자처하여 온갖 처방을 내렸으며, 무예 또한 시즈가타케의 칠본창을 이길 정도로 출중하였다. 이에야스는 일본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었으나 메이지 유신에 가담한 인물들이 조선 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온갖 음해와 왜곡으로 폄훼시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당시 전쟁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병력을 단 한 명도 파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을 침략하려는 인물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 내에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훌륭한 국가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나. 인간적 리더십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함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배양된 지혜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역경은 이에야스를 천하인(天下人)으로 끌어 올린 원동력이 되었으며, 나아가 최종 승자의 조건이 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대표적인 리더십 특징은 다음과 같다.⁴²⁾

첫째, 상관과 부하와의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상관이 귀에 거슬리는 충언⁴³⁾을 순순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말은 쉬워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충언은 단순히 듣는 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말하는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이에야스는 “주군에게 충언하는 것은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갈파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사를 건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향해 달려들지 않는 한 선봉에 섰다는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충언은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말만 하는 것이니까 충언을 하는 쪽이 전쟁에서 선봉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충언의 어려움을 5가지로 강조하였다. ① 충언이 성립되려면, 주군과 부하 사이에 양호한 인간관

42) 이정환 역, 도몬 휴이지 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간경영』 (서울 : 경영정신, 2000)의 주요 내용 요약

43) 충언(忠言)은 충고의 바른말을 함. 또는 그 말을 일컫는 말이다. 충언역이(忠言逆耳)는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림이란 뜻으로 사기의 「회남왕전(淮南王傳)」에 나오는 말이다.

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② 주군과 부하의 양호한 인간관계란, 무슨 말을 해도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탄탄한 신뢰관계를 가리킨다. ③ 이러한 신뢰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충언 자체의 의미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④ 그 이유는, 충언을 하는 자가 설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주군이 들을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충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을 경우에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⑤ 즉, 인간사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위와 같은 이에야스의 냉철한 사고방식은 어린 시절부터 오다 가문과 이마가와 가문의 인질이 되어 수많은 고생을 통해 사람을 보는 관찰력이 매우 날카로운 동시에 함부로 사람을 믿지 않는 습관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지도자의 마음가짐은 일반인들과 달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야스가 불모로 있던 시절, 이에야스는 가난한 가신들이 굶주리며 마련해 보내준 옷을 입고, 셋사이 선사의 도움으로 대장훈련을 받았다. 44) 셋사이 선사는 어린 이에야스에게 대장의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너는 대장이 되고 싶으냐? 부하는 마음이 편하다. 목숨도 입도 주인에게 맡기면 된다. 그러나 대장은 그럴 수 없다. 무술연마는 물론 학문을 닦아야 하고, 예의도 지켜야 한다. 좋은 부하를 가지려면 내 식사를 줄이더라도 부하는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된다. 맛있는 것을 먹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부하나 생각하는 일, 대장은 아지랑이(은썩)을 먹고도 통통하게 살이찌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얼굴은 싱글벙글 웃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셋사이 선사의 가르침과 실천은 이에야스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으며,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어 혼란한 일본을 통일하고, 에도 막부를 열게 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셋째,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평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였다. 히데요시를 제압하고 천하를 장악하자, 모든 영주들이 도쿠가와가 있는 성으로 인사를 왔는데 마당을 걷고 있던 이에야스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자 “잠깐 실례하겠소.” 하고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이에야스의 옆구리에는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런데 손을 씻는데, 그

44) 박재희 역, 아마오카 소하치 저, 『대망1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울 : 동서문화사, 2017), p.12.

종이가 떨어지면서 바람에 날아갔다. 그러자 이에야스는 맨발인 채로 마당으로 뛰어 내려와 허공에서 춤을 추는 종이를 붙잡으려 했다. 나무 사이에서 이와 같은 광경을 지켜보던 영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나비를 쫓듯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종이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이에야스의 모습에 영주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일부 영주들은 “소문대로 구두쇠야”라며 빈정대기까지 하였다. 마침내 종이를 붙잡은 이에야스는 그 종이로 손을 닦더니 영주들에게 싱긋 웃어 보이며 “나는 이렇게 해서 천하를 손에 넣었소.”라고 말하였다. 영주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이에야스의 말속에는 너희들이 나를 비웃을지 몰라도 결국은 내 부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전장에서의 주도권 장악 중요성이다. 에도 막부의 서막을 여는 결정적인 전투인 세키가하라 전투에 앞서 이에야스는 전장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싸움에도 확실히 음지와 양지의 두 면이 있다. 일단 공격받는 쪽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 수동적으로 되어 음울한 기운이 전군을 뒤덮지만, 공격하는 쪽이 되면, 많은 양기가 양기를 불러 말단 졸개에까지 활기가 미친다”고 강조하였다.⁴⁵⁾ 이와 같은 지휘방침에 따라 다나카 요시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등의 장수들이 일제히 도하하여 미쓰나리 군을 격멸하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도요토미 정권이 몰락하고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다.

다섯째,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다. 이에야스는 가신들이 오사카에 있는 히데요리 측을 설득⁴⁶⁾하지 못하여 오사카성을 함락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아끼는 가신 중의 한 명인 혼다 마사노부에게 “무슨 일이든 첫째 안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이들 생각이야. 첫째 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째 안, 둘째 안이 안되면 셋째 안.....어른의 생각이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다.”⁴⁷⁾라고 독려했다. 결과적으로 오사카성

45) 박재희 역, 야마오카 소하치 저, 『대망9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울 : 동서문화사, 2017), p.48.

46) 히데요시 아들 히데요리(2대 쇼군 히데타다 사위)에게 오사카성을 잠시 비우고, 이에야스가 준비한 성에서 물러나 있으면, 정국을 안정시킨 이후, 히데요리를 오사카성에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의하였으나 히데요리는 이러한 제의를 거절함, 히데요리는 오사카성 전투에 패하자 어머니(요도 마님)와 함께 자결하고 히데요시 가문도 막을 내림.

47) 박재희 역, 야마오카 소하치 저, 『대망10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울 : 동서문화사, 2017), p.199.

의 히데요리 군은 단순하게 대비에만 치중하였으나, 이에야스 군은 무력, 협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당시에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오사카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4. 3대 명장의 리더십 특성

일본의 전국시대 3대 명장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평가로 두견새에 비유한 그들의 성품을 들 수 있다.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두견새⁴⁸⁾는 죽여버리겠다(鳴かぬなら殺してしまへ時鳥),”고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게 해 보이겠다(鳴かずともなかして見せふ杜鵑),”고 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鳴かぬなら鳴まで待よ郭公),”고 하였다.⁴⁹⁾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두견새는 칼로 목을 치고, 히데요시는 어떻게 하든 두견새를 울게 만들며,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전국시대 3대 명장은 일본 역사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성격에 따라 상반된 평가도 존재한다. 먼저, 오다 노부나가는 혼란스러운 중세의 가치관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선구자와 같은 인물로서,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한 카리스마가 요구되었다. 노부나가의 리더십은 ① 부하들에 대한 철저한 심리파악과 이를 활용한 치밀한 전략으로 전승을 유도하고, ②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했으며, ③ 군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추구하고, ④ 적재적소에 인재를 활용하였으며, ⑤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모든 정세판단을 하고자 했다는 카리스마적 특징이 있다.

둘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한 출신이지만, 다양한 경험으로 터득한 전략에 기반해서 치밀하게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다.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48) 삿꾸기과의 새. 편 날개의 길이는 15~17cm, 꽂지는 12~15cm, 부리는 2cm 정도이며, 등은 회갈색이고 배는 어두운 푸른빛이 나는 흰색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음. 여름새로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휘파람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휘파람새가 새끼를 키우게 함.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 분포. 일부 소쩍새라고도 하나 소쩍새와는 다른 종류임(소쩍새는 올빼미과)

49) 에도 시대 문인, 마쓰우라 세이잔의 수필 『갑자야화』에 수록된 센류(짧지만 시사하는 내용이 때로는 해학적이며 사회의 이슈나, 고민 따위 등을 엿볼 수 있음).

것도 당시의 혼란했던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가문의 몰락과 한반도 침략의 역사적 사료가 되어 히데요시의 전략적 오판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리더십은 ① 개방적 감정의 소유자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으며, ② 칭찬에 인색하지 않음으로써 부하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였으며, ③ 부하도 상사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으로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유도하였고, ④ 가식적인 충성을 요구하지 않고, 부하들의 선의에 의한 잘못은 너그럽이 용서해 주는 등 배려를 베풀었으나, ⑤ 평화로운 시기에 발휘해야 할 리더십의 부족으로 결국은 가문의 몰락을 자초했다는 서민적 소탈함이 있는 설득적인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가나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어 놓은 기반을 도태로, 에도 막부를 창설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한 매우 지혜로운 인물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리더십은 ① 상관과 부하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항상 상관에게 믿음을 주는 부하가 되어야 하며, ② 지도자의 마음가짐은 일반인들과 달라야 하므로,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지 말고, 부단히 학문을 닦는 것이 필요하며, ③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항상 검소한 생활과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④ 전장에서는 주도권을 장악해야 승리할 수 있으며, ⑤ 계획의 수립과 실천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인간적인 화합과 소통의 특징이 있다.

일본 전국시대 3대 명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① 인간의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성과창출 유도, ② 상급자와 하급자의 신뢰감 형성 등이 들 수 있으며, 상이한 요인은 지적 호기심, 부하들에 대한 칭찬, 전장에서의 주도권 장악, 다양한 방안의 준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3대 명장의 리더십에서 상이한 요인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북한의 집요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제7차 핵실험 위협,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 증폭, 중국의 일대일로 등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한미군사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의 촉진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은 문화우월주의 시각과 문화다양성주의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역사적인 문제를 떠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본은 작년 12월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전략서에 북한 등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확보’를 명기하였다. 또한 일본은 미일군사일체화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2023년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66조원을 책정하여 반격능력의 조기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일본에 대한 균형감 있는 이해가 중요하다. 한·일 군사협력은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전국시대 3대 명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전국시대의 주요 사건 및 전사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시대 3대 명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군사적 측면에서 적용하면, ① 창설부대는 신속한 결단력이 필요한 오다 노부나가와 카리시마형 리더십이 적합하고, ②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진 조직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설득형 리더십이 필요하며, ③ 안정기에 접어든 조직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또한, 한미군사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일본과의 협력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양국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섭형 리더십이 요구된다. 따라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3대 명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의 강점을 벤치마킹하여 적시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일본 전국시대 3대 명장들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이해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균형된 시각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한국군의 리더십 발전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 : 2022.08.04]

[논문심사일 : 2022.08.22]

[논문수정일 : 2023.01.10]

[게재확정일 : 2023.03.06]

<참고문헌>

1. 단행본

- 구태훈. 『오다 노부나카』. 경기 용인 : 히스토리 메이커. 2018.
- 김시덕. 『일본인 이야기1. 2』. 서울 : (주) 메디치 미디어. 2020.
- 김소영. 『도요토미 히세요시』. 파주 : 21세기 북스. 2012.
- 김윤식, 오인석 역. 루스 베네딕트 저. 『국호와 칼』. 서울 : 을유문화사. 2019.
- 남정우 역. 스티븐 턴블 저. 『사무라이』. 일산 : 플래닛 미디어. 2010..
- 박선영 역. 야마모토 시치헤이 저. 『기다림의 칼』. 파주 : 21세기 북스. 2010.
- 박재희 역. 야마오카 소하치 저. 『대망 1. 9. 10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울 : 동서문화사. 2017.
- 박진우 역. 야스마루 요시요 저. 『근대천황상의 형성』. 서울 : 논형. 2008.
- 육군군사연구소. 『태평양 전쟁시 일본군의 지휘관과 참모』. 계룡 : 육군군사연구소. 2019.
- 이용수 역. 마에다 쓰토무 저. 『일본사상으로 본 일본의 본질』. 서울 : 논형. 2015.
- 이정환 역. 도몬 휴이지 저. 『오다 노부나카의 카리스마 경영』. 서울 : 경영정신. 2000.
- _____. 도몬 휴이지 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간경영』. 서울 : 경영정신. 2022.
- 이현욱 역. 스즈키 히로키 저. 『승장의 경영방법』. 서울 : 중앙북스 엘도라도. 2013.
- 전경아 역. 코스믹 출판 저. 『일본 전국시대 130년 지정학』. 일산 : 이다 미디어. 2022..
- 전선영 역. 조 지류소 편저. 『30개 도시로 읽는 일본사』. 서울 : 다산초당. 2021.
- 재미리.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찾아서』. 서울 : 부크크(bookk). 2022.
- 최종호 역. 쿠로노 타에루 저. 『참모본부의 육군대학교』. 서울 : 논형. 2015.
- 한성례 편역. 시오노 나나미 저. 『국가 이야기』. 서울 : 북스코리아. 2019.

2. 기타

<https://ko.wikipedia.org>

Abstract

Contemporary Implications for the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of Great Generals in Japan's Warring States Period

Park, SangJung Ph.D.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 UnHo Ph.D.

President, Doosik Research Institute

Recently, the importance of military cooperation with Japan as well as the ROK–U.S. military alliance 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threat of North Korea's 7th nuclear test and the amplification of the cross–strait conflict between China and Taiwan. In this context, it is meaningful to benchmark the leadership of the three great generals of the Japan's Warring States perio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to utilize it for the development of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in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OK and with Japan.

For this purpose, a cas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history of war on the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of the three great generals, Nobunaga Oda, Hideyoshi Toyotomi, and Ieyasu Tokugawa through literature study. As a result, for the development of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the leadership of Oda Nobunaga–type, which requires quick determination, is suitable for the founding unit. Organizations with a certain level of foundation need the leadership of Toyotomi Hideyoshi–type with common–sense persuasion. Organizations that have entered a period of stability is effective to apply Ieyasu–style leadership of

harmony and communication. In addition, military cooperation with Japan requires consilience-type leadership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leadership of the Japanese military according to various situ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and appropriately utilize the strengths of the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of the three major leaders: Nobunaga Oda, Hideyoshi Toyotomi, and Ieyasu Tokugawa.

Through this study, by analyzing the leadership of the three great generals of the Japan's Warring States period, it facilitates to understand the leadership of the Japanese military in a balanced way. It is also useful not on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leadership of the ROK military, but also for military cooperation among ROK, U.S. and Japan.

Key Words: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Japan's Warring States Period, Oda Nobunaga, Toyotomi Hideyoshi, Tokugawa Ieyasu

북관대첩의 군사사학적 교훈

이 영 석 *
조 영 숙 **

- I. 들어가며
 - II. 정문부의 생이와 함경도 상황
 - III. 북관 일대의 전투 경과와 군사적 함의
 - IV. 마무리
-

* 1저자, 군사학박사,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한국의병연구소소장 dalmalee@naver.com

** 교신저자, 원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충간공 보물제651 수석큐레이터 a1279321@hanmail.net

논문요약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끄는 2번대는 1592년 4월 18일 부산에 상륙한 후 과죽지세로 북상하여 같은 해 7월 17일 함경도에 이르자, 회령 출신인 국경인 등이 모반하여 왕자와 대신들을 사로잡아 성채로 항복하였다. 당시 함경도 백성들은 조정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반감이 컸기 때문에 왜적에 동조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왜적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자 정문부가 의병장이 되어 왜적을 크게 물리쳤는데 이것이 바로 북관대첩이다.

이 전투로 인해 왜적이 함경도에서 철수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전투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 내용 역시 소략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관대첩에 대한 구체적인 전투 경과를 살펴보면서, 정문부가 큰 전공(戰功)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관대첩의 군사적 교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지휘관의 중요성과 역할. ② 전략적 요충지 확보. ③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 운용. ④ 민·관·군의 통합성 등이다.

**주제어 : 북관대첩. 정문부, 가토 기요마사. 지휘관의 역할과 중요성.
민·관·군 통합성.**

I. 들어가며

왜적은 선발대 대장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 이후 고니시로 표기)는 1592년 4월 14일 부산성을, 15일에는 동래성을 포위하여 함락한 후 서울로 향했다. 이후 2번대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 이후 가토로 표기)는 4월 18일 22,000여 명의 병력으로 부산에 상륙했고, 5월 3일에는 한양에 무혈 입성한 뒤 5월 29일에는 개성까지 진출하였다. 6월 초순에는 부하를 이끌고 함경도로 향했으며, 6월 17일 함경도 안변에 도착하였다. 가토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해정창에서 함경도 북병사¹⁾ 한극함(韓克緘, ?~1953)이 이끄는 조선군을 패퇴시켰다. 이후 북진을 계속하여 7월 24일에는 회령에 이르렀다.

회령사관무진(會寧士官鎭撫) 국경인(鞠景仁, ?~1592)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임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와 일행을 사로잡았다. 한극함은 두 왕자와 그의 부인 그리고 재신(宰臣)²⁾들을 왜장인 가토에게 바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함경도 지역의 관민들도 왜적에게 투항하는 자가 급증하였다.³⁾

이때 정문부(鄭文孚, 1565~1624)가 지휘하는 의병의 활약으로 대승을 거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북관대첩이다. 정문부는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에 27세의 나이로 함경도 북평사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그곳에서 여진족의 침략과 약탈 행위를 막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왜적이 이곳에 이르자 정문부가 중심이 되어 회령향리 국세필(鞠世弼, ?~1592)과 국경인 및 명천현의 사노(寺奴)⁴⁾ 정말수(鄭末守, ?~?) 등의 반역자를 주살하고 함경도에 주둔한 왜적들과 북쪽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민심을 평정시키는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공적은 오늘날까지도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⁵⁾ 특히 군사적

1) 조선시대 함경도의 북병영에 둔 병마절도사. 함경도는 지대가 넓어 3병영으로 나누어, 함흥의 본병영은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하고, 북청의 남병영과 경성의 북병영에는 각각 중2품 무관의 병마절도사를 두었다.

2) 조선시대 재신의 별칭.

3) 김재천, “임진왜란 중 정문부와 윤탁연의 갈등 양상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6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0), p. 133.

4) 사찰의 일과 심부름을 하던 노비.

5) 학술논문; 김재천, “임진왜란 중 정문부와 윤탁연의 갈등 양상 연구,” 『동북아 문화연

측면의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필자는 첫째, 당시 선조와 조정 대신들이 정문부를 공적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 둘째, 정문부와 북관대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이유 셋째, 북관대첩이 갖는 군사사학적 교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문부의 생애와 함경도 상황

1. 정문부의 생애

북관대첩의 승리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승리의 주역인 의병장 정문부의 생애를 아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문부 아들인 장남 대락(大樂, ?~?)과 차남인 대영(大榮, ?~?) 형제간의 분급(分給)⁶⁾에 대한 화회성문(和會成文)⁷⁾에 기록된 내용이다.

호는 농포(農圃)이고 자는 자허이며 시호는 충의이다. 해주가 본관이다. 명종 20년 2월 십구일 서울 남부 반송방 남소동에서 출생했다. 20세인 갑신년(1584), 8월 생원 진사의 초시에 합격했으며 24세인 무자년(선조 21년, 1588)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였다. 다음 해(25세 때) 2월에 승정원 주서에 임명되고 승정원부정자를 거쳐 그해 10월 정자에 승진되고 홍문관 수찬에서 사간원정언 겸중학교수를 역임하였으며 26세인 경인년(선조 23, 1590)에는 지제교에 임명되었다. 다음 해 신묘년(선조 24, 1591)에 함경북도 병마

구』 제6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0); “임진왜란 중 정문부의 이원적 지위,” 『동북아시아문화연구』 제6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1). 유영봉, “農圃 鄭文孚의 詩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軸,” 『남명학연구』 제17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4). 이보아, “러·일 전쟁 시에 소실된 북관 대첩비 반환,”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2권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8). 최순희, “農圃 鄭文孚 子弟 和會成文 (崇禎二年己巳 十一月 十九日 同生中 和會成文),” 『문화재』 제17집 (국립문화재연구소, 1984). 학위논문: 장미경, “宣祖朝 전쟁 체험 한시 연구: 尹斗壽·鄭文孚·權諤·鄭希得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단행본; 안국승, 임란 의병장 충의공 정문부(의정부: 의정부 문화원, 1999). 이은상 역, 『국역 농포집』 (의정부: 해주 정씨 송산종친회, 1999). 이장희, 『鄭文孚의 義兵活動』 (서울: 집문장, 1978).

- 6) 자식들에게 상속하기 위해 각각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
- 7) 일반적으로 한자어로서의 개념과 분재(分財)의 개념으로 쓴다. 한자로서의 어의는 ‘통합’ 또는 ‘융합’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재산상속의 경우에는, 재주(財主)의 생전 상속이 아니라 사후의 상속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작성되는 상속 문서를 특히 ‘화회 문기’ 또는 ‘화회 문서’라고 칭한다. 본고에서는 후자에 속한다.

평사에 임명되었다. 선조 25년(1592)에 임진란을 만나 경성에서 유생이 이봉수(李鵬壽, 1545년~1593) 등과 의병을 일으켜 길주와 경성 등 관북지방 일대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30세인 갑오년(선조 27, 1594)에 영흥부사에 제수되었으며 다음해 을미년(1595)에는 은성부사에 전직되었다. 난후 기해년(선조 32, 1599)에는 장예원 판결사에서 다시 호조참의로, 다음해 경자년(선조 33, 1600)에는 용양위부호군에 전임되었다. 43세인 정미년(1607)에 장단부사에 임명되었으며 다음해 무신년(1608) 2월에는 선조 대왕께서 서거하셨다. 그해 다시 안주목사에 제수되었으며 광해 2년(1610)에는 사은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돌아와 동원부사로 전임되고 5세인 을묘년(광해 7, 1615) 부총관에서 병조참판으로 전직되었다. 당시 정국이 점차 혼란해지자 조정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던 중 59세 계해년(인조원년, 1623) 3월에 드디어 반정이 일어났다. 4월에 전주 부윤에 제수되었으며 다음해(인조 2년, 1624) 다시 부총관에 제수되었으나 신병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차에 10월에 무고로 옥에서 문초를 받다가 억울하게 세상을 뜨게 되었다. 후에 무죄함이 해명되었으며 좌찬성으로 추증되었다. 현종 때 복인들이 경성에 창렬사를 세워 제사하였다.⁸⁾

위의 사료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박홍구(朴弘壽, 1552~1624)의 역모 사건⁹⁾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다가 옥사한 사건이다. 죄목은 그가 지은 “초희왕”의 시가 이괄의 난과 관련 있다는 것인데,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楚雖三戶亦秦亡(초나라에 비록 세 집만 남아 있더라도 진나라는 망한다) 未必南公說得當(남공의 말이 꼭 맞지는 않는구나) 一入武關民望絕(한 번 무관에 들어가자 백성의 희망 끊겼는데) 孱孫何事又懷王(잔약한 후손은 무슨 일로 또 희왕이 되었는가?).

이 시의 내용은 역모를 암시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지나 정문부는 복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인과 남인은 왜 그를 역모 사건으로 엮었는지는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아무튼 북관대첩을 이룬 정문부의 공적을 무시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윤탁연(尹卓然, 1538~1594)과 정문부와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윤탁연이 임해군의 호종 임무를 1592년 4월 29일에 맡게 되었으며¹⁰⁾,

8) 최순희, “농포 정문부 자제 화회성문,” 『문화재』 제17집 (국립문화재연구소, 1984), pp. 1~2.

9) 1624년(인조 2) 11월 박홍구 등이 주동이 되어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을 왕으로 추대하려다 발각되어 실패한 사건.

10)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1592) 4월 29일 무오조.

함경감사 유영립(柳永立, 1537~1599)이 왜적에게 잡히자 후임으로 7월 10일부로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되고 이틀 후 도순찰사도 겸하게 되었다.¹¹⁾ 이날부터 윤탁연은 함경도의 군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7월 23일 두 왕자가 포로가 되었으며, 윤탁연은 왕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왜적의 동태와 함경도 민심을 살피던 중 한극함이 해정창에서 왜적에게 패하자 그는 병을 핑계로 별해보로 피신하였다.

한편 정문부는 해촌에서 몸을 피해 있으면서 의병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국세필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얼마가 지난 후 정문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논의를 거쳐 8월 1일에 의병장에 추대하였다. 정문부는 당시 종3품인 중성부사 정현룡(鄭見龍, 1574~1600)에게 의병장 직을 양보하려고 했으나 정현룡 본인이 의병장 직을 완강히 고사하고 다른 의병들도 이에 따라 정6품에 불과한 정문부가 의병장이 되었다.¹²⁾

의병은 통상 제대로 된 군기와 훈련 그리고 조직 체계를 갖추기 어려웠다. 특히 의병을 이끌 지략과 인품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데 정문부는 비록 하급 관리였지만, 신망이 높았기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군령권을 가진 윤탁연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어 정문부와 의 갈등이 비롯되었다. 즉 윤탁연의 입장에서는 하품관리에 불과한 자가 의병장이 되었다고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행태가 자신을 무시함은 물론 거만하다고까지 느꼈을 것이다.

정문부는 처음에 직급이 낮은 신분으로서 의병 대장이라 자칭하고 순찰사 윤탁연에게 관문을 보내었는데, 윤탁연이 그의 공을 꺼려하여 “평사는 일개 막관이니 마땅히 감사의 절제를 받아야 하고 서로 대등하게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꾸짖었으나 정문부는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부가 전후로 세운 전공을 탁연이 모두 사실과 반대로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문부의 부하가 수급을 가지고 관남(關南)¹³⁾을 지나면 그가 모두 빼앗아 자기 군사에게 주었다. 그리고 문부의 행동이 불계(不軌)¹⁴⁾스럽다고 조정에 아뢰었다. 이에 문부가 바로 군사를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군졸들이 모두 흩어지지 않고 그의 곁에 있었으며, 혹은 사잇길로 달려가서 행재소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는 의심을 하면서 둘을 무마

11)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1592) 7월 12일 기사조.

12) 김재천(2020), 앞의 논문, p.138.

13) 마천령 남쪽 지방. 곧 함경남도를 일컫는 말.

14) 법도에서 벗어 나다.

시켰다.¹⁵⁾

위의 사료에서 당시 윤탁연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지나 정문부가 의병장이 되고 계속된 승리와 이로 인한 고을 백성들의 절대적 신뢰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것은 다음의 치계를 통해 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당일 도착한 북도 평사 정문부의 첩보에 길주에 머물던 왜적이 밤중에 도주하였는데 삼위와 후원군이 추격하자 왜적은 밤낮없이 도망하여 어떤 때는 밥을 짓던 도중에 도망하기까지 하여 황망히 재를 넘어갔다. 재 동쪽까지 추격하자 사람과 말이 극도로 피곤하여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단천·이성 등 고을의 일로 주변 인가는 모두 분탕되었고, 도내의 왜적은 차차 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로 주변의 공사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현재 함흥 이북에는 남은 적이 없다...(하략).¹⁶⁾

위의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문부의 첩보라고 하면서 그의 공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정문부와 그가 지휘하는 의병들의 공적이 분명함에도 윤탁연은 관군인 삼위와 후원군의 공적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첩보 및 정보 보고가 쌓여서 결국 선조는 정문부의 공적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의 갈등과 공적에 대해 『선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홍여순(洪汝諄, 1547~1609)이 아뢰기를, “적이 길주에 둔치고 있으면서 사방으로 나가 분탕질하고 진으로 귀환하는 즈음에, 경성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켜 길주와 명천 경계의 장덕산 아래에 북병을 설치하고 추격하여 남김없이 다 섬멸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관북의 대첩으로서 큰 공로를 세운 것입니다. 이에 공론이 일어나 모든 사람의 말이 한결같았는데 그 군공이 지금까지 수년이 되도록 조그만 상조차 없었으니 이것이 장사들이 맥 풀리게 된 원인입니다. 대개 그때 정문부와 윤탁연이 서로 알력이 있어 화목하지 않았기에 정문부가 보고한 것을 윤탁연이 고쳐 마련하고 덮어 두었으니 상이 고르지 않은 이유가 대개 여기에서 연유합니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은 오로지 감사의 성심이 어떠 하느냐에 달려 있다. 관북은 진상(進上)이나 부역 등의 일이 없으니, 군사 교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수·살수 같은 기예를 힘써 가르치라. 양병(養兵)을 성취할 수 있다면 오랑캐를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 병력을 힘입을 수 있을 것

15) 『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1593) 1월 1일 병진조.

16) 『세종실록』 35권, 선조 26년(1593) 2월 23일 무신조.

이다.”¹⁷⁾

당시 조정에서도 정문부의 공적을 공평하게 조치하지 못했음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선조만 그렇지 않았다. 위의 사료에서처럼 선조는 말을 돌려서 정문부의 공적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 외에 또 다른 이유는 당시 관북 지역에 대한 조정의 선입관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인(府人)들이 조사의(趙思義, ? ~1402)를 따라 난리를 일으켰으므로, 군(郡)으로 강등시켰다.¹⁸⁾ ② 오랫동안 야인(野人)에게 점거(占據)되었었다.¹⁹⁾ ③ 알타리(斡朵里)²⁰⁾ 추장 통명거티무르(童猛哥帖木兒, ?~?)가 심처(深處)의 야인을 유인하여 침입해 와서 부사 한흥보(韓興寶, ? ~1410) 등을 살해하였다.²¹⁾ ④ 추장 통명거티무르(童猛哥帖木兒)가 땅이 비어 있는 것을 틈타서 들어와 살았다.²²⁾ ⑤ 야인(野人)들이 비어 있는 것을 틈타서 들어와 살면서 이름을 수주(愁州)라고 하였다.²³⁾ ⑥ 야인이 또한 그 땅의 빈 것을 틈타 들어와 살면서, 이름을 다온평(多溫平)이라 하였다.²⁴⁾ ⑦ 야인의 입구(入寇)²⁵⁾로 말미암아 드디어 포기하고 수어(守禦)²⁶⁾하지 않았다.²⁷⁾ ⑧ 함길도의 길주 사람인 전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 이시애(李施愛, ? ~1467)가 그 아우 이시합(李施合, ? ~1467)과 더불어 반역을 모의하고...(하략).²⁸⁾

위의 사료보다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뒤 유자광(柳子光, 1439~1512)이 이 임금에게 올린 글을 보면 당시 조정의 인식을 보다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17)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1595) 6월 15일 병진조.

18) 『세종실록』 155권, 지리지 함길도 영흥 대도호부.

19) 『세종실록』 155권, 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20)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이 살던 곳의 이름또는 여진족을 이르는 말.

21) 『세종실록』 155권, 지리지 함길도 경원 도호부.

22) 『세종실록』 155권, 지리지 함길도 회령 도호부.

23) 『세종실록』 155권, 지리지 함길도 종성 도호부.

24) 『세종실록』 155권, 지리지 함길도 온성 도호부.

25) 적군이나 도둑 떼가 쳐들어오다.

26) 적의 침입을 막다.

27) 『세종실록』 155권, 지리지 함길도 경흥 도호부.

28)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1467) 5월 16일 경진조.

이시애가 일개 초적(草賊)²⁹⁾으로서 비록 능히 길주의 수령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타 수십 고을의 백성들이 다투어 장리(長吏)³⁰⁾를 죽이고서도, 오히려 이시애를 따라서 반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함길도 한 도는 산천이 험하여 막히고 도리가 멀어서 조정의 풍화(風化)³¹⁾가 또한 혹 미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민속도 또 매우 어리석고 미혹하고, 본도의 경계가 야인과 연결하여 있는데, 현부(賢否)³²⁾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무사로써 수령을 삼으니, 백성들이 하루 아침에 이시애를 따라서 적도가 되었던 것도 심히 괴이하지 않습니다...(중략). 한 번 뜻에 불쾌한 일이 있으면 문득 형륙(刑戮)³³⁾을 더하여 그들을 보기를 흠이나 돌같이 하니, 백성들이 수령을 보는 것도 또한 원수와 같이 합니다. 이리하여 일개 적이 호령(號令)³⁴⁾을 도둑질하므로, 수십 고을의 백성들이 메아리처럼 응하여 평소의 원망을 퍼려고 하니, 어찌 정말 한결같이 적에게 잘못 유혹당하여 국가와 대적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이것은 적이 백성들의 원망에 따라서 도적의 계획을 행하여 조석 간에 구차스레 활동하는 까닭입니다.³⁵⁾

위의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경도는 북방 오랑캐의 끊임없는 침구(侵寇)³⁶⁾ 행위와 함께 아예 정착하는 상황이 많아 조정에서는 골치 아픈 곳이었다. 더구나 백성들이 사납고 역센 지역으로 반란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벼슬도 거의 주지 않는 등 엄연한 차별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곳 출신의 이시애와 국경인 등의 무리가 조정에 반감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두 왕자를 사로잡아 왜장인 가토에게 넘기자 선조는 더더욱 이 지역 출신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벼슬아치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둘째, 정문부와 북관대첩에 대한 연구 부족이다.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본다. 즉 선조의 선입관과 윤탁연과 정문부와의 알력 등은 북관대첩에 대한 관심 소홀로 이어졌고, 결국 올바른 공적을 평가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연유로 결국 북관대첩의 평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는 후세에 전하는 자료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북관대첩비로 인

29) 좀도둑.

30)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던 최하위 관리를 통합하여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

31) 풍속과 교화.

32) 현우(賢愚)과 같은 말로 어짙과 어리석음.

33) 죄인을 형벌로 죽이는 것.

34) 명령하는 소리.

35)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1467) 9월 4일 병인조.

36) 침략하여 노략질하는 행위.

해 정문부의 공적이 재조명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 북관대첩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 당시의 함경도 상황

전술한 바와 같이 가토가 이끄는 2번대는 1592년 4월 18일 부산에 도착하여 충주로 진격하였다. 신립(申瑬, 1546~1592)은 충주에서 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평지인 탄금대에 진을 치는 우를 범하여 결국 대패하고 달천강에 투신하고 말았다. 4월 29일 충주에서 합류한 고니시와 가토는 5월 3일 새벽 한성에 입성하였다.³⁷⁾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국에서는 왜적에 투항하는 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왜적은 투항한 자 중에서 지리에 밝은 조선인을 향도로 선발하여 빠르게 북진하였다. 이후 가토는 개성, 안변, 등을 거쳐 7월 17일 함경도에 이르렀다. 함경도 지역에서는 반란과 왜적에 투항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당시 함경도 주민들은 이시애의 난 이래 차별 대우를 받아 조정에 반감이 강했는데 함경도로 피란 온 임해군과 순화군의 두 왕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갖가지 약탈과 온갖 행패를 부리자 주민들은 결국 폭발하였다.

함경도 남병사 이혼(李渾, ?~1593)과 병마절도사 한극함은 왜적과 교전했으나 병력의 열세로 패배했다. 이후 이혼은 도망치다가 아들과 노비 등 20여 명이 춘연(春年, ?~?)과 박연문(朴延文, ?~?) 의해 죽임을 당했다.³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귀영(金貴榮, 1520~1593)과 황정옥(黃廷彧, 1532~1607) 등은 왕명을 받들어 왕자 임해군 이진(李璉, 1574~1609)과 순화군(順和君) 이보(李珪, ?~1607) 등을 모시고 회령에 이르렀으나 국경인 등이 모반하여 왕자와 대신들을 붙잡아 성채로 가토에게 항복하였다.³⁹⁾ 그리고 1년여 동안 가토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가 대신들과 함께 풀려났다.⁴⁰⁾ 그러자 황정옥을 대상으로 삼성(三省)⁴¹⁾이 모여 추국하였는데 그 공초(供招)⁴²⁾ 내용은 다음과 같다.

37)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1592) 5월 3일 임술조.

38)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1593) 2월 22일 정미조.

39)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1593) 3월 11일 병인조.

40)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1593) 8월 23일 갑진조.

41) 대상으로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의 관원들이 합동으로 죄인을 국문하는 것.

42)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

제가 당초 승여(乘輦)⁴³가 성을 떠나실 적에 황급히 어가(御駕)⁴⁴를 호종(扈從)⁴⁵하여 동파관에 도착한 뒤 들어가 알현하였더니, 왕자 보호의 임무를 주시고...(중략) 왕자를 모시고 회양부로 피란하였으나 적의 세력이 점점 가까이 오므로...(중략) 북도의 민심이 이미 배반한 줄도 모르고 다만 깊이 들어가면 혹시 난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서 회령으로 들어갔다 끝내 왕자가 적에게 잡히는 환란을 초래하였으니...(중략) 반민(叛民)⁴⁶이 왕자를 묶어 적에게 넘겨주자 적은 왕자를 얻고는 기화(奇貨)⁴⁷로 여겨 강화(講和)를 하고서야 돌려보내고자 하였습니다.⁴⁸

위의 사료를 통해 볼 때 당시의 조선 상황은 왕자까지 왜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 더구나 명천과 종성에서는 관가의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켜 관아를 점거하고 관원들을 붙잡아 왜적에게 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순변사 이영(李瑛, ?~1593)과 부사 문몽원(文夢輦, ?~?)은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국경인이 부하들을 보내 공격하자 겁을 먹고 달아났다.

가토는 자신에게 두 왕자를 넘긴 국경인을 판형(判刑)⁴⁹이란 벼슬을 주어 함경도를 통제하게 하였다.⁵⁰ 이리하여 함경도의 대다수 성과 마을을 별다른 희생 없이 한 달 만에 가토는 점령하였다. 그는 호랑이 사냥을 즐겨하고 일부 병력을 두만강 너머로 파견해 여진족과 교전하는 등 기세가 등등했다. 그러나 함경도의 민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왜적에게 적대적으로 변했다. 당시 해전에서 이순신의 활약과 의병들의 봉기, 조선의 도로가 위협하고 험하여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왜적은 물자가 부족해지자 함경도 주민을 상대로 양식과 의복 등을 빼앗는 등 약탈 행위가 빈발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백성들을 가차 없이 죽였다. 이에 함경도 주민들은 왜적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에 만호 고경민(高敬民, ?~?)이 행조에 와서 “중국 군사가 곧 오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이미 북계를 역적의 소굴로 판단하고 있으니, 왜적을 평정

43) 지체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

44) 임금의 수레.

45) 임금이 탄 수레인 거가(車駕)를 모시어 따른다.

46) 반란을 꾀하거나 반란에 참가한 백성.

47) 좋은 기회 또는 진기한 물건.

48)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1593) 8월 2일 계미조.

49) 왜적의 벼슬로 우리나라 병사(兵使)와 같다. 이는 조선시대 각 지방의 병마를 지휘하던 종이품의 무관 벼슬로 세조 12년(1466)에 병마도절제사의 직제를 개편한 것이다.

50) 『연려실기술』 15권 선조조 고사본말.

한 뒤에는 맨 먼저 토벌할 것이다”라고 하자 백성들이 서로 전하며 속으로 두려워했다. 지달원(池達源, ?~?)이 최배천(崔配天, ?~?) 등과 함께 몰래 교생들과 식견이 있는 무사를 모았다. 이들이 정문부가 있는 곳을 알고 토병과 장사 수백 명을 모았는데, 경성 사람인 전 만호 강문우(姜文佑, ?~?)가 이들을 이끌고 부성(府城)에 이르렀다.

Ⅲ. 관북 일대의 전투 경과와 군사사학적 교훈

1. 관북 일대의 전투 경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592년 7월에 정문부는 경원부사 오응태(吳應台, ?~?), 경흥부사 나정언(羅廷彦, ?~?) 수성찰방 최동망(崔東望, 1557~?), 귀양 중인 한백겸(韓百謙, 1552~1615)과 나덕명(羅德明, 1551~1610) 등이 함께 군사를 모집한 뒤 경성으로 진입하였으나, 사람들이 국세필의 위력에 겁을 먹고 모두 흩어졌다. 정문부는 막관(幕官)⁵¹⁾으로서 임진왜란 전 평안했을 때 형장(刑杖)⁵²⁾을 쓰지 않았고 또 항상 교생(校生)⁵³⁾들에게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변란이 일어난 뒤에 제자 몇 사람의 도움으로 위험 지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오히려 평사라고 하여 숨은 곳을 끝까지 찾으려 하였다. 몸을 숨긴다고 했지만 춘림(春林)과 폐야(蔽野)에서는 여러 번의 죽을 고비도 넘겼다.⁵⁴⁾

8월까지 정문부는 왜적의 눈을 피하면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용성의 무당 한인간(韓仁侃, ?~?)의 집에 이르렀다. 날이 저물어서 한인간의 집에 들어가자 그가 “아니 평사공(評事公)이 아니십니까?” 하고 묻기에 정문부는 “나는 한성 상인으로 난리를 만나 여기까지 왔는데 자네는 그 무슨 실없는 말을 하는가?” 하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 놀랐다고 한다. 이후 한인간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후하게 그를 모셨다. 추석이 되자 한인간이 조상 제사용으로 만든 음식을 장

51) 조선시대의 감사·유수·수사·병사를 보좌하던 관원.

52)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몽둥이.

53) 향교의 유생의 일부. 뒷날에 향교의 심부름꾼이 되었다.

54)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1592) 9월 1일 정사조.

군께 드리자, 정문부가 “예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한인간은 “우리 집 조상은 천한 사람이라 가령 살아 있더라도 평사가 내림했다면 진실로 이 음식을 먼저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고 하면서 그를 극진히 섬겼다.⁵⁵⁾

며칠 후 최배천과 지달원 등을 만나 경성 어랑리 이봉수(李鵬壽, 1545~1593)의 집에서 거병할 것을 도모하였다. 정문부는 이들을 통해 의병이 될 사람을 모집하였다. 장사 강문우가 제일 먼저 의병에 자원하였고, 종성부사 정현룡과 각 진의 수비대장 및 피난 온 조정의 관리 서성(徐滄, 1558~1631)과 이성길(李成吉, 1562~?) 등이 자원하였다. 이봉수는 몸소 양식을 지고 산길을 따라 셋길을 통해 길주로 오면서 왜적의 동태를 두 번에 걸쳐 상세히 정탐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병을 지휘할 대장을 선출할 때 정문부는 정현룡에게 의병대장을 맡을 것을 제의하자 그는 완강히 사양하였다. 그러면서 정현룡을 포함하여 사졸 모두가 정문부에게 의병대장이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에 정문부가 따랐고, 정현룡은 부장, 이봉수는 별장, 강문우는 척후장의 임무를 각각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사가 도합 3천여 명인데 그중에서 날래고 용맹스런 자를 돌기(突騎)⁵⁶⁾로 뽑아 선봉으로 삼았고 유경천(柳擎天, 1543~1594)이 지휘하였다.

길주의 왜적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 1백여 명을 보내어 성 서쪽에 와서 탐지하게 하였는데, 강문우 등이 성문을 열고 나가 공격하여 수십 명의 머리를 베니 남은 적들이 도망갔다.⁵⁷⁾

정문부가 의병장이 되기 전 이미 광재우(郭再祐, 1552~1617)가 1592년 4월 22일에 최초로 의병을 일으키자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여 왜적과 치열하게 싸웠다. 함경도도 마찬가지이었다. 특이한 점은 평안도는 왜적에 더하여 여진족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함경도의 혼란한 상황을 악용 야인들과 합세하여 자주 변방을 침략하자 국세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였다.

55) 이은상 역, 『국역 농포집』 (의정부 : 해주 정씨 송산종친회, 1999), pp.370~371.

56) 적의 진지로 돌진하는 기병.

57) 이형석, 『임진왜란사 상(上)』(서울: 신현실사, 1975), p.525.

이에 정문부는 최배천이 국세필과 친한 사이임을 알고 최배천을 은밀히 보냈다. 그는 거짓으로 항복하고 적당한 기회를 마련하여 국세필을 달래며, “정평사가 위엄과 인망이 있으니 그를 맞아들여 함께 뜻을 펼칠 것”을 권고한 다음 최배천은 진영으로 복귀하여 결과를 정문부에게 보고하였다. 정문부가 바로 격문을 보내 국세필을 효유(曉諭)⁵⁸⁾하였으나 그는 더더욱 정문부를 의심하고 대비하였다.

9월 16일에 정문부는 의병을 거느리고 경성으로 이동하였다. 왜적들이 장기간 주둔하고 있어서 조선의 군사 체계가 붕괴된 상태였지만, 좌수 이기수(李麒壽, ?~?)가 남은 장비와 무기를 모아 정비를 한 다음 무기고에 보관하고 의병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 활동과 왜적의 침입로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전국의 의병 활동과 왜적의 침입로



출처: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 (검색일: 2022.11.18.).

58) 알아듣도록 타이르다.

정문부는 먼저 국세필을 만나 위협과 유순한 말로 그를 꺾었다. 이에 국세필은 정문부에게 전향할 것을 약속하였고, 정문부는 영을 내려 관민들에게 국세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지난 죄는 묻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국세필로 하여금 전과 다름없이 군사를 지휘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반민에 가담하여 정문부를 죽이려고 하던 자까지 기용하여 비장(裨將)⁵⁹⁾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자 여러 장수들은 국세필을 참수하자고 건의하였으나 정문부는, “급히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고 하면서 상황을 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조치할 것임을 언지시 비쳤다.⁶⁰⁾

국세필 역시 의심을 풀지 않고 그의 심복을 시켜 의병의 동정을 살핌은 물론 정문부의 모든 문서 등을 훑쳐보게 하였다. 정문부는 이런 동태를 알고 장계를 보내면서 국세필의 일에는 부드러운 표현과 그가 훌륭하다는 내용으로 쓴 다음 그 초본을 다른 것과 같이 끼워 책상 위에 놓고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 국세필은 이 틈을 이용하여 정문부의 초본을 보고는 자기가 그동안 품었던 의심을 버렸다. 정문부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언행으로 의병들의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반복하여 이를 숙달시켰다. 그리고 의병 모집을 위해 정문부가 격서(檄書)⁶¹⁾를 돌리니 스스로 거병할 것을 약속하고 5천여 명이 몰렸으며, 9월 19일에 드디어 길주에 주둔 중인 왜적을 공격하였다. 공격 중에 갑자기 왜적의 지원병들이 오자 정문부는 강문우와 함께 협동전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 왜적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죽은 동료의 시체를 싣고 달아났다. 이 전투는 거병 후 첫 승리였으며, 이후부터 차츰 군세가 확장되어 갔다.⁶²⁾

9월 28일, 정문부는 정성을 다해 격문을 작성한 다음 각 고을에 두 번째로 보냈다. 격문을 본 사람들은 정문부의 뜻이 장하고 왜적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것에 고마워하며 의병 모집에 응하였다. 더구나 육진의 반민들을 방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정문부를 따를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보내왔다. 이러한

59) 조선시대에 감사·유수·병사·수사·견외 사신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 벼슬.

60) 이은상 역(1999), 앞의 책, pp. 370~371.

61) 격문을 적은 글. 군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발표하는 글.

62)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1593) 1월 11일 병인조.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다.

10월 14일, 정문부가 회령에 장계를 보내 국경인에게 항복하기를 권유하였으나, 그가 듣지 않고 오히려 길주의 적장과 협력하여 경성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에 회령 유생 오윤적(吳允迪, ?~?)과 도훈도 신세준(申世俊, ?~?) 등이 국경인과 그 부하 여섯 명의 목을 베어 머리를 군문에 걸었다. 명천 사람들도 합심하여 정말수를 참수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정문부는 오촌권관 구황(具滉, ?~1605)과 안원권관 강문우로 하여금 기병 60여 명을 비밀리에 선발하여 그를 잡으러 보냈다. 이들은 밤낮으로 말을 달려 명천에 있는 정말수를 급습하자 그는 사력을 다해 도망쳤다. 강문우가 그를 추격하여 마침내 죽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국세필이 반적(叛賊)⁶³⁾의 두목이 되었기에, 정문부는 그를 달래고 어르면서 전향을 유도하였다. 하루는 두 역졸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그는 그것이 국세필의 흉계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두 사졸을 참수하였다. 정문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엄명을 내리고 군사훈련을 밤늦게까지 매일 하였다.

하루는 정문부가 대장기를 앞에 세우고 남문 다락에 앉자, 국세필이 여러 장수와 함께 군례를 행하며 들어왔다. 이때 정문부는 강문우를 시켜 국세필을 체포하여 다락 아래로 이송시키는데, 문이 좁아 통과하기가 힘들자 판자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끌어냈다. 이 모습을 본 부하들이 창검을 빼 들고 덤비자 정문부는 문틈으로 활을 쏘아 그들을 사살하여 제압하였다. 이들을 완전히 제압한 다음 국세필 등 반적 13명을 끌어내어 의병과 마을 주민들 앞에서 목을 베었다. 그런 다음 큰 소리로 “맨 처음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이들뿐이니 이 밖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문책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군기는 더욱 확립되었으며 의병의 명성과 사기는 더욱 높아졌다.⁶⁴⁾

이후 정문부가 여러 장수들과 함께 경성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을 물리치기 위한 작전 회의가 있었다. 이때 정현룡이 “경성을 보전하면서 기회를 보자”고 하였다. 이에 정문부는, “이제 스스로 경성만을 지키는 것이 어찌 당초

63) 자기 나라를 배반한 역적.

64) 『연려실기술』 15권, 선조조 고사본말.

에 의병을 일으킨 뜻이겠소. 그러나 마땅히 백성과 상의하여 결정할 것이다”고 하였다. 다음날 일반 주민들을 모은 후에 가부를 물으니 대중들이 모두 정문부의 뜻을 따라 인근 지역에 있는 왜적을 물리치겠다고 하였다. 정문부는 동관첨사 이응성(李應星, 1574~1634)을 경성에 남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전원 출동하였다.

10월 21일, 드디어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가 얼마를 가다가 인근의 백성을 만났다. 그가 말하기를, “적세가 매우 성하여 싸우면 반드시 불리할 것이니 성을 지켜 스스로 보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에 정문부는 “네가 감히 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행군을 막으려는 것이냐?”고 참수한 다음 머리를 깃대에 매단 후 계속 행군하였다.⁶⁵⁾

이때의 왜적 상황은 적장인 아카이 나오마사(赤井直正, 1529~1578), 코도우 후미(巨道文, ?~?), 토세키 나후미(都關汝文, ?~?) 등이 길주에 진을 치고 웅거하고 있었다. 또한 목책 설치와 경계병을 배치하고 인근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하고 있었다. 정문부는 중위장 정현룡으로 하여금 군사 1천여 명을 주어 명천에 대기시키고, 이 중 정예군사 4백여 명을 선발하여 2개 제대로 편성하여 1개 제대는 옛 역참터에 배치시켰고 다른 1개 제대는 주요 지점에 매복시켰다. 좌위장인 고령 첨사 유경천은 길주군 병사 천여 명을 이끌고 해정에 주둔하면서 약탈하는 왜적들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우위장 경원부사 오웅태는 길주 양리와 서북보 토병, 본보 장졸들을 이끌고 보에 주둔하면서 정예병들을 뽑아 마을 입구에 매복시켜 나무하러 간 왜적들의 통행로를 끊게 했다. 또 종사관 원충서(元忠愨, 1559~?)에게 정예병 2백여 명을 쥐 길주 북쪽 30리 떨어진 아간창의 등산에 진을 치고 적정을 살피게 하였다.

30일이 되자 명천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이 길주에 있는 적과 합세하여 노략질하는 것을 포착하고 정문부가 휘하 장수들에 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가토가 대병을 보내 길주에 주둔하고 있던 적을 맞아 돌아간다 하므로 문부가 추격하여 백담 남쪽 옷나무 밑까지 갔다. 봉수가 적 하나를 쏘았더니 활시위 소리와 함께 거꾸러졌다. 봉수는 문부의 말 앞에 뛰어나오다가 홀연 탄환을

65) 이은상 역(1999), 앞의 책, p. 374.

맞아 죽고 허대성과 이희당(李希唐, ?~?)도 죽었다.⁶⁶⁾

정문부가 군사를 고참역으로 진출시키고 군사를 보내어 명천의 반적 정말수를 주벌하고 성을 수복하였다. 그러자 길주의 왜적이 마침내 사방으로 나와 분탕질을 쳤는데, 일지군(一枝軍)⁶⁷⁾은 명천의 해장을 노략질하였다. 정문부가 군사를 길주의 남촌에 진출시켜 돌아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데, 적병이 도로 길주성 동쪽 5리쯤 되는 장덕산 밑에 이르렀다. 정문부 군사가 먼저 고지를 점거하니 적이 다투어 오르면서 쳐다보고 총을 쏘므로 유경천이 돌기(突騎)를 몰고 내려가 적병을 크게 격파하였다. 고경민이 미리 군사를 서쪽 산 밑에 잠복시켰다가 즉각 포를 쏘며 차단하니 적이 퇴각하여 계곡으로 들어갔으므로 관군이 사방에서 모여 포위하였다.

이날 밤에 눈이 내리고 추위가 심하여 적병이 모두 얼어 쓰러져 싸우지 못하였다. 해가 뜰 무렵에 수색하며 공격하여 6백 명의 수급을 베었는데, 왜장은 성문을 닫고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정문부가 군사를 진출시켜 포위하니 적이 성에 올라 총을 쏘았다. 관군이 가까이 갈 수 없어 퇴각하여 사면으로 포위하고 그들의 뿔감 공급로를 끊었다. 왜적의 한 부대가 마천령 아래 영동관 책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임명촌을 불태우고 노략질하므로, 정문부가 군사를 돌려 공격하였다. 쌍포(雙捕)에서 싸워 이기자 왜적이 도망하므로 수급 60을 베었다. 이로부터 두 곳에 주둔한 적이 모두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으므로 정문부가 군사를 나누어 포위하였다. 이때의 전과는 왜적 장수 5명을 포함, 약 8백 20여 명을 죽였고, 말 1백 18 필과 많은 장비와 무기 등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던 남녀 모두를 구출하였다.⁶⁸⁾

그리고 산속으로 도망친 왜적을 제거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질러 그들을 태워 죽였다. 어렵게 살아남은 자들도 화살과 창 그리고 칼에 맞아 생긴 상처로 고생하다 많이 죽었다.⁶⁹⁾ 이 전투 결과 가토 기요마사는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철수를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전투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66) 『연려실기술』 15권 선조조 고사본말.

67) 한 무리의 군사.

68)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1593) 10월 1일 정해조.

69) 이은상 역(1999), 앞의 책, pp. 373~376.

것이 바로 북관대첩비이다.

2. 군사사학적 교훈

의병장 정문부가 의병장이 되어 싸운 ‘북관대첩’은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 전투가 없었거나 아니면 일본이 이겼다면 가토가 계속 주둔했을 것이다. 더구나 의주에 머무르고 있는 선조에까지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장은 더욱 확장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조선 백성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 전투로 인해 이러한 위협요인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당시 조정의 ‘북관대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애매하였다.

더구나 북관대첩이 누구의 공적인가에 대한 초보적인 논란부터 일다 보니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북관대첩을 통해 군사적 교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관의 역할과 중요성이다. 함경도에서의 북관대첩은 정문부라는 걸출한 지휘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특히 당시의 민심은 조정에 대해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다. 더구나 자기보다 직위가 높은 자도 있었지만 그의 인품과 통솔력에 의병장으로 선출되어 북관대첩을 이루었다. 그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天時不如地理 地理不如人和)⁷⁰⁾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큰 공적이 있음에도 선조는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 1666년에 되어서야 북관대첩에 대해 역사적 중요성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음이 『현종실록』에 전한다.

정문부를 우찬성에 추증하였다. 문부는 임진왜란 때 매우 큰 공을 세웠으나 끝내 역올하게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가여워하였다. 이에 앞서 함경 감사 민정중이 문부 및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포상하고 추증할 것을 계청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물으니, 모두 시행해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수찬 이단하도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의 아버 이식(李植, 1584~1647)이 일찍이 북평사로 있으면서 남·북도의 사실을 널리 채집하여 『북관지』를 지었는데, 문부가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한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70) 『맹자』 공손추장.

기록에 ‘그 당시 북도의 성읍이 다 반적에게 점거당하고 원융(元戎)⁷¹⁾ 이하가 거의 적에게 함락되었으나, 오직 문부만이 유생과 모의하여 의병을 일으켜, 먼저 경성을 회복하고 반적을 죽였다. 또 장사를 파견하여 여러 반읍(叛邑)의 괴수를 토벌하여 13명을 죽여 조리를 돌리고는 마침내 명천·길주의 경계에 나아가 적과 쌍개동에서 싸워 채차 이겼다. 재를 넘어 단천을 구원하여 가등가토과 싸웠는데, 전후 싸움에서 1천여 명을 죽였다. 관찰사 윤탁연이 문부의 명성과 공적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미워하여 사실과 반대로 조정에 아뢰고 번번이 군법으로 문부를 죽이려 하였으며, 문부의 장좌(將佐)⁷²⁾도 왕왕 내쫓기거나 매로 고문을 당하여 죽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군사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갔고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면서도 문부를 배반하지 않았다. 문부가 또 북으로 육진으로 가서 변방의 오랑캐를 복종시키고 반당을 찾아 주벌하였다. 관북이 마침내 평정된 것은 모두 그의 힘이었다. 문부는 공으로 회령 사람과 마찬가지로 6품으로 겨우 승진하였고, 당시 어려움을 함께 하였던 군사들은 하나도 고신(告身)⁷³⁾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억울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⁷⁴⁾

위의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문부가 죽은 지 42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그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있다. 정문부가 의병장으로 이룬 북관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지방에서 거병한 의병들이 왜적을 여러 차례 격파하였다. 선조 25년(1592) 9월 15일 의병장 정문부가 이끄는 부대가 경성을 탈환하고 11월 12일 길주성을 포위하기까지 함경북도에서 벌어진 전투를 말한다. 1593년 2월 16일 『선조실록』에 실린 정문부의 치계는 다음과 같다.

길주에 머무르고 있는 적은 한 번 패한 뒤에는 견고한 성안에 들어가서 머리를 움츠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중성부사 정현룡, 경원부사 오응태, 고령첨사 유경천은 각자가 거느린 소속 도합 3천여 명을 거느리고 두 차례 성을 포위하고 종일토록 접전했는데 왜적 4백여 명이 성머리에 벌여 서서 죽기로써 방어하니 철환과 화살과 피아간 다 같이 다쳐 형세가 쉽사리 함락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 밖 수백 보쯤 되는 곳 4~5개 처에 군사를 나누어 매복하고 밤낮으로 망을 보다가 적이 나오면 토벌하여 잡았습니다. 3위 장들은 군사를 영동으로 이동하여 먼저 성책(城柵)에 있는 적을 섬멸하고 다음에 성안의

71) 군사의 우두머리.

72) 고급 무관.

73) 조선 시대 관리로 임명된 자에게 수여한 증서.

74)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1666) 5월 23일 계묘조.

도적을 토벌하려고 했습니다. 마침 군사를 이동하던 날 영동의 왜적 2백여 명이 나와 바닷가의 민가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했습니다. 좌위장 유경천이 북병장 길주토병 김국신(金國信, ?~?)을 뽑아 보내 먼저 접전케 하는 한편, 대군에게 치보하여 3위가 일시에 내달아 돌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육진의 정병이 앞장서서 접전하니 왜적이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3위가 쏘아 죽인 자 및 성 중의 적으로 출몰할 때 잡아 죽인 것이 도합 1백여 급 된다고 합니다.⁷⁵⁾

위의 사료와 같이 정문부는 경성 지역의 전투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보고한다. 그가 활약한 덕으로 함경도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왜적은 철수를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정문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정탁이 아뢰기를, “정문부는 북도에 있을 때 맨손으로 큰 공을 세웠는데 공주에 있을 때는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장계가 있었습니다. 그사이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사람도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지난번에 비변사가 그를 그대로 재임시키고자 하였는데, 일이 중대한 관계로 그렇게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다. 북도의 일은 바로 정현룡 등의 공이요 정문부는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 것이라 한다.”⁷⁶⁾

위의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조는 함경도 지역에서 왜적과 싸워서 이긴 공은 정문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신들이 정문부의 공이 크다는 것을 재차 건의하지만 선조의 인식은 변함이 없다.

우부승지 우준민(禹俊民, 1553~?)이 비변사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회령 부사는 관방의 매우 중요한 지위일뿐더러 절도사가 되는 계계(階梯)⁷⁷⁾인 벼슬이므로, 신들이 극진히 가려서 천거하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요긴한 지위에 있는 자는 옮기기 어렵고 현재의 무신 중에서도 끝내 합당한 자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박종남(朴宗男, ?~1601)을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전일 관직에 있을 때 근신하다는 이름이 자못 있

75)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1593) 2월 16일 신축조.

76)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1595) 2월 20일 계해조.

77) 벼슬이 차차 올라가는 순서.

었으므로 의논하여 이 사람을 천거하거니와, 그를 시키지 않는다면 이광약(李光岳, 1557~1608)이 있을 뿐인데 오직 예재(睿裁)⁷⁸⁾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광약이 마땅한 사람인지 모르기는 하나 혹 회령에 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사람을 남방에 쓸 만하다면 또한 시킬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면 정문부가 마음 쓰는 것이 간사하고 말만 잘한다. 전에 북방에 있을 때 남의 참곡(斬穀)⁷⁹⁾을 빼앗아 제 공으로 만들어 숙여서 신보 하여 후한 벼슬을 받았고, 공주 목사가 되어서는 터무니없이 조세를 거둬들였다. 어떠한가? 어떤 사람은 정문부가 북도에서 이긴 것은 남 때문에 일을 이룬 것이고 본디 그의 지용이 아니라 하니, 또한 어떨는지 모르겠다. 다시 헤아려서 아뢰라.⁸⁰⁾

이처럼 선조는 정문부의 공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조의 이러한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문부는 왕과 조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또 싸웠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현재의 『지휘관 및 참모업무』 교범에도, 지휘관은 지휘 통제에 핵심으로 전투 지휘를 통해 작전을 이끌어 나간다. 지휘관은 평상시부터 부하와 인간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부대원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며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긍정적·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⁸¹⁾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전략적 요충지 확보이다. 의병장 정문부에 의한 함경도 지역 의병 전투는 하삼도의 의병 전투와는 차이가 있다. 하삼도 지역은 왜적의 식량 조달을 포함한 안정적인 병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함경도 지역은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그 이유는 왕조 국가는 왕이 항복하면 그 전쟁은 끝나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의 시대 상황은 더더욱 그러하였다. 이는 병자호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인조가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끝이 났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은 병참선이 신장되는 불리함을 알면서도 한성에 있는

78) 임금의 재가(裁可)를 높여 이르는 말.

79) 목을 베다.

80)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1596) 11월 19일 신해조.

81) 육군본부, 『지휘관 및 참모업무』 야전교범 0-1(계룡: 국군인쇄창, 2012), pp. 2-4~2-7.

선조를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진격했고, 선조가 의주로 파천하자 선조의 뒤를 계속 쫓았다. 함경도와 의주는 지근거리에 있었기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정문부가 가토를 물리침으로써 조정은 전쟁 지휘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왜적이 신장된 병참선을 무시하면서 진격해서 작전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는 전략적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왜적은 선조를 잡기 위한 최상의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관북 지역에서의 승리가 조선을 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셋째,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과 게릴라전이다. 정문부는 문관 출신이지만 병법에도 매우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문부가 치계한 것이 『선조실록』에 잘 기록되어 있다.

군사를 나누어 토벌하려고 정예한 기병 2백 명을 4대로 나누어, 1대장은 훈련정 구황, 2대장은 훈련침정 박은주, 3대장은 훈련관관 정원침(鄭元忱, ?~?), 4대장은 훈련관관 고경민이 각기 50명을 거느리고 이달 20일에 산길로 단천에 도착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4대의 군사를 성 밖 2리쯤 되는 지점에 숨기고 단천 군사 30명으로 하여금 성 밖 4리가량 되는 지점까지 진출하여 도전케 하니 성안에 머물던 적들은 여러 차례 승리한 것을 믿고 아무 거리낌 없이 2백여 명이 일시에 성을 나와 곧바로 진격해왔습니다. 단천 군사들이 패하는 체하면서 되돌아 달아날 즈음 피로한 말을 탄 두 병졸이 적에게 살해되자 적은 더욱 승승장구, 곧바로 잠복한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4대의 복병들이 일시에 내달아 전면을 막기도 하고 중간을 가르기도 하고, 혹은 후방을 끊기도 하면서 화살을 비 오듯 퍼붓자 왜적은 갑자기 튀어나온 기병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총통을 마구 쏘아대는데 모두가 헛방으로 맞지 않으니 도망가기에 겨를이 없어 감히 우리에게 덤비지 못했습니다. 추격하여 성 밑까지 이르자 거의 사살되고 겨우 30여 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태반은 화살에 맞아 입성했습니다. 대개 죽인 적의 수효는 적어도 백여 명은 되며, 싸우면서 간 거리는 20여 리나 됩니다.⁸²⁾

위의 사료에서처럼 정문부는 병법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다.

82)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1593) 2월 24일 기유조.

그는 의병의 장기인 계탈라전도 길주 지역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의 이러한 전술 구사는 『북관대첩비』 비문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평사 정문부는 문무의 재주는 있으나 군사가 없어 싸울 수 없으므로 몸을 빼어 산골에 숨어 있던 중 의병을 일으킨다는...(중략) 피로써 맹서하며 의병을 모집하여 1백여 명을 얻었다... 11월에 적을 가파리에서 만나 싸우려는데... 적들은 여러 번 이긴 끝이라 방비를 허술하게 하였다. 우리 군사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불의에 공격하여 기운을 얻어... 적이 패하여 달아났는데, 군사를 추격하여 그 장수 5명을 죽이고 목을 수없이 베었으며, 그 말과 무기들을 모조리 빼앗았다... 적이 임명 땅을 크게 침략하므로 정예한 기병들을 이끌고 습격했으며, 산에 기대어 복병했다가 적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협공하여 크게 깨뜨리고 또 수백 명의 목을 베고 마침내 그 배를 갈라 창자를 행길 가에 늘어놓자 군사의 형세가 크게 떨치고 적은 더욱 두려워하였다. 12월에 또 쌍포에서 싸웠는데 싸움이 한창 어울리자 편장이 철기를 끌고 가로 찌르기를 풍우 같이 빨리 하니 적이 세력을 잃어 맞서 보지도 못하고 모두 흩어져 달아나므로... 이듬해 정월에 단천에서 싸웠는데, 세 번 싸워 세 번 이기고 돌아와, 길주에 진을 치고 군사들을 쉬게 하자, 가토이 불리함을 알고 큰 군대를 보내어 길주의 적을 맞아 돌아오게 하므로 우리 군사들은 그 뒤를 쳐서 백탐에 이르러 크게 싸워 또 깨뜨렸으며... 적은 마침내 물러가 다시는 감히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였다.

이처럼 정문부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왜적에게 대승을 거두었으며, 이 전투로 왜적은 함경도 지역에서 철수하여 결국 남쪽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넷째, 민·관·군의 통합성을 이루었다. 정문부의 의병 활동 지역은 함경도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반민 성향이 강하고, 국경 지역이라 예로부터 이민족(異民族)이 많이 사는 혼성 집단이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조선 정부로부터 착취당하고 차별받던 계층이었다. 이런 성향의 주민들을 정문부는 규합하여 의병으로 모집한 후 왜적과 싸우고 결국 대승을 거두었다. 이는 반민 성향의 주민과 여진족의 위협이 계속되는 함경도 지역의 특수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민심을 결집한 결과이다.

육진(六鎭) 지역에 들어와서 살던 귀화한 여진족 즉 변방의 오랑캐는 물론이요, 두만강 건너편에 살면서 기회만 있으면 강을 건너와 침략을 일삼던 여진

족은 조선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국방 문제이었다. 조선은 나라를 건설하면서부터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시도와 함께 그들에게 시장을 개방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경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곳에 왜적이 침공하였다. 정문부는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반민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단결시켜 왜적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 내용은 “북관대첩비”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경진년에 최창대(崔昌大, 1669~1720)가 북평사가 되어 의병의 자손들과 함께 연고지를 방문하여, 사적을 자세히 얻어 개연히 제공의 기풍을 상상도 하고 또 이른바 임명과 쌍포 지역에 진을 치고 싸우던 자리를 거닐고 돌아보며 탄식하면서 떠나지 못하였다...(중략) 이 분들은 죽음을 걸고 외로운 군사를 이끌고서 억센 도적을 무찔러 우리나라의 발상한 옛 땅으로 하여금 마침내 오랑캐 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했으며, 변방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일어나 충의를 서로 권하게 된 것이 그 또한 누구의 힘이더냐?... (중략) 그것은 우리들의 뜻이기도 한데 하물며 공의 명령까지 있음이겠소 하며 마침내 돌을 다듬고 재물을 모으고 사람을 시켜 글을 청하건마는 나는 적임자가 아니므로 사양했더니 다시 와서 말하되 “이 일은 공이 실로 발의한 사람이니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일을 철폐하겠소 함으로, 나는 마침내 이의 사적을 서술하고 새긴다.⁸³⁾

북관대첩의 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문부는 함경도의 반민 성향에다 국경 지역이라 예로부터 이민족이 많이 살던 지역으로 단합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문부는 의병을 규합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정문부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고 대승을 거둔 내용을 비문에 새겨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하였다.

83) 북관대첩비 내용 중 일부.

IV. 마무리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북관대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군사사학적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 전투는 가토가 함경도에 침구(侵寇) 하자 국경인과 국세필 및 정말수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 피난 온 왕자들과 가족, 재신들을 사로잡아 성채로 가토에게 바치고 그의 수하가 되었다. 당시 함경도의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 행하는 부왜(附倭) 활동과도 많이 달랐으며, 특이하게도 현직의 하급자가 의병장이 되어 고위 관리를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계통의 역전 현상도 생겼다. 또한 이 지역은 조정에 반감이 강한 지역이었으나 정문부의 훌륭한 성품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의 공적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유는 율탁연과의 알력과 함경도가 반민(叛民) 의식이 강하다고 인식한 선조와 대신들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연유로 정문부와 북관대첩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관대첩의 군사사학적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관의 역할과 중요성이다. 함경도에서의 북관대첩은 정문부라는 걸출한 지휘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당시 함경도 지역의 민심은 많은 이민족과 이시애의 난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 조정에 반감이 강했는데 함경도로 피란 온 임해군과 순화군의 두 왕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많은 행패를 부리자 주민들은 결국 폭발하였고 반역자들이 이들을 사로잡아 가토에게 넘김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선조와 조정의 반감은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문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둘째, 전략적 요충지 확보이다. 함경도 지역에서의 승리는 하삼도에서의 승리와는 차이가 있다. 하삼도 지역은 왜적의 식량 조달을 포함한 안정적인 병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함경도 지역은 조선의 운명이 달린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 왕조 국가는 왕이 항복하면 그 전쟁은 끝이다. 이는 병자호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인 인조가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끝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승리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셋째,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과 게릴라전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비해 의병들이 전술적으로 앞선 것은 바로 매복과 게릴라전이다. 정문부 또한 매복과 게릴라전을 구사함으로써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넷째, 민·관·군의 통합성 달성이다. 당시 함경도 주민의 분열과 조정에 대한 배신감, 여진족의 활동, 왜적의 횡포와 부왜 활동, 왕자를 사로잡아 왜적에 바침은 물론 반역 행위는 선조와 대신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정문부의 술선수범함으로써 주민을 규합하고 통합하여 왜적을 무찌른 것은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귀중한 교훈이다. 향후 함경도 일대에서 벌어진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와 정문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 : 2022.12.01]

[논문심사일 : 2022.12.13]

[논문수정일 : 2022.12.30]

[게재확정일 : 2023.03.06]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1차 사료

『맹자』,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순자병법』, 『연려실기술』, 『현종실록』.

2. 국내 문헌

김재천, “임진왜란 중 정문부와 윤탁연의 갈등 양상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6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0)

김재천, “임진왜란 중 정문부의 이원적 지위,” 『동북아 문화연구』 제6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1).

안국승, 임란 의병장 충의공 정문부(의정부: 의정부 문화원, 1999)

유영봉, “農圃 鄭文孚의 詩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軸,” 『남명학연구』 제17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4)

육군본부, 『지휘관 및 참모업무』 야전교범 0-1(계룡: 국군인쇄창, 2012)

이보아, “러·일 전쟁 시에 소실된 북관 대첩비 반환,”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2권 (배재대학교 한국 시베리아센터, 2008)

이은상 역, 『국역 농포집』 (의정부: 해주 정씨 송산중친회, 1999)

이장희, 『鄭文孚의 義兵活動』 (서울: 집문장, 1978)

최순희, “農圃 鄭文孚 子弟 和會成文 (崇禎二年己巳 十一月 十九日 同生中 和會成文),” 『문화재』 제17집 (국립문화재연구소, 1984)

장미경, “宣祖朝 전쟁 체험 한시 연구: 尹斗壽·鄭文孚·權필·鄭希得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3. 기타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검색일: 2022.11.18).

북관대첩비문

Abstract

Military historical lessons from Battle of Bukgwan

1. Lee Youngseok

2. Jo Yeonsuk

Japanese 2nd Army, led by Kato Kiyomasa during Imjin Japanese Invasion, arrived at Busan on Apr. 18, 1592 and then moved north without any strong resistances and arrived at Hamgyeong-do on July 17 of the same year. At that time, Guk Gyeong-in from Hoeryeong revolted against the then-princes and high-ranking officials and turned them over to Japanese invaders along with fortresses. As the people living in Hamgyeong-do had a strong empathy against then-ruling classes, some of them had sympathized with the invading Japanese army. But as the Japanese army's repression got severe, Jeong Mun-bu assembled a righteous army from people and became a head of that army and defeated the Japanese army. This is called the Battle of Bukgwan.

This battle became a decisive contributor of making the Japanese Army retreat from Hamgyeong-do. But there have not been a lot of researches on the importance of this battle. In addition, even the existing researches have not detailed on the battle. Accordingly, this paper will check the detailed progress of the Battle of Bukgwan and, specifically, suggest why Jeong Mun-bu was not reasonably recognized of his accomplishment though he achieved a lot of military successes in the battles.

In addition, this research has resulted in the militaristic lessons of Battle of Bukgwan as follows: (1) Importance and role of

commanders, (2) Acquisition of strategic geographic points, (3) Use of ambush by using terrain features and (4) Cooperation between people, government and military.

Key words: Battle of Bukgwan, Jeong Mun-buy, Kato Kiyomasa, Role and importance of commander, Cooperation between people, government and military

저자소개(가나다순)

▶ 김원대

현재 한국평생교육협회 전문위원/교수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및 평생교육을 강의, 연구, 자문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HRD대학원에서 군기 한국군 교육훈련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대학원 박사과정 지도, 육군사관학교 교관,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적자원개발정책 담당, 한국국방연구원(KIDA) 및 국방전직교육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10여 편의 등재학술지를 포함한 다수의 국방관련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김학민

국방대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남북한 통일정책과 남북한 군사통합 등 국방정책 분야와 핵 대응 전략 및 전작권 전환 등 군사전략 및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 관련 연구를 통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선문대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사무총장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 문근형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서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 국제관계 석사학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논문은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연구”, “북한정세 급변시 주변국 개입가능성 연구”,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 추진 경과 소고”,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 가치 고찰”, “보훈정책 발전을 위한 재향군인회 역할과 발전 방안 연구”, “보훈단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 “제대군인 중심 보훈정책 발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 박상중

현재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로 국가안보, 국방개혁, 한미동맹, 국방우주, 적극행정 등을 강의하고 있고 국방부 정책기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치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천대학교에서 국방외교, 협력안보, 리더십개발, 조직관리, 전장리더십, 지상작전 등의 강의를 하였으며, 등재학술지 우수논문상을 7회와 '참 국방대인상(지성 부문)'을 수상하였다.

▶ 안운호

현재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초빙교수로 군사사, 전쟁법, 전쟁사, 무기체계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기업교육학회 및 세계지역학회 이사로 활동하였다.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는 합동상륙작전, 군사사 이해 등이 있으며, 주요 번역물로는 해병대 특수작전, 해병대 안보환경전망, 해병대 계획수립절차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우방국 합동교육 방문결과 소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운용 및 발전방향”, “주변국 상륙전력 간 군사협력 가능성 전망”, “합동강제진입작전 수행 및 전력발전방향”, “해병대 전법과 연계한 교리발전 방향” 등이 있다. 해군대학 우수교관, 합동군사대학교 최우수교관 상을 수상하였다.

▶ 이영석

충남대학교에서 군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논문심사위원 및 안보논단 집필진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한국의 병연구소 소장과 충무공 김시민 연구소 소장 등의 직책을 수행 중이며, 2015년부터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에 출강 중이다.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안보 함양을 위한 강의와 각종 학술지에 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 조연숙

군산재향군인회 고문, 한국전쟁맹방국용사 선양사업회, 충간공 보물 제 651호 박물관 수석 큐레이터를 담당하고 있다. 우석대학교 국방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제7공수여단 장병 인성 함양 자문위원, 원광대학교 한국예다학연구소 군장병인성교육 책임연구원, 공군 38전대 전통성년례 의례 담당, 예깊미술관 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군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을 포함하여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연구윤리규정

□ 목 적

향균학술지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 적용대상

향균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투고논문 및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

□ 연구자의 윤리의무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향균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함.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함.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함.

□ 부정행위 방지목적

이 규정은 향군학술지에 게재 및 게재신청 된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연구개발 과제 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함.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
-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당원구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행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음.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함.
-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적용.

□ 심사주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담당함.

□ 절 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함.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됨.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편집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연구 부정행위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제 재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음.

- 본 학술지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및 학술지 온라인판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연구 윤리규정 위반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논문의 집필자가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편집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재심위원회 구성

- 재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회의 구성 자격요건과 동일함.
- 재심위원은 최초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새로운 인원이어야 함.

□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및 공지의무

-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공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윤리소위는 이를 성실히 보장하여야 함.

논문투고 및 심사 / 집필요령

□ 논문 심사

1. 심사절차

- 가. E-mail 접수(korvass0201@naver.com) 또는
우편접수(우)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구축 후에는 시스템 활용
- 나. 논문 심사(3인) 의뢰 / 심사(2주)
 - * 제목 또는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 다. 논문심사 결과 접수 및 판정
- 라. 심사결과 투고자 통보
- 바. 수정논문은 1주 이내에 수정 제출 / 접수

2. 심사기준

- 가. 내용의 적절성 : 논문의 주제가 ① 외교 ② 국방 및 안보 ③ 통일정책 ④
향군 제도개선 분야 등에 관련된 주제
- 나. 내용의 창의성 :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
- 다. 전개의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
- 라. 향군 발전 및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의 내용은 향군의 제도개선 등에 기
여하거나 학문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
어야 함
- 마. 형식의 적절성 : 논문양식을 준수
- 바. 연구 방법의 적절성 : 논문은 연구주체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방법, 연
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타당성이 있어야 함.

□ 논문 투고

1. 논문 투고자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한다. 단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는 지도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동 연구자로서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는 ‘원고집필요령’을 따라야 하며, 논문주제는 외교, 국방/안보, 통일정책, 향군 제도개선 분야로 한정한다.
3. 투고논문 접수는 이 메일 혹은 출력물이 연구원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투고원고는 국문요약, 핵심단어,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논문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투고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6. 투고 논문은 연구원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7.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연구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8. 학술지의 발간횟수는 연 2회이며, 발간예정일은 4월 8일과 10월 8일 재향군인의 날로 하며 논문접수 마감일은 발행일 45일 전까지인 2월 25일과 8월 25일까지 수시접수 한다.

□ 확정 및 인쇄

1.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 이내의 저자 교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저자 논문은 편집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2.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자의 교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게재논문은 편집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약 20매)로 한다. 최대 150매(A4 약 25매)를 넘지 않는다.

2. 용지여백 기준

가. 용지여백(A4 기준) :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46mm	46mm	42.5mm	42.5mm	12.5mm	12.5mm	0mm

나. 본문 서체 : 글꼴 : 신명조 / 글자크기 12point(대제목 14point진하게, 중제목 12point 진하게) / 장평 100% / 자간 0% / 본문 글자크기 10.5point, 줄간격 160% / 첫줄 들여쓰기 10point

다. 각주 서체 : 신명조 / 글자크기 9point

3.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 1)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인용원을 각주에서 밝혀 준다.
-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인용원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나. 각주 작성요령

- 1)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등) : 이중격쇠 『』로 표기하고,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그 뒤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영문의 경우 first 및 second name(이니셜), last name 순서로 표기하고, 책 제목은 이탤릭으로 표기하며,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그 뒤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가)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서울 : 법문사, 1985), p. 120.

- 나)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1986), p. 12.
- 다) Baylis, John. 박창희(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156-157.
- 2) 논문 : 학술지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가) 안병준, “민족주의와 한반도,” 『국제정치논총』 제23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pp. 29-33.
- 나)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7, No1(1965), p. 627.
- 3) 학위논문 : 한글 학위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가)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 25-26.
- 4)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 71.
- 5)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 출판정보 등이 생략된 저자명을 표기한 후 인용페이지를 표기한다. 서양권 저자 이름은 last name만 표기한다. 바로 위의 인용한 자료를 잇달아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p. 2.’, ‘ibid., p. 2.’로 표기한다
- 가) 황병무(2011), p. 300.
- 나) Nye(2013), p. 27. ibid., p. 90.
- 6) 인터넷 자료 : 웹주소의 검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가) <http://www.technorealism.org>(검색일 : 2019.2.12)
- 나) 국방부(<http://www.MND.go.kr>), “국방의 현주소”(검색일 : 2019.2.12)
- 7)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 가) 황병무,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00일보』, 2003. 4. 19.
- 나) “안보의 현주소” 『연합뉴스』, 2003. 4. 19.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한글문헌,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한글 및 동양문헌은 저자의 성을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저자의 성(참고문헌에는 last name을 맨앞에 표기하고 first 및 second name(이니셜)을 표기)를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다. 이때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각주에서와는 달리 괄호 없이 표기한다.
- 2)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4)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의 쪽수는 제외한다.

3. 기타 참고사항

- 가. 본문 속의 제목들(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는 I., 1., 가.,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한다.
- 나. 표 및 그림에는 제목을 붙여야 하고 <표 1>,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 (1985), pp.1-2.
- 다. 본문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의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 마. 논문 원고 순서는 ①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② 저자 의 한글 성명 및 영문 성명, ③ 원고지 5매 이내의 한글요약문과 300단어(words) 내외의 영문 요약문, ④ 3~5개의 한글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 ⑤ 참고문헌, ⑥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논문게제시에는 별도로 200자 내외의 한글 '저자 소개문'(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투 고 환 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연간 2회 학술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는 재향군인회와 안보에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연구자료를 수록하기 위한 학술지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등재학술(후보)지 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군회원과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1.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안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보내실 곳 : E-mail 접수(korvass0201@naver.com) 또는
우편 : 우)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기타 사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02-499-02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